

연구보고 2008-

#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

Investigation Research on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of Autonomous Legislation

- Focus on the Autonomous Legislation of Wide Area Local  
Self-Government -

연구자 : 최환용(연구위원)

Choi, Hwan-Yong

2008. 10. 31.

## 국 문 요 약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자기결정권의 규범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지난 10년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둘러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자치입법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많은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보충적·매개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본래적 자치입법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례나 규칙이 자치입법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과정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이나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치입법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 간의 협력이 요청되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과감한 사무이양과 재정권한의 이양이 동시에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령의 개정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법령에서 직접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조례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자치입법권, 자치입법실태, 광역자치단체, 자치조례, 위임조례

## Abstract

The local self-government will be able to take a triangular position the norm which is fixed about business of oneself with responsibility of oneself. This the autonomous legislation. Says again, the autonomous legislation is a core element of local self-governing, the normative expression of the decisive power.

This report is on a change process about autonomous legislation from 1997 until 2007. In compliance with an investigation result, autonomous legislation had a many change from the formal side. But There was not extra ordinary change from the side which is contents.

The current autonomous legislation function is doing in the supplement and mediation norm for the concrete execution of law. Namely, to essence of autonomous legislation is insufficient.

In order local self-governing faithfully description below from, must strengthen the function of autonomous legislation. Consequentl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ous legislation which is professional is requested. And also the subjective between cooperation which composes the local self- government is necessary. Further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transfer a business authority and a financial authority actively.

In order overcomes the present state of things from, from law to entrust directly in autonomous legislation. The local self-government develops a policy oneself, forms this with autonomous legislation must strengthen the ability which.

※ Key Words : **Autonomous** legislation authority, The autonomous legislation actual condition, Wide area self-government, **Autonomous** regulations, Charge regulations

#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1
제 2 절 연구의 방법 .....	12
제 2 장 자치입법에 관한 법이론적 동향 .....	15
제 1 절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본질 .....	15
1. 지방자치의 의의 .....	15
2.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헌법적 논의 .....	17
제 2 절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	19
1. 자치입법권의 의의 및 근거 .....	19
2. 자치법규의 유형 .....	20
제 3 절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	22
1. 개 요 .....	22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23
3.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리 .....	32
제 4 절 자치법규의 효력 .....	33
1. 공간적 효력 .....	33
2. 시간적 효력 .....	34

3. 인적 효력 .....	34
<b>제 3 장 선진국의 자치입법 실태 .....</b>	<b>35</b>
제 1 절 미 국 .....	35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35
2. 지방정부의 유형과 분류 .....	37
3.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론의 발전 .....	39
4. 주헌법과 지방자치의 보장 .....	42
5. 자치입법권과 Home Rule .....	46
제 2 절 일 본 .....	49
1. 지방분권개혁 이전의 조례제정권론 .....	49
2. 분권개혁 이전의 자치입법제정 동향 .....	51
3. 지방분권 이후의 조례제정권론의 변화 .....	85
제 3 절 시사점 .....	89
1. Home Rule 제정권한과 조례제정권 .....	89
2. 정책 개발 노력과 조례제정권의 관계 .....	89
3.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확대 .....	90
<b>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b>	<b>91</b>
제 1 절 자치입법의 일반현황 .....	91
1. 개 요 .....	91
2. 법령에 의한 조례위임 현황 .....	98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	132
1. 특별시·광역시의 자치입법 실태 .....	132
2. 도(道)의 자치입법 실태 .....	191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231
제 3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활성화 과제 .....	232
1. 자치법무론의 확대 강화 .....	232
2. 법령의 조례위임범위 확대 방안 .....	233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개발 노력 강화 .....	233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234
5. 정책의 개발과 법제화-정책의 조례화- .....	235
6. 지방의회의 입법역량강화 .....	244
7. 규칙제정의 활성화 .....	246
제 5 장 결 론 .....	251
참 고 문 헌 .....	253
〈부록〉 주요 자치입법의 목적 및 조별목차 .....	261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87년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겪어온 행정법분야가 지방자치법제인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제3공화국 이래 우리 헌법에서 규범력을 잃고 사문화되어 버렸던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다시 부활되었고 15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마야흐로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그동안 교과서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싼 많은 논의를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 왔고 그 결과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입법적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세계화 및 시민사회의 성숙 등 시대적인 흐름은 우리 사회에 지방분권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었고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가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정책이 미약하나마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경주해 왔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의 복리를 위한 노력들은 자치입법 특히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되고 정책구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례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특히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실제로 이러한 자치입법이 어떤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운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제도의 운용상황을 평가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까지 제정되고 집행되어온 자치입법의 체계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3년동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분석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연구는 3년차 연구 중 1년차에 해당하며 16개 광역지자체의 자치입법의 제정현황, 법령과의 관계, 운용실태 등을 조사,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서 2009년도에 진행될 기초지자체의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2010년도에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의 자치입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자치입법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시기는 2008년 4월부터 6월이며, 특별시·광역시 7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9개도를 각각 그룹화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정리 시 서울시조례체계를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그밖에 특별시·광역시·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조사결과표는 부록으로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은 1998년에 자치입법의 실태를 조사·분석한 선행연구결과<sup>1)</sup>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동안의 지방분권 추진정책에 따라 자치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발 노력과 이에 대한 입법화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는지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또한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자치입법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치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밖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입법의 이론적 동향을 문헌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17년의 세월이 흐렀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동안의 자치입법권을 둘러싼 이론적 동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새롭게 등장한 견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선진국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병행하고자 한다. 특히 종전과는 달리 선진국의 자치입법의 체계 및 실태를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분권 이전의 자치입법 실태와 지방분권 추진 이후의 자치입법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 8

## 제 2 장 자치입법에 관한 법이론적 동향

### 제 1 절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본질

#### 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지방분권주의 및 자기책임성을 기초로 하여 성립한 역사적 산물로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요소로 성립되어 있다.<sup>2)</sup> 즉 지방자치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은 지방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에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며, 지방분권<sup>3)</sup>주의 이념은 국가의 지방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의 형성을 통하여 지방의 고유한 사무에 관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sup>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법질서 안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책임 하에 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기책임성을 가지며, 이러한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업무를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지방자치의 개념을 주민자치<sup>5)</sup>와 단체자치<sup>6)</sup>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었으

2)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7쪽

3) 지방분권특별법(2008.2 폐지) 제2조는 지방분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4) 줄고, “지방자치법제의 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통권제34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3쪽

5) 주민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사회에 고유한 공적 사무는 그 지역사회의 주민이 참가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관념으로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를 의미한다.

6) 단체자치란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국가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인정하고 지역공

나 오늘날 이 둘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단체의 설립이 필수불가결하며, 반면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단체가 존재하더라도 지역단체의 정치나 행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면 자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7)</sup>

결국 오늘날 지방자치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요소가 통합된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를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방자치의 실체는 주민들의 자기결정의 보장, 즉 주민자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9)</sup>고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주민이 자신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에 대한 자주적 결정을 통하여 자기소외를 극복하고 지역문제의 자주적 해결주체로 등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sup>10)</sup>

---

단체에 고유한 공적 사무가 이 단체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김철용, 『행정법Ⅱ(제5판)』, 박영사, 2005, 55쪽

8) 최봉석, 앞의 책, 23쪽

9) 헌재 1991. 2.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100

10) 백중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학제3권제1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6, 35쪽

## 2.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헌법적 논의

### (1) 고유권설과 전래권설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해서는 종래 고유권설과 전래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권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이전부터 인정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권리라고 한다. 그 논거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이전부터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형성되어 지역공동체에 고유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여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둔다.

이에 대해서 전래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 그 논거는 연방제가 아닌 중앙집권국가에서는 국가의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치조직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권력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sup>11)</sup> 이러한 고유권설과 전래권설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오늘날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국가의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고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기 어려운 바, 기본적으로는 전래권설의 입장이 타당하다.<sup>12)</sup>

### (2) 제도적 보장설과 신고유권설

우리나라의 통설인 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권은 헌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장된 것으로 입법자에 의한 그 내용의 제한이 가능하기는 하나, 헌법상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입법자가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고 또한 제한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11) 박근성, 『행정법강의(제5판)』, 박영사, 2007, 918쪽

12) 최봉석, 앞의 책, 24쪽

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존재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을 말한다.

그러나 제도적 보장설을 단지 입법권으로부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오늘날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적극적 가치, 즉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구현 및 나아가 주민의 기본권보장의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설계가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신고유권설이다.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국민주권원리와 기본권보장원리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헌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국가와 병립하는 대등한 공권력의 주체로 이해한다.<sup>13)</sup> 신고유권설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원리와 기본권보장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지방자치의 가치와 현대적 기능을 중시하면서 자치행정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시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 비추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국가 이전부터 인정되고 있는 고유한 권리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 (3)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무

우리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17조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

13) 김영천,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초”, 지방자치법연구 제2권제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2. 12), 11면-12쪽.

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제118조제2항)은 법률로써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기초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내용의 형성을 입법자에게 유보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입법자에게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현대적 가치, 즉 민주주의의 이념과 지방분권주의 및 자기책임성을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에서 입법형성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 2 절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 1. 자치입법권의 의의 및 근거

#### (1) 자치입법권의 의의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하며,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자기결정권의 규범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래밍(Selbsprogrammierung)의 보장이며, 자기표현(Selbstdarstellung)의 보장이 된다.<sup>14)</sup>

#### (2) 자치입법권의 근거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

14) 조성규,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7쪽

치법 제22조에서는 이러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정립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24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를 정하고 있다.

## 2. 자치법규의 유형

### (1) 개 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존재한다.

### (2) 조 례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조례제정의 재량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주민과의 관계여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류될 수 있다.<sup>15)</sup>

---

15) 일본에서는 조례를 내용에 따라 자치기본조례, 기본조례, 독자사무조례, 법령사무조례, 종합조정조례, 지자체간 관계조례, 주민참가조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기본조례란 마을 만들거나 행정의 룰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침과 조직운영의 기본을 정하는 조례로서 다른 조례에 우월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財) 日本都市センター, 分権型社会における自治体法務,



### 1) 자치조례와 위임조례

자치조례는 개별법령의 위임 없이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적으로 정하는 조례이다. 즉, 자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자기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자치입법의 개념이며, 행정각부의 행정입법은 국가의 권한으로 행하여지는 타율적 법정립이라는 점에서 행정입법과는 그 존립기반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16)</sup>

다음으로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다.<sup>17)</sup>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례를 위임조례라고 한다.

### 2) 필수조례와 임의조례

필수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조례를 의미하며, 임의조례는 법령의 규정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재량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에 관한 조례는 거의 전부가 위임조례 내지 필수조례에 해당하며 필수조례 중에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회의

---

77쪽 이하 참조

16)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법학연구제24집(2006), 39쪽

17) 대법원 2005. 5. 30 선고 99추85판결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중소기업단체의 조례 제정권]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3) 규 칙

조례와 마찬가지로 규칙의 경우에도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어 법규적 성질을 갖는 위임규칙과 교육훈련이나 내부조직과 관련되어 행정규칙적인 성질을 갖는 직권규칙이 있다. 한편 위임규칙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법령위임규칙과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위임규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조례위임규칙과 구별하기 위하여 조례집행규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으며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고 이를 기관위임규칙이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은 사무집행을 위한 내부기준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례의 입장이다.

## 제 3 절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 1. 개 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자치권의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하는 지방자치권의 범위내에서 행사되지 않

으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제도적·현실적 제약이나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현행 법제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자치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향유범위가 어떠한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법적위상과 그 제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불문하고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할 수 있는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내용과 범위에 대한 문제, 더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대한 해석범위의 문제로 귀결된다.

##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1) 조례와 법치행정의 원칙

#### 1)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 ① 법률우위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법령이란 법률과 조약,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국가 법령체계 전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제정하는 행정규칙과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법규도 이에 포함된다. 법률을 보충하는 성격의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모법과 하위법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체계를 이루게 되고, 그 결과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에 따라 법규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대외적 효력을 가진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판례 또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sup>18)</sup> 그러나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sup>19)</sup>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언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제도로써 보장한 헌법정신에 합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sup>20)</sup> 그 이유로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모든 조례의 제정에는 국가의 법령에 의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결국 전면적인 법률유보를 의미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 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경우에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조례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판례도 학설과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지방자치법제22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sup>21)</sup>고 판단하고 있다.

## ② 법률과 조례의 관계

법률우위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규율하고

18) 대판 1987. 9. 29, 86누484 ; 1992. 1. 21, 91누5334

19) 대판 2003. 9. 5, 2001두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 최봉석, 앞의 책, 219쪽

21) 대판 2001. 11. 27, 2001추57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조례로써 규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종래 독일과 일본의 통설은 법률선점론(法律先占論)으로, 법률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법률과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법률의 규제범위 이외의 사항을 규제하거나, 법률의 규제기준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두어 규제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법률선점이론을 완화하고 있다(수정법률선점이론). 즉 법률이 최소한의 규제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해석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제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급부행정영역에서는 법률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보다 이를 완화하는 것이 허용된다.

## 2)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 ①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그 예로 청주시의회가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조례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sup>22)</sup>

그러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없다. 이를 통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성 논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하는 조례의 경우 법령우위 이외에도 법률유보를 요구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 아닌지가 논의되고 있다.

### 가. 합헌론

먼저 합헌론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제2항),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제59조)등에 따른 것으로 우리 헌법규정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당연한 내용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다만 입법론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개정하여 형벌을 정하는 조례에 한정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

22) 대판 1992.6.23 선고 92추17판결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헌법 제37조제1항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례는 법률에 준하는 것이며 전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만을 구속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법률의 근거없이 조례가 제정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헌법제37조제1항이나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sup>23)</sup>

#### 나. 위헌론

다음으로 위헌론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만 아니하면,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률의 위임 없이도 자치사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례의 자주입법성이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인 작용에 한하여서만 조례를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고 권력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자치권을 인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 다. 판례의 입장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현행 제22조)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중대성에 비추어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제정에 있어 위와

23)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7, 106쪽

같은 경우에 법률의 위임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조례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법률적 근거는 포괄적 위임만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해 주고 있다.

즉 조례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되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에 있어 법률위임은 법규명령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sup>24)</sup>나 대법원<sup>25)</sup>의 견해이다.

#### 라. 입법정책적 논의

합헌·위헌의 이론적인 논쟁을 떠나 실제 사례에서 위 단서규정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의 법령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영역으로서 특정지역에서 문제가 되어 각종 규제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였으나, 위 단서규정에 의해 조례제정 시도는 실패로 끝난 사례가 더러 있었다(이후 법령에서 위 사항을 수용하여 규제 신설). 비디오방 영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각종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94. 부산광역시), 래프팅투어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도입한 조례안('96. 인제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실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내용을 일단 삭제하고 그 대신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벌칙을 정한 조례는 그에 관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이 제정된 후에는 관련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명시

24) 헌재 1995.4.20선고 92헌마 264병합결정

25) 대판 1997.4.25선고 96추251판결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례에 의하여 먼저 규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 법령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자치단체의 입법정책과 국가의 입법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조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정비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법률생활에 상당한 혼란과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충하며, 자율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대해 학자들간에 학설이 정립되지 않고 있고, 기존 판례도 합헌설을 취하는 한 개정 여부는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학설의 정립, 관련 판례의 축적 등 여건이 성숙된 후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법령의 의미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 실정에 맞게 조례를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일 때에는 가급적 개별법령에서 조례에 의한 특례제정 근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2) 사항적 한계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sup>26)</sup>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26)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주민복지, 산업진흥사무 등 6개 분야 57개 종류의 자치사무(같은 조 제1항의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같은 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업무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한하여 조례에 위임도 허용되며,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sup>27)</sup> 이러한 조례를 위임조례라 한다.

대법원은 위임조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대판 2000. 5. 30, 선고 99추85판결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예를 들면 건축법 제45조제2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위임조례이다.<sup>28)</sup>

---

의 장에 대한 위임”사무인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27)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법학연구제24집, 47쪽

28) 김병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사유와 대법원 제소, 행정법연구 1999 하반기, 249쪽

### (3) 조례에 의한 벌칙규정과 죄형법정주의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죄형법정주의)하는데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 “조례로 …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조항에 대해서 당시 범죄구성요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처벌 상한만을 정하여 형벌권을 포괄적으로 위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94년 3월 법 개정시 국회정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상 조례로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일부의 주장과 같이 형벌권을 부활시키는 문제는 종전의 위헌 논란이 다시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전제가 되는 과태료부과 대상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되므로 그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4)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유보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과세

요건과 세율을 규정하고 조례로써 과세요건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조세입법권을 위임하고 있다.

### 3.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리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헌법상의 대통령제와 유사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의 의결권을 갖는 외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이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요구와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및 답변요구의 권한이 부여되고, 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서 통할대표권, 사무관리 집행권, 직원 임명권을 부여하는 외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과 기타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재의결되어 법령에 위반된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양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단체장의 권한(기관구성원 임명, 위촉 등)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의 등 사후적·소극적인 관여만 가능하고 사전적·적극적인 관여나 대등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은 불가)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하위법규인 조례로서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sup>29)</sup>

또한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으나,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은 아니다.

그러므로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하는 것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밖의 일로써 집행기관과의 권한관계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제 4 절 자치법규의 효력

### 1. 공간적 효력

자치법규 효력의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치법규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 가.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한 경우(지방자치법 제144조제3항)
- 나.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같은 법 제151조)

2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판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같은 법 제104조제3항)

## 2. 시간적 효력

자치법규는 법령과 마찬가지로 공포·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친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는 자치법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3. 인적 효력

자치법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들어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공공시설의 이용자, 공물의 특별허가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

## 제 3 장 선진국의 자치입법 실태

### 제 1 절 미 국

####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1) 연방헌법과 지방자치의 보장

###### 1) 연방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

미국의 연방헌법에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과 문언이 전혀 없다. 연방헌법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위보증」 규정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지방정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를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정부는 순수하게 주의 문제(purely a state affair)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sup>30)</sup> 다만, 예외적으로 「워싱턴 콜롬비아특별구(Washington, D.C.)」는 어떤 주에도 귀속되지 않으며, 연방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 2)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계

Washington D.C.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창설과 「지방자치」의 권한 부여는 「주정부」 고유의 권리며, 「연방정부」가 개입하여야 하는 분야는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열거권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재권한」도 「묵시권한」도 아닌 「지방정부」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론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합중국헌법에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과 문언이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국 당시, 헌법제정에 있

---

30) James Bryce, *The American Commonwealth*, Macmillan & Co., London, 1888 ; A Liberty Classics Edition, Liberty Fund, Inc., Indianapolis, Indiana, 1995, Volume I, Part One, Chapter 27, p.282

어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에 대하여 논의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도 주의하여야 한다.<sup>31)</sup>

## (2) 주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창설과 규제

###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관계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한 규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나온다. 법적으로 보면 주는 지방정부를 창설하고 명령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는 제한적 수법으로 지방정부에 명령하고 지시하지만, 이들 수법은 기본적으로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으로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창설자이자 규제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완전히 종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러한 견해가 지배적인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독자적인 관할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 정부의 중요한 실험실로써 긍정되어 왔으며 역사적으로도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연대하면서 각각의 독자기능을 발휘하여 온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법이론

『지방정부』가 『주의 창조물(creature of the states)』이고, 주의회가 지방정부의 단위·구조·권한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1816년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이 판시하였으며, 동 법원의 파커 수석판사는 일반적으로 『Town』은 『명시적으로 수여된 권한만』 향수할 수 있는 『입법부의 창조물(creature of legislation)』이라고 판시하였다.<sup>32)</sup>

---

31) Bruce C. Daniels(ed.), *Town and County : Essays o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 the American Colonies*, Wesleyan University Press, Middletown, Connecticut, 1978, p.10

32) *Stetson v. Kempton*, 13 Mass. 272, 284(1816).



이후 1868년 아이오와주 최고법원의 존 딜런 수석판사는 「지자체법인」은 그 기원을 주의회에 두고 있으며, 모든 권한과 권리를 주의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주의회는 지자체법인에 대하여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주는 지자체법인을 창설할 수 있으며, 파괴할 수도 있다. 파괴할 수 있다고 하면 권한을 감축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 어떤 주헌법상의 제약이 없는 한, 예컨대 그것이 우책이고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도 법률에 의해 주 안의 모든 지자체법인을 일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자체법인은 이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에 따라 주의 절대적 권한이 인정되게 되었다.<sup>33)</sup>

## 2. 지방정부의 유형과 분류

### (1) 주의 하부단위로써의 지방정부

미국의 「지방정부」는 「주의 창조물」로 여겨지고, 모든 「주의 하부단위(substate units)」로 설정되어 있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우선, 각 「주」도 수많은 지역적 관할구로써의 「카운티(counties)」로 분할 구분되어 있다. 즉, 「주정부」의 하위기관으로써 「카운티정부(county government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카운티」는 일반적으로 「타운십(townships)」 내지 「타운(town)」으로 분할되어 있으나, 이들의 일부는 「지자체헌장(municipal charters)」을 취득함으로써 비교적 획일적으로 협소한 권한밖에 보유하지 않은 「타운십」의 지위에서 벗어나 보다 자주성이 강하고 폭넓은 권한이 인정되는 「시티(cities)」·「바라(boroughs)」·「빌리지(billages)」등의 「지자체(municipalities)」로 법인화(incorporated)되어 있다. 따라서 각 「카운티」

33) *City of Clinton v. Cedar Rapids and Missouri Railroad Company*, 24 Iowa 455, 461(1868).

는 원칙적으로 「법인지자체」인 「시티(cities)」·「바라(boroughs)」·「빌리지(billages)」등의 구역 즉, 「법인화구역」과, 「미법인화구역」(「타운십」과 「타운」)으로 구성되어 있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버지니아주에서는 「카운티」와 「시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카운티」안에 「시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2) 지자체법인과 준지자체법인

「주의 지방기관(state's local agent)」로 활동하고, 「주민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창설된 「카운티」·「타운십」 내지 「타운」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창설된 「시티」·「바라」·「빌리지」등의 「지자체법인」과 구별하기 위해 「준지자체법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준지자체법인」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법인」과 유사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지자체법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지자체법인과 동일한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정법과 관습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특정구」와 「학교구」도 마찬가지로 「준지자체법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들 「특별목적정부」는 권한면에서 「일반목적정부」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발의에 의해 설립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발의가 아닌 주의 주도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는 등 설립주체 면에서도 「지자체법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법인」과 「준지자체법인」은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는 것인가 여부의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법인」이 「임의적(voluntary)법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하여, 「준지자체법인」이 「부임의적(involuntary) 법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운티」에 대해서도 「Home Rule 권」이 수여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며, 종래와 같이 「지자체법인」과 「준지자체법인」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의의와 실익이 적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고전적인 「지자체법인」인가 「준지자체법인」인가라는 분류에 관계없이 「카운티」인지 「시티」인가, 「타운」인가 「타운쉽」인가, 「학교구」인가 「특정구」인가 등 개개의 「지방정부」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3) 특별지방정부

앞의 일반적인 지방정부에 덧붙여 학교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학교구(School District)”와 하수도·주택·소방·환경위생등의 특정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특정구(Special District)”와 같은 특별지방정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별지방정부는 특정한 목적 또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지자체법인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일반지방정부인 씨티나 타운쉽과 그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어네스트 그리피스에 따르면 “미국시민 즉, 납세자는 연방정부와 주뿐만 아니라 카운티, 나아가 특정구·지자체·학교구 그리고 타운쉽 등 모두 6개 내지 8개의 서로 다른 단계의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sup>34)</sup>

## 3.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론의 발전

### (1) 관례이론의 발전

#### 1) 딜런원칙

1868년 후반에는 딜런판사에 의해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즉, 「지자체법인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 행사할 수 있고, 이들 이외의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이 일반적으로 다룰

34) Ernest S. Griffith, *The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Third Edition)*, Menthuen & Co. Ltd, London, 1976, p. 174

여지가 없는 명제이다. ① 명문으로 수여된 권한, ② 명시적으로 수여된 권한에 필연적 내지 명료하게 함의 혹은 부수하는 권한, ③ 단순하면 편리하다고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 법인이 선언된 목표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권한이 그것이다. ④ 권한의 존재에 관한 명료한 의무는 어떠한 것이며, 법원에 의해 법인에게 불리하게 판정되고, 권한의 존재는 부인된다』고 판시하였다.<sup>35)</sup>

## 2) 월권법리의 원칙과 딜런원칙

원래 딜런원칙은 영미 보통법상의 원칙인 「월권법리의 원칙」을 지방정부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써 딜런의 창조적인 견해라고 할 수는 없다. 딜런 원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가장 좁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견해는 1876년 연방최고법원 판결에서 채택되어 「주의회는 지자체법인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고, 지자체법인을 주의 영역 안에서 소국가로 할 수 있고, 지자체법인의 권한을 박탈할 명목상의 법인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sup>36)</sup>

나아가, 1923년에도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같은 견해가 제시되어, 「지방자치고유권」이 부인되었다.<sup>37)</sup>

## 3) 쿨리 원칙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좁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딜런원칙은 그 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받게 되었고, 1871년 「지방자치고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타났다.

35) *Merriam v. Moday's Executors*, 25 Iowa 163, 170(1868)

36) *Barnes v. District of Columbia*, 91 U.S. 540, 23 L.Ed. 440(1876)

37) *City of Trenton v. New Jersey*, 262 U.S. 182(1923).

미시건주 최고법원의 토머스 쿨리 판사는 「주의 지방자치란 주의회의 재량에 의해 인정되고, 그 뜻 그대로 취소되는 단순한 특권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절대적 권리의 문제이며, 주는 이를 빼앗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쿨리 독트린(Cooley's Doctrine)」은 미시간 주 외에 인디애나, 켄터키, 아이오와 등 여러 주의 법원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이를 채택한 판결은 소수파이며, 딜런 원칙을 채택한 판결이 다수파였다.

## (2) 입법적 제도개혁

### 1) 특별법금지와 Home Rule

주의 절대적 권한을 주장하는 딜런원칙이 지방자치고유권을 주장하는 쿨리독트린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후, 오히려 그러한 사법면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입법면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정 지자체와 지방정부에 특정한 권한을 수여하는 「특별법」은 주의회에 의해 악용되어 정치부패의 원인이 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방적 이해관계문제」 내지 「지역문제」에 관한 한은 일일이 주의회의 권한수여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고유권적 지방자치(Home Rule)」를 획득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어 결국, 입법적 제도개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851년 인디애나주 헌법은 「지방법 내지 특별법 금지조항을 포함한 최초의 주헌법」이라고 불리고 있으나<sup>39)</sup>, 이들 금지규정 중에 가장 광범위한 것은 카운티 및 타운쉽업무를 규제하는 지방법과 특별법의 금지제한이었다.

38) *People ex rel. Le Roy v. Hurlbut*, 24 Mich. 44. 108(1871).

39) *Chauncey C. Binney, Restriction upon Local and Special Legislation in State Constitutions*, Kay & Brother, Philadelphia, 1894, p. 7.

## 2) 미주리주 헌법과 헌장기초권

지방법·특별법 금지조항과 같은 주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주헌법상의 조치(소극적지방 자치권 강화책)에서 더욱 진보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자체의 강화를 도모하는 주헌법상의 조치(적극적 지방자치권 강화책)도 시도되었다. 그 전형이 1875년 미주리주헌법이다. 이 주헌법에는 실제로는 「Home Rule」이라는 문언이 사용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절차적 세목이 부가되어 있었으나, 그 후 이른바 「Home Rule」규정으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자체 법인에 대한 「헌장기초권」의 위양이 다른 주에게 파급되어 「Home Rule」추진의 기점이 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후 「Home Rule 도시」는 스스로 「헌장」혹은 「주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게 되어, 예전에 우세를 차지했던 딜런원칙은 새로운 「Home Rule」에 가로막히게 되었던 것이다.

## 4. 주헌법과 지방자치의 보장

### (1) 주헌법의 지방정부조항

각 주헌법은 매우 개별적인 경향이 있으며, 헌법조항을 일반적인 범주로 명확하게 분류한 특징짓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만, 특히 「지방정부」에 관련된 주헌법 조항은 체계적인 분류가 어렵다.

주헌법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에 관한 조항 내지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10개 주의 주헌법에는 「지방정부」에 관한 규정 즉, 권한수여규정조차 없다.<sup>40)</sup>

---

40) Thomas C. Marks, Jr. & John F. Cooper, *State Constitutional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St.Paul, Minnesota, 1998, p. 192

한편, 알래스카주 헌법과 같이『지방자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알래스카주헌법 제10조제1절에는 『최소의 지방정부단위에 최대의 지방자치를 제공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 관한 제약·규제조항을 충분히 포함한 주헌법도 있다. 그 예가 오클라호마주헌법이다.

### (2) 주헌법개정과 지방정부의 규제·보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각지의 주정부와 도시지자체에서 권한남용과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주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사회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게 되고, 도시지자체가 주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종래 이상으로 커다란 것이 됨에 따라 주의회는 점점 『지방단체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19세기말 주의회는 농촌부와 도시부의 의원 정수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함으로 인해 도시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농촌의원이 이권을 위해 도시지자체에 불이익이 되는 특별입법을 하는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도시지자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의 제정을 금지·규제할 필요도 생기고, 지방자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 규정이 주헌법에 마련되게 되었던 것이다.

### (3) 지방정부조항의 분류와 내용

데이비드 매커시 교수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작용하는 주헌법의 규정은 ①『부당한 경비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②『지방정치책임을 확보하는 일정한 활동을 정하는 것』, ③『지방자치를 창조하고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sup>41)</sup>

41) David J. McCarthy, Jr., *Local Government Law in a Nutshell(Fourth Edition)*, West Group, St. Paul, Minnesota, 1995, pp. 30-31

첫째, 지출금지조항이다. 예를 들면 주가 사기업이나 지방정부를 위해서 채무보증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지방정부의 사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주가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지방정부의 차입한도를 정한 규정, 주나 지방정부의 직원등에 대한 특별보수의 지급이나 임기중인 간부직원의 보수증액을 금지하는 규정 등이 있다.

둘째, 지방책임확보조항이다. 예를 들면 주의회에 의한 지자체의 법인목적업무에 대한 과제 금지규정, 주의회가 특별행정위원회를 두어서 지자체를 대신하여 업무를 행하거나 지자체의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지방정부직원의 선임은 지방정부 스스로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카운티의 합병·궤도철폐면현등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등이 있다.

셋째는, 지방자치보호조항이다. 지방자치의 보호에 관한 주헌법규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특별입법” 내지 “하나의 시입법(one-city legislation)”의 금지규정이며, 또 다른 하나는 “Home Rule”의 권한을 직접 부여하거나 “Home Rule”의 권한부여를 주법에 위임하는 규정이다.

#### 1) 특별법·지방법금지조항

「지방자치보호조항」 중, 「특별법」 혹은 「지방법」을 금지하는 규정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헌법조항이다. 「지방법이란 주 전체가 아닌 지리적으로 일부 지역에 적용하는 특별법의 한 유형이며, 통상 하나의 카운티 혹은 하나의 지자체법인 등 주 내의 정치하부단위의 하나에 관계하는 것이다」.<sup>42)</sup>

원래 「특별법」이란 「특정장소와 지역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인해 제정되는 것으로, 특정인간과 사항에 관한 법」을 가리키며, 「개별법」 및 「지방법」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

42) Thomas C. Marks, Jr. & John F. Cooper, *supra*, pp. 196-197.



「유일한 지역」에 적용하는 「지방법」으로 제정되어 왔다.

현재 41개 주에서 이러한 「특별법」 내지 「지방법」의 금지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법」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지방법」을 제정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2) Home Rule 조항

「지방자치보호조항」중, 별도의 「고유권적 지방자치(Home Rule)」 권한에 관한 주헌법 조항은 지방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주헌법상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수여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덜던원칙에 의해 지방정부가「주의회의 뜻대로 되는 종속적 존재」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1923년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에서도 「지자체는 지방자치고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권한과 특권을 수여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주의 단순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43)</sup>

주헌법상 일정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권한수여조항이 없는 한, 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의회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탈취하는 것도 자유롭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헌법조항의 필요성이 높아져 온 것이다.

각 주에서 「특별법」이 금지되고 있는 것도, 「많은 주에서는 지자체의 분류, 통상은 인구구분에 따라서 그 목적이 너무 앞서가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회의 자의적 조치에 대처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지자체 Home Rule이 만들어진」 것이다.

Home Rule 조항은 1875년 미주리주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 20세기 초까지 반수 이상의 주에서 도입되는 등 많이 보급되었으나, 1930년대 이후는 잠시 그 채택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1966년 매사

43) *City of Trenton v. State of New Jersey*, 262 U.S. 182, 43 S.Ct. 534, 67 L.ed. 937(1923)

추세스주헌법 및 노스다코다주헌법에서 채택되고, 1968년에는 플로리다주헌법 및 펜실베이니아주헌법에서도 채택되는 등 진전을 보이고 현재에는 37개 주의 『주헌법』에 『Home Rule 조항』이 있다.

## 5. 자치입법권과 Home Rule

### (1) Home Rule의 의의

사전적 의미로 Home Rule이란 “지방정부에게 수여된 헌장을 제정하여 자기의 문제를 관리·운영하는 권한” 내지 “지방의 정부단위에게 부여된 스스로의 헌장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여 자기의 문제를 관리·운영하는 권한”이라 정의된다.<sup>44)</sup>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ome Rule은 지방정부가 주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즉 Home Rule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는 스스로 헌장을 기초하거나 변경하고, 또 조례제정이나 법적 효력을 가진 행재정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 (2) Home Rule 헌법조항의 유형

각 주의 『Home Rule 헌법조항』의 내용과 규정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대략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45)</sup>

제1유형은 『특정 시·카운티에 관한 조항』으로, 그 고전적 사례는 메릴랜드주헌법 제11조에서 볼 수 있다. 본 조는 『볼티모어』시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상세한 규정으로 제1절부터 제9절까지 동 시의 정부조직과 시정부에 관한 규제내용이 정해져 있다.

44) Jack C. Plano & Milton Greenberg, *The American Political Dictionary*(eleventh Edition), Harcourt College Publishers, Fortworth, Texas, 2002, pp.62-63

45) Thomas C. Marks, Jr. & John F. Cooper, supra, pp. 204-206

제2유형은「전체 지자체 내지 카운티에 대한 Home Rule권의 수여조항」이다. 그 전형적 사례는 1912년 9월에 채택된 오하이오주헌법 제18조 제3절에서 볼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방자치의 모든 권한을 집행하고, 일반법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영역 내에서 지방경찰·위생·기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 실시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3유형은 「지방정부에 의한 현장의 채택」을 요구하는 헌법 Home Rule 조항으로 이 유형이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Home Rule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헌법 제11조 제3절은 「카운티 또는 City는 스스로 정부를 위해 투표한 선거민의 과반수의 표로써 현장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헌법 제11조 제5절은 「주민 5000명 이상인 City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투표로 현장을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Home Rule의 기능

Home Rule의 제정이 인정된 지자체(이하 “Home Rule 지자체”라 한다)에서는 지역주민이 고유한 현장 즉, 자치현장(Home Rule 현장)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 자치현장의 제정을 통해서 지자체는 스스로의 존립을 보장하고 권한을 정립하며, 조직을 창설할 수 있다.

Home Rule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현장의 지자체존립보장기능이다. “Home Rule 지자체”는 자치현장을 통해서 지자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자주적으로 설립된 지자체는 더 이상 주의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폐지될 수 없다. “Home Rule 지자체”는 단순히 주의회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1919년 연방대법원은 “Home Rule 시는 많은 시들과는 달리 주의회의 특허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주헌법에 신탁된

주민(州民)의 의사에서 유래하는 특별한 권능에 근거해서 설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46)</sup> 즉, 주의회가 주법의 제정개폐를 통해서 Home Rule 지자체를 개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둘째, 자치현장의 지자체권한방어기능이다. Home Rule 지자체는 자치현장에 의해서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나아가 “조례(ordinances)”를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권한 자체는 주법에 의해서 “비Home Rule지자체”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는데, Home Rule이 있다면 스스로 조례제정권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의 일반법에 의해서 창설된 지방정부는 통상 주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대해서 Home Rule 지자체는 주법의 제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스스로 조례제정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자치현장의 지자체조직창설기능이다. Home Rule 지자체는 자치현장에 의해서 스스로의 정부조직을 규정할 수 있다. 즉, 어떤 형태의 정부를 설립할 것인가, 직접민주제를 도입할 것인가, 하부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은 주정부의 허가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넷째, 고유자치권보장기능이다. 자치현장과 주법의 관계는 “순수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자치현장이 주법에 우선하는 한편, 상호경합적 사무에 관해서는 주법이 우선하며 주법에 위반하는 자치현장은 무효가 된다. 어떤 사무가 순수자치사무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

46) *Withnell v. Reucking Construction Co.*, 249 U.S. 63, (1919).

## 제 2 절 일 본

### 1. 지방분권개혁 이전의 조례제정권론

#### (1) 지방분권개혁 이전의 조례제정권론 개관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1995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방분권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조례제정권과 관련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당해 조례가 취급하는 사무가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가<sup>47)</sup>와 당해 조례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가<sup>48)</sup>가 자치입법권을 둘러싼 쟁점이었다.

즉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가사무로서의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초과조례·병행조례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이른바 徳島市公安条例事件이나 高知市普通河川管理条例事件과 같은 관례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 (2) 분권개혁 이전의 조례제정권론에 관한 쟁점

##### 1) 조례에 의한 법률요건의 변경에 관한 논의

이른바 “초과조례”, “병행조례”와 관련된 문제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요건을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가가 논의의 쟁점이다. 또한 법률상 조례에 의해서 요건을 명시적으로 변경하도록 인정하고 있는 경우와 법률상의 요건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경우가 있다.

47) 자치법규는 일반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며, 국가사무인 기관위임 사무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하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를 의미한다.

48) 일본 지방자치법 제14조에서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을 둘러싸고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다양한 학설이 전개되고 있다.

법률이 조례에 의해서 요건을 명시적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환경관련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이다.<sup>49)</sup>

법률상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 법률상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법률요건의 구체화이며, 법률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초과조례·병행조례의 허용 여부는 이러한 명시적인 수권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수권없이 조례로 법령상의 요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분권개혁 이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 2) 판례이론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확대

이른바 徳島市公安条例事件<sup>판결50)</sup>에서는 조례와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이에 관해서는 취지, 목적, 내용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론을 정립하고 있다. 즉 동 판결에서는 법령과 조례가 목적과 대상의 일부를 공통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합하고 조례가 법률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이 반드시 해당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를 시행할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공공단체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법령의 규제와는 별개로 일정한 규제를 시행할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때에는 법령과 조례간에 아무런 저촉이 없고, 조례에 의한 규제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는 때에는 양자의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판결에서는 법령과 목적·대상을 같이 하면서 법령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정한 조례의 제정가능

49) 이른바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초과조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법령에서도 이러한 위임에 따른 초과조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50) 최고재판소, 最大判昭和(1975)년9월10일刑集29권8호, 489쪽

성을 일정한 요건 아래 긍정적인 것으로 전통적인 법률선점론의 기본적 틀을 탈피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51)</sup> 그렇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 2. 분권개혁 이전의 자치입법제정 동향

일본의 1990년대 전반기 즉, 1992년에서 1995년까지의 기간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자치입법권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즉 이 시기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기초로 하여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분권일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분권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직전이기에 때문이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자치사무의 확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사무의 창설,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관여범위의 축소 등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현재의 우리 상황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상황과 유사한 시기인 1990년대 전반기의 일본 자치입법의 동향<sup>52)</sup>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1992년 자치입법제정의 동향

#### 1) 개 관

이 시기에는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환경보전에 관한 조례·요강의 제정이 가장 현저하였다.

51) 関 哲夫, 条例制定権の限界, 行政法の争点, 有斐閣, 37쪽

52) 일본의 1990년대 전반기 자치입법의 동향에 관해서는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관계로 田村達久, 地方分権改革の法学分析, 敬文堂(2007)의 제3장(1990년대 전반기의 자치입법제정동향의 분석)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로 분류된 확장기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법률에 의한 규제를 대신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교하여 양적으로도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1992년 동향의 특징을 나타내는 조례·요강(要綱)<sup>53)</sup>도 제정되고 있다. 특히, 복지관계이며 구체적으로는 복지마을조성에 관한 조례·지침의 제정과 쾌적한 마을조성으로 분류되는 위법주차방지를 위한 일정규모의 오피스빌딩과 집합주택에 일정한 수의 주차시설을 부설시키는 조례의 제정도 눈에 띈다. 나아가 개정생산녹지법의 적용과 관련되어 도시농업에 대한 지자체 독자의 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와 요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거나(농업과 조화를 이룬 거리 조성), 이른바 리조트법(종합보양지역정비법)의 운용으로 마리나(Marina)가 각지에 설치됨에 따라 현재화된 레저보트규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에 대한 규제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도 1992년의 동향이다.

## 2) 조례유형별 특징

### ① 지자체와 주민

지자체와 주민의 관계에서는 도쿄도 치요타구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조례제정에 대한 직접청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모두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첫 번째 청구는 행정의 정책형성과정에 주민의 직접참가를 의도한 조례안이고, 두 번째는 주민의 의사를 행정정책형성에

---

53) 요강(要綱)은 일본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특수한 규범체계이다. 본래 요강은 행정기관이 행정을 위한 지침으로 제정하는 내부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일본 지자체에서 요강에 근거한 행정을 시행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즉,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협소하여 내부규범인 요강을 통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행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다. 요강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真砂泰輔, “要綱の法的性質”, 行政法の争点, 有斐閣, 38쪽 이하 참조



반영시키기 위한 기회를 창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한 조례안으로, 양자 모두 특색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각종 시험결과의 공표를 구두로 청구할 수 있는 간이개시제도(아이치현) 등도 있다.

## ② 지역진흥과 활성화

지역진흥과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정주민구의 증가책으로 정주장려금, 출산축하금과 취직축하금의 지급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특징적이다.

## ③ 거리조성 관련

### 가. 아름다운 마을조성

이 조례의 특색은 지역과 지구를 지정하고, 그 중에서 건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도시경관형성에 관한 기본계획, 기준과 지침에 근거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나가노현 등).

### 나. 복지거리조성 - 조례에 의한 대응 시작

복지거리조성 관련 조례<sup>54)</sup>의 제정은 오사카부와 효고현이 그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과 지방노인보건복지계획책정 동향으로 상징되는 복지행정 동향이 현저하였던 92년 조례 동향의 한 가지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써 복지거리조성 관련 조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54) 이러한 유형의 조례는 大阪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 다. 농업과 조화를 이룬 거리조성

농업과 조화를 이룬 거리조성 관련 조례·요강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대도시권에 위치하며, 도시농가가 있는 지자체의 92년 동향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소재이다. 지자체가 그 지방의 도시농업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식 하에 법률의 틀 안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환경보전

환경보전 관련은 92년 조례 동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우선, 조례동향의 특징이 되는 중요한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하나는 인근 시정촌이 공통의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다.<sup>55)</sup> 다른 하나는 폐기물감량을 위해 재활용 등과 연관 짓는 조례의 제정이다.<sup>56)</sup>

마지막 하나는 빈칸과 담배꽂초를 버리는데 대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난 것이다.<sup>57)</sup>

##### ⑤ 복지·노동

이는 앞의 복지거리조성의 경우와 같이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과 지방노인보건복지계획책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복지를 충실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민간에 의한 유료 노인홈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적절한 지도도 필요할 것이다.<sup>58)</sup> 한편, 오사카부가 지방노인보

55) 岡山県, 福岡県 등에서 인근 시정촌이 공통조례를 제정하였다.

56) 東京都, 北海道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57) 和歌山県, 福岡県 등에서 제정되었다.

58) 茨城県, 群馬県 등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건복지계획의 책정을 위한 지도지침을 작성하고 있는 사례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제1차적인 책정주체인 것에 대하여 도도부현으로부터의 관여를 파악하는 소재가 된다고 생각된다(오사카부에서 지침 작성).

## (2) 1993년 자치입법제정의 동향

### 1) 개 관

이 시기의 전체적인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1992년 12월 16일에 공포된 『정치윤리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1992년 12월 16일 법률 제 100호)이 1993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가네마루문제를 계기로 하여 의장, 의원 등의 정치윤리확립을 위해 자산공개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공개조례<sup>59)</sup> 혹은 정치윤리조례<sup>60)</sup>가 활발하게 제정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고령사회의 본격적인 진전을 보아 고령자 등에게 배려한 거리조성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1992년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2년에 이어 쓰레기방치를 금지하는 조례의 제정이 후쿠오카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전개된 것이다. 특히 인근 지자체가 보조를 맞춰 광역적으로 방치금지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 2) 조례유형별 특징

#### ① 지자체와 주민

우선, 법률의 성립이 원인이 된 조례제정을 들 수 있다. 즉, 정치윤리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59) 자산공개조례의 제정 의의에 관해서는 長谷川俊英, “自治体の資産公開条例-『利益の衝突』の回避制度と運用状況-”, 都市問題 제85권 제4호, 29쪽 이하 참조

60) 정치윤리조례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논문으로는 平松毅, “政治倫理条例に関する法的諸問題(一)(二・完)”, 自治研究 제70권 제1호·제2호(1994)이 있다.

따른 자산공개조례의 제정 움직임이다.<sup>61)</sup>

이 법률에서는 “도도부현 및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 의회의 의원 및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 포함)의 자산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률규정에 근거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조치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제7조)”고 규정하였다.

1993년 11월 현재 신문사에 의한 조사에서는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듯 하지만, 시정촌 단계에서는 각각 고안한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옴부즈만제도가 조례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埼玉県鴻巣市에서는 옴부즈만의 임명에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행정사무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본격적인 옴부즈만조례를 神奈川県川崎市<sup>62)</sup>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정하였다.

## ② 지역진흥과 활성화

1993년에도 특히 30세 이하인 자의 정주촉진책으로 축하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과소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고민하는 지자체는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축하금, 장려금의 급여제도도 그러한 정책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 ③ 균형 잡힌 거리조성

개발과 자연환경보전과의 조화를 위해 예컨대, 경관형성지역을 지정하거나(돗토리현 조례), 개발지도구역을 지정하거나(나라현 지자체 조

61) 이런 유형의 조례제정의 의의를 검토한 논문은 長谷川俊英, “自治体の資産公開条例-『利益の衝突』の回避制度と運用状況-”, 都市問題第85卷第4号(1994), 29쪽 이하

62) 内田和夫, “川崎市の市民オンブズマン条例の制定”, 自治総研8月号(1990)

례)함과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제, 허가제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돗토리현, 오키나와현 지자체 조례)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 ④ 쾌적한 거리조성

이 유형에서의 동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이륜차, 자동차의 불법주차·방치에 대한 단속을 위해, 혹은 예방을 위해 빌딩에 일정한 주차장의 부설을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카나가와현, 오사카부, 치바현, 기후현 등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이며, 또 하나는 건물의 건설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변주민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지도요강의 제정이다(카나가와현, 고치현, 시가현 등).

#### 가. 아름다운 거리조성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경관의 형성·보전을 위한 지역의 「지정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경향으로 보여진다(미야기현, 카가와현, 오사카부, 아키타현 등). 그리고, 특히 광고물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

그런데, 이 유형에 속하는 조례의 1993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물 등의 「색채」를 배경과 조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카가와현, 오사카부, 나가노현 등).

이러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지향하는 도시경관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의 수는 니케이산업소비연구소가 1993년 11월에 2,048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3년에는 과거 최고가 된 것 같다.

아름다운 거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주민은 정신적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나. 복지거리조성

1993년도 계속하여 복지거리조성을 위한 조례제정(그 실시조치를 포함)에 대한 큰 움직임이 보인다(시가현, 도쿄도, 효고현, 오사카부 등에서 제정).

이러한 동향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도도부현·지정도시 단계에서는 34개 단체가 오사카부 복지거리조성 조례형의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사결과가 보도되었다(니케이 산업소비연구소).

『복지거리조성조례』의 제정에는 두 가지의 제정방식이 있다. 하나는 건축기준법의 시행조례를 이용하여 복지거리조성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이다(도쿄도의 건축안전조례, 오사카부의 건축기준법시행조례). 다른 하나는 자치입법으로 복지거리조성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이다(오사카부 복지거리조성조례, 효고현 복지거리조성조례 등). 자치입법으로 제정하는 장점은 대상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정비기준도 상세화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sup>63)</sup>

### ⑤ 환경보전

1993년에도 빈깡통을 시작으로 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금지조례의 제정이 성행하였다(야마가타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시즈오카현 등 전국적으로 제정됨). 무단투기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의 수의 증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조례제정의 효과는 매우 큰 듯하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처리법과 경범죄법 등 법률과의 관계에서 벌칙규정을 두는 것의 적정성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므로 벌칙을 둘 때에는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63) 大阪의 복지거리조성조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大阪府福祉部障害福祉課, “『大阪府福祉のまちづくり条例』について”, 都市と公共交通第21号(1993)

폐기물 관련에서는 산업폐기물을 현 밖에서 반입하는데 있어서는 지사와의 사전협의를 업자에게 요청하는 지도요강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나가사키현, 미에현, 이시카와현 등). 또한, 현행 폐기물처리법의 중점의 하나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생이용의 촉진』에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지자체의 조례개정 등의 움직임에도 주목하여야 한다(아이치현, 이시카와현, 야마나시현 등).

환경보전과의 관계에서는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대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폐기물문제에는 이제부터도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 ⑥ 복지·노동

도도부현과 시정촌은 각각 1993년도 중에『노인보건복지계획』을 책정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992년과 같이 시정촌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계획을 책정하는 때의 지침을 현이 책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시즈오 카현, 카가와현, 야마구치현 등). 그리고, 그 특징은 국가의 기준과 분류보다도 높은 수준의 상세화된 지침을 정하고 있는 점에 있다.

1992년도 말(1993년 3월 31일) 시점에서는 106개 시정촌(전체 시정촌의 4.9%), 3개현(후쿠시마, 나라, 에히메)이 각각 계획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1993년 6월 30일 시점에는 시정촌은 321개 시정촌이 계획을 결정하는데 이르고, 도도부현에서는 새로이 나가노현이 계획을 결정하였다.

#### ⑦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1992년과 마찬가지로 확장기에 의한 소음을 단속하는 조례가 제정 되었다(오사카부, 교토부 등).<sup>64)</sup>

64) 소음규제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한 문헌으로는 奥平康弘, “拡声器『暴騒音』規制条例をめぐる論議(上)(下)”, JURIST 1031号・1032号(1993)

⑧ 레저 관련

1992년은 레저보트의 진입금지구역을 정하여 유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후쿠시마현, 미야자키현, 나가사키현). 1993년에는 그러한 규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보트업자에게 공안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한, 레저보트, 다이빙, 마리나 등의 업자에 대해서는 사고방지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명기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조례가 제정되었다(오키나와현).

또한, 레저보트의 조종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나의 위치에 대한 지도요망을 책정함으로써 그 설치에 억제적 효과를 발생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설치상황을 파악하여 불법계류를 없애고, 나아가 수상에서의 레저안전을 확보하는 경향도 보인다(시가현).

⑨ 산업진흥

이 항목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1993년에는 1건 있다. 내용으로는 대규모소매점포의 출점에 대한 규제적 효과를 가진 행정지도요강의 유효기간의 연장이었다(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조례).

⑩ 세무·재무

상품권발행세의 과세에 대해서는 ㉠전화카드 등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세대상 외이므로 불공평, ㉡과세대상이 되는 답례용인가, 대상 외인 자기결제용인가를 판명하기 어렵고, ㉢시정촌 단위에서 과세하기 위한 지역격차가 생기고, ㉣소비세와의 이중과세가 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지자체부터도 폐지 지도가 이루어진 점에 따라 이러한 세를 과세하여 온 도쿄도, 오사카시, 삿포로시가 4월부터 폐지하는데 이르렀다(홋카이도 삿포로시).



## ⑪ 기 타

이 항목에서의 특징으로 우선, 부락차별 철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도쿠시마현, 돗토리현, 나가노현 등)된 것을 들 수 있다. 제정된 조례의 공통점은 차별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시책에 대한 주민의 협력의무와 주민 스스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책무를 정하고 있는 점이다.

## (3) 1994년 자치입법제정의 동향

## 1) 개 관

전체적인 특징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행정절차법』이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행정지도 그리고 신고와 관련된 행정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가져오는 행정절차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 거리조성관계 즉, 쾌적한 거리조성, 아름다운 거리조성, 복지거리조성에서 나타나는 조례·요강의 제정 혹은 개정이다. 셋째로, 환경기본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지자체관이라고 할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넷째로, 국가의 공공요금동결선언과 그 완화와의 관련에서 동요한 지자체의 상하수도요금과 버스요금 등에 관련된 조례 개정 동향이다. 마지막으로, 개호휴가제도를 포함한 근무시간법의 시행에 따라 시작된 지자체에서의 개호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규칙의 정비동향을 들 수 있다.

## 2) 조례유형별 특징

## ① 지자체와 주민

이 유형이 속하는 조례·요강 등은 가. 행정절차에 관한 것, 나. 정치윤리에 관한 것, 다.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 그리고 라.

선거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행정절차관계

지자체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신고와 행정지도에 각각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를 정하는 『행정절차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했다.

1994년 당시 행정절차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이바라기현, 도쿄도, 카나가와현, 토요야마현, 교토부, 오사카부, 돗토리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카가와현이다.

나. 정치윤리관계

『정치윤리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은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의 의원 및 지사 및 시정촌장의 자산 등의 공개에 대하여 1995년 말까지 조례로써 이 법률 규정에 근거한 국회의원의 조치에 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제7조).

1994년에도 자산공개 이외의 수단으로, 의원 및 그 친족 등이 관여하는 회사에 공공공사의 발주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장과 의원 등의 정치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다.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관계

정보공개제도는 1993년 4월 1일 이후 1994년 4월 1일 현재까지 새로이 3개현(이와테, 시마네, 에히메) 15市 5町에서 조례 또는 요강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조례를 둔 단체는 38개 도도부현 197시구정촌이 되고, 요강 등을 제정한 지자체가 5개 현 11시정이 되었다.

1994년 동향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4월 1일 이후에 나타난다. 현 단계에서는 나라현, 이와테현 그리고 니이가타현에서 제도화 혹은 이를 위한 시도가 나타난다. 개인정보보호제도는 1993년 4월 1일 이

후 1994년 4월 1일 현재까지 새로이 67개 단체에서 제정되었다. 그 결과, 1994년 4월 1일 현재, 10개 도도부현, 355개 시구, 678개 정촌, 6개의 일부사무조합이 개인정보보호조례를 두기에 이르렀다.

#### 라. 선거관계

선거공영조례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이 조례는 직접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사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 정치의 장에 나오는 주민의 대표자를 정하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인 점에 비추어 간접적이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② 지역진흥과 활성화

정주인구의 감소는 농산어촌과소지역과 대도시중심부에서 나타난다. 각각의 주된 요인이 다르므로 대응책도 차이를 보인다.

대도시중심부에서는 오피스빌딩숲에서 보듯이 각종업무기능이 집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버리는 것이 정주자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한편, 농산어촌 등 인구과소지역이 있는 지자체는 소규모화 및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담당하게 되는 인구층의 유출에 따른 정주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출산축하금과 결혼축하금 등의 지급제도가 마련되었다(기후현, 아오모리현등). 또한, 지역산업의 중심적인 담당자가 되는 인구층의 정주, 전입 및 U턴에 따른 정주인구증가책으로써도 전입 혹은 U턴에 대한 장려금과 지역기업에의 취업축하금의 지급이라는 수단이 기본적으로 취해지고 있다(미야자키현, 오카야마현, 가고시마현 등).<sup>65)</sup>

65) 吉田哲, “これからの過疎地域活性化施策のあり方(一)(二)”, 自治研究第70卷第9号・

### ③ 지역만들기 관련

#### 가. 균형 잡힌 지역만들기

효고현의 「신록이 풍부한 지역환경형성에 관한 조례」와 가마쿠라시의 개발지도요강은 구역을 나누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상세한 기준을 두어 지역만들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리조트개발에 관한 난개발방지의 관점에서 후쿠시마현은 리조트개발 등에 따른 경관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현립자연공원의 보통지역에 관한 「경관지침」을 책정하였다.

#### 나. 개성있는 지역만들기

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 5개현(야마나시, 히로시마, 쿠마모토, 가고시마) 4개정촌이 야생생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군마현과 오사카부가 동종의 조례제정을 검토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1994년 조례등의 동향조사작업에서는 나가노현 백마촌도 오오타카와 너조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백마촌에서의 희소동물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히로시마현은 1993년도 중에 이러한 종류의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1994년 2월부터 요보호야생생물의 지정제도,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 신고제, 보호구 등의 설정제도 등을 정하는 「히로시마현 야생생물의 중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 ④ 거리조성 관련

#### 가. 쾌적한 거리조성

자전거, 자동이륜차 그리고 자동차의 불법주차·방치에 대한 단속을 위한 조례와 그 예방을 위해 빌딩 등에 일정한 주차장의 부설을

---

第11号(1994)

의무화하는 조례가 폭넓게 제정되었다(카나가와현, 시즈오카현, 고치현, 치바현 등).

또한, 중고층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인근주민과의 분쟁방지·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요망이 제정·책정되었다(에히메현, 카나가와현, 시마네현 등).

#### 나. 아름다운 거리조성

1994년도 지역지정제도와 개발신고제도를 포함한 경관조례가 제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경관의 정비를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시정촌의 수는 니케이산업소비연구소가 1993년 11월에 실시한 전국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3년에는 과거 최다로 나타난다.

또한, 시가지 등에서의 녹화를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고자 하는 조례도 제정되고 있다.

#### 다. 복지거리조성

복지거리조성을 위한 조례제정과 정비요강·지침책정은 1994년 동향의 핵심적인 분야이다.

조례제정은 아이치현, 교토부, 카나가와현, 히로시마현, 시가현, 도쿄도, 후쿠시마현, 쿠마모토현 그리고 나가노 현에서 볼 수 있다.

#### ⑤ 환경보전

1994년 환경보전관계의 조례제정의 계기로써 들 수 있는 것이 1993년 11월 19일에 공포·시행된 환경기본법이다. 환경기본법은 지자체의 책무로써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에 준하는 시책 및 기타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짊」(제7조)을 분명히

하고, 지자체의 시책에 관하여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다.

법률은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조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1994년의 동향조사작업 과정에서, 오사카부, 도쿄도, 치바현, 사이타마현, 미야기현, 아이치 현 등 많은 지자체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깡통과 담배꽂초의 무단투기 금지조례의 제정도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아오모리현, 나가사키현, 에히메현, 쿠마모토현 등 전국에 걸쳐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관계의 조례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92년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1993년 현재 후생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률개정을 받아들여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한 지자체는 전체의 20%정도인 683개 단체에 그치고 있다.

그밖에 방치자전거의 처리방법·절차를 정하는 조례의 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와카야마현, 카나가와현 일부 시정촌에서 제정).

#### ⑥ 소비자보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조물책임법(PL법)을 제정한 것처럼 소비자보호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동향을 받아들여 이른바 「소비생활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도쿄도,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등). 1994년에는 도쿄도의 소비생활조례개정을 들 수 있다. 이 조례의 정식명칭은 「도쿄도 생활물자 등의 위해방지, 표시 등의 사업행위의 적정화 및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조례」이며, 1975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 후의 사회경제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향상을 도모하도록 전면 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⑦ 복지·노동

## 가. 100세 100만엔의 축하금지급조례

고령자복지를 위한 재원확보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확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고령자 복지에 할당되는 자금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령자복지 내부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여 보다 중요한 시책에 중점적으로 자금이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경로축하금』을 폐지 또는 삭감하여 그 자금을 보다 중요한 개호 등을 위한 비용으로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경로축하금을 폐지·삭감하는 시정촌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1994년에는 100세 100만엔지급의 경노축하금지급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야마가타현, 에히메현 일부 시정촌에서 제정).

## 나. 유료노인요양소운영조례

1994년에는 도쿄도가 앞의 소비자보호 유형으로 분류되는 소비생활조례에 근거하여 비용내용과 개호체제 등을 입주안내서 등에 표시할 것을 유료노인요양소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시행한 사례가 1건밖에 있었으나, 유료노인요양소의 운영 등의 적정화를 위한 대책이 중요하게 되었다.

## ⑧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성인비디오와 외설적인 내용의 컴퓨터소프트 등이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이른바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후쿠시마현, 야마구치현, 이바라기현)가 있었다.

⑨ 레저

1993년 동향고찰에서 다룬 오키나와의 「오키나와현 수난사고의 방지 및 유영자 등의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조례」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오사부에서는 급증하는 레저보트의 무단방치에 대처하기 위해 보트보관을 신고제로 하는 것 등을 정한 「레저보트대책요강」을 4월에 책정하였다.

⑩ 산업진흥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유기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을 중시한 농업을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가고시마현 일부 시정촌과 후쿠오카현 일부 시정촌에서 제정되었다.

지역에서의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진출기업과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한 조성금 등을 지급하는 조례제정과 기한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야마구치현 일부 시정촌, 홋카이도, 사가현 사가시 등에서 제정됨).

⑪ 공공시설·공물관리

미야기현에서는 장기계류선박이 주요어항에서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양륙 등으로 들르는 어선이 정박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계류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항구역 밖으로 선박의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어항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오키나와현에서는 리조트업자에 의해 바닷가주변이 둘러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변조례가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⑫ 세무·재무

상표권발행세는 8월 시점에 거의 모든 단체에서 이를 폐지하거나 폐지에 대한 방침이 정해졌다.



1994년 조례제정 동향의 특징 중 하나로 상하수도요금과 버스요금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둘러싼 동향을 들 수 있다. 당시 내각이 5월 20일 고속도로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을 동결하는 내각결정을 함에 따라 자치성은 같은 날 도도부현에 대하여 국가에 준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무차관 명의의 통지를 발하였다. 이 때문에 인상을 예정하고 있던 지자체는 곤혹스럽게 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상하수도요금과 버스요금의 인상을 보류한 지자체도 많았다(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야마가타현 등).

### ⑬ 조직·인사

개호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의 정비도 1994년 조례제정 동향의 하나의 기둥을 형성한다. 기타큐슈시, 나가노현, 효고현 그리고 후쿠오카시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호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계 조례를 제정하였다.

## (4) 1995년 자치입법제정의 동향

### 1) 개 관

지자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행정절차조례·개인정보보호조례 등의 제정과 주민투표조례의 제정 및 그에 근거한 주민투표의 실시 등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동이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지도에 관한 규율을 하는 행정절차법의 개정과 국가의 규제완화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이른바 택지개발 등 지도요강의 개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지거리조성조례·요강 등이 계속하여 전국적으로 제정되는 경향이였다.

다음으로 환경기본조례, 이른바 쓰레기무단투기금지조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조례·요강의 제정이 진행되었으며, 텔레폰클럽 등을 규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개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밖에 전국의 지자체 상호 간에 재해시의 상호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원조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두드러진 해였다. 이상과 같은 동향은 첫째로는 법률의 제정·개정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절차조례와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이 그러하다. 이는 이른바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나아가 국가의 입법정책의 동향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면 택지개발 등 지도요강의 개정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

## 2) 조례유형별 특징

### ① 지자체와 주민

이에 속하는 조례·요강등은 가. 행정절차관계, 나. 주민투표관계, 다. 자산공개·정치윤리관계, 라.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관계, 마.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행정절차관계

행정절차조례(규칙, 요강의 형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나, 편의상 일괄하여 「행정절차조례」라 함)의 1995년 중 제정동향을 확인하면,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히로시마현, 교토부, 카나가와현, 미야기현, 치바현, 도치기현, 기후현, 시가현, 홋카이도에서, 시정촌 단계에서는 요코하마시, 센다이시, 오사카시, 가와자키시, 치바시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자치성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도 내에는 모든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서 행정절차조례가 제정될 예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 나. 주민투표관계

1995년은 원자력발전소건설에 관하여 입지하는 시정촌 주민의 찬부 의사를 분기 위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된 해였다.

주민투표조례제정의 움직임에서 대표되는 조례의 제정·개폐를 요구하는 직접청구가 1996년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넓게 성행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에 있다.

또한, 1996년이 되어서는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오키나와현에서 주민투표조례(「일미지위협정의 재검토 및 기지의 정리축소에 관한 현민투표조례」)가 제정되었다(직접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의 수정 후 6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4일에 공포되었다).

#### 다. 자산공개·정치윤리관계

「정치윤리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의 의원 및 지사 및 시구청장 등의 자산 등의 공개에 대하여 1995년 말까지 각 지자체의 조례로써 해당 법률 규정에 근거한 국회의원의 그것에 관한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에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최저한도 필요하게 된다(미야기현, 오키나와현, 사이타마현 등에서 제정 또는 검토).

한편, 자산공개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혹은 자산공개 방법과 다른 방법을 함께 두는 등의 고안을 하거나 대상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범위보다 넓게 조례를 제정하는 단체도 많았다. 그리고 자산공개 이외의 방법으로는「정치윤리기준」을 정하고, 그에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일정수 혹은 일정 비율의 유권자 주민의 서명에 근거한 조사·문책제도가 채택된 예가 눈에 띈다(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등).

#### 라.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관계

정보공개를 조례·요강 등으로 제도화 동향으로는 도도부현 차원에서는 아오모리현, 오카야마현 등에서 나타난다.

자치성의 조사(1995년 4월 1일 현재)에 따르면 도도부현에서는 45개 단체가, 시정촌에서는 239개 단체가 각각 정보공개를 위한 조례·요강 등을 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관계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에서는 시가현, 히로시마현, 오키나와현, 미야기현, 교토부에서 조례의 제정 내지 시행이 나타난다. 자치성이 1995년 4월 1일 현재 종합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조례제정단체는 일부사무조합을 포함하여 1,129단체이며, 1년간 80개 단체(4개현 75개 시정촌 1개 사무조합)가 증가하였다.<sup>66)</sup> 또한, 조례의 규정내용을 보면, 매뉴얼처리된 데이터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전체의 11.5%에 해당하는 130개 단체,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보호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104개 단체에서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최근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의 기록, 이용·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각종 규제와 자기정보의 개시·정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단체가 많다.

마. 기 타

각종 옴부즈만제도의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도도부현에서는 오키나와현, 도쿄도, 미야기현에서 나타난다. 그 중, 오키나와현에서는 행정구제와 행정개선을 주축으로 하는 고충처리형의 옴부즈만을 요강으로 설치하고, 199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전국 최초이다.

## ② 지역진흥과 활성화

1995년도 신규졸업자 등의 청년 정주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축하금과 신생아의 증가를 기대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와 요강의 제정이 눈에 띈다(이시카와현, 기후현, 히로시마현, 나가사키현

66) 打田武彦, “地方公共団体の情報公開制度”, 地方自治第574号(1995), 36쪽 이하 참조

등의 일부 시정촌).

### ③ 지역만들기 관련

#### 가. 균형 잡힌 지역만들기

개별법의 적용에서 누락되거나 개별법의 규제가 충분히 미치지 않는 지역의 토지이용실태가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시가화정비구역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의 백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예방하여 토지이용의 적정화·환경보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시즈오카현은 지금까지 『토지이용사업의 적정화에 관한 지도요망』에 근거하여 골프장개발과 50ha 이상의 토지이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시정촌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지도하여 왔다. 이에 따라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현내 각 시정촌에서 토지이용계획과 종합계획이 확립되고,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제도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도요강이 개정되었다.

#### 나. 개성있는 지역만들기

1994년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생식하는 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가고시마현, 후쿠오카현 등의 시정촌). 보호방법으로는 ㉠채취·포획을 금지하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채취 등의 중지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을 내린다는 체계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많은 곳에서 발견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는가는 감시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어떤 조례도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그 유무에 상관없이 감시체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중지명령과 원상회

복명령은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조례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태지역의 환경보전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의 山景을 보전함으로써 개성있는 지역만들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교토시가 시가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토삼산(동산, 북산, 서산)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자연풍경보전구역에서는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는 자연녹지를 개발면적의 70% 이상 남겨둘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정한 『교토시자연풍경보전조례』가 그것이다. 경관보호조례에서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은 교토시의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였다.<sup>67)</sup>

#### ④ 거리조성 관련

##### 가. 쾌적한 거리조성

이에 속하는 조례·요강 등은 크게 택지개발지도관계, 불법주차방지·방치자전거대책관계, 기타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 택지개발지도관계

자치성은 1월, 수도권의 7개 도부현의 시정촌(각 도부현 당 5개단체정도)을 대상으로 요강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정청취를 1월 중순부터 2월에 걸쳐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문의 대상이 된 지정도시(고베시 제외)와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

---

67) 일본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중에 조례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 또는 5만엔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뜻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여 벌칙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와, 교토, 오사카의 6개 도부현 내 29개 시정촌의 합계 40개 단체 중 31개 단체가 이후 요망을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또한 나머지 9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1994년도 중에 개정을 마쳤다고 하였다.

㉠ 불법주차방지·방치자전거대책관계

불법주차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치바시, 시즈오카시, 나가노현 小布施町에서만 이루어졌다. 방치자전거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동향은 大津市 등에서 나타났다.

㉡ 기 타

이른바 원룸맨션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경향인 인근주민과의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맨션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확인신청의 제출 전에 시장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지도요강이 오사카시에서 제정되었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요강은 예전만큼 활발하게 제정되지 않는 듯하다.

나. 아름다운 거리조성

㉢ 도시경관조례관계

중점적으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의 지정제도와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광고물의 신개축에 있어서 사전신고제도 등을 정하는 『도시경관조례』의 제정(당해 조례에 의한 지역지정 포함)이 계속 이어진다.<sup>68)</sup> 또한, 조례가 아닌 요강 등의 형식으로 도시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에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이시카와현).

68)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치바현 치바시,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등에서 제정하였다.

㉠ 옥외광고물조례관계

도시경관보전의 관점에서 옥외광고물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조례를 개정하는 곳도 있다(오사카부, 치바현, 사이타마현 등).

㉡ 기 타

관광지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도시계획법상의 특별용도구역 설정하여 건축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가 야나기카와시에서 제정되었다.

다. 복지거리조성

니케이 산업소비연구소가 1994년 11월에 실시한 복지거리조성을 위한 조례·요강 등의 제정동향에 대한 전국조사결과가 1995년 2월 6일 공표되었다. 전 도도부현과 1,489시구정촌으로부터의 회답에 따라 나온 결과에 따르면, 1995년 1년간 해당 조례·요강 등을 제정할 예정이 있는 단체의 수는 과거 최고라고 하고 있다.

1995년의 동향조사작업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조례시행을 위한 각종 조치 포함)이 이전보다 많이 보인다. 도도부현에서는 도쿄도, 히로시마현, 나라현, 오이타현, 나가노현, 교토부, 사이타마현, 이와테현, 치바현, 시가현, 토야마현 그리고 시즈오카현에서 제정되었다.

⑤ 환경보전

가. 환경기본조례관계

1994년과 마찬가지로 1995년도 각 지역에서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시행 및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현저하였다. 도도부현에서는 사이타마현, 히로시마현, 카가와현, 미야기현, 이시카와현, 홋카이도, 시가현,



나가노현, 카나가와현에서 제정되었다. 또한, 니이가타현에서도 7월에 제정되었고, 후쿠이현에서는 관련된 것으로써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사업소의 규제 등의 근거가 된 공해방지조례의 개정이 기획되었다.

또한, 환경청의 1994년도 도도부현·지정도시의 지구환경보전관계 시책에 관한 조사결과가 1995년 12월에 공표되었으나, 이에 따르면 1994년도 중에 새로이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은 미야기, 사이타마, 치바, 도쿄, 후쿠이, 기후, 아이치, 미에, 히로시마, 카가와, 치바시, 요코하마시, 오사카시의 13개 都縣市이다.

오사카부는 주민과 부내의 사업자가 손쉽게 대처하는 환경보전활동의 방향성<sup>69)</sup>을 제시한 『지구환경보전행동지침』을 책정하였다.

#### 나. 폐기물대책관계

폐기물대책 관계는 ㉠무단투기금지관련, ㉡폐기물감량·리사이클관련, ㉢방치자전거처리관련, ㉣토사무단매립·건설잔토대책관련, ㉤산업폐기물처분장입지대책관련으로 나눌 수 있다.

미야자키현, 가와사키시, 오사카시, 요코하마시 등에서 무단투기금지조례의 제정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바라기현, 도쿄도에서 폐기물감량·리사이클관련 조례·지침이 제정·책정되었다.

산업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시에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요강의 제정이 보인다. 그 중에서 치바현의 요강은 지금까지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아 부정이용이 눈에 띄어 온 자기이용의 소규모 산업폐기물처분장의 설치에 있어서는 신고와 사전협의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자기사용산업폐기물처분장에 대한 대책은 각 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설치에 대한 신고와 사전협의를 함께 요구하는 것

69) 예를 들면, 직접 부엌의 배수구에 기름을 버리지 않는 등 일상의 행동점검항목과 환경을 배려한 제품만들기 등의 내용이 그러하다.

은 치바현이 처음이었다.

다. 환경영향평가관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하는 조례(사이타마현, 시가현, 오사카부 등에서 제정)의 제정·개정이 이루어졌다.<sup>70)</sup>

라. 수질보전대책관계

그 밖에 지표수(하천, 소호, 해수)와 지하수의 수질오염방지·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는 조례가 눈에 띈다. 하천의 수질보전에 관한 것은 아오모리현의 奥入瀬川구역의 시정촌에서의 통일조례 제정 등이 있다. 호소관계에서는 시가현이 비파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각 가정에 합병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시가현은 별도로 제정하는 환경기본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 한다.

해수관계에서는 오키나와현의 「적토 등 유출방지조례」가 있다. 그 목적은 산호초의 보전이지만, 이로써 리조트의 과잉개발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기 타

효고현이 6월 22일에 종합한 「환경보전과 창조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의 주정차 시의 장난스런 공회전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보전을 위한 폭 넓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종래의 공해방지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전 현토공원

---

70)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다. 즉, 1995년도에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조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그다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수단을 가지지 못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이 법률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서 조례로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화조례를 통합, 강화한 조례안이기 때문이다.

치바현에서는 현 내의 사유림 중 중점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유림을 특정하고, 공유림으로 매수하거나, 보안림으로 지정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지침이 책정되었다. 이 지침은 5가지 항목((a) 수질을 유지하는 수원의 육성, (b) 토사붕괴 등 산지재해의 방지, (c) 레크레이션, 교육의 장으로써의 보건문화, (d) 목재생산, (e) 대기정화, 경관보전 등 생활환경보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써 보다 세부적인 임림기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 ⑥ 소비자보호

### 가. 소비생활조례관계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계기로 하는 소비생활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이 홋카이도, 미야기현 그리고 사이타마현에서 이루어졌다. 결함상품에 관한 소비자로부터의 고충이 증가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야마구치현에서는 식품의 일자표시에 관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및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1994년 말에 개정된 것을 받아들여 표시사항을 「제조연월일」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과, 탈법행위적인 영감상법 등 부당한 거래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는 등으로 「소비생활의 안전 및 향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포장용기에 관한 분별수집 및 재생품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16일에 공포됨에 따라 사이타마현은 종래의 소비자보호조례 중의 사업자의 포장적정화에 관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 나. 기 타

그 밖에 미야자키현에서는 「장애인차의 취급에 관한 조례」가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미야자키현은 전국 유수의 시라스우나기(우나기의

치어)의 산지이므로, 취급을 등록한 자(3년마다 갱신)만으로 한정하여 밀어와 부정유출을 방지하고, 이에 개입하는 폭력단 관계자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⑦ 복지·노동

가. 복지정책 일반

아오모리현은 시설과 Home Helper의 설치, 이용상황, 자원봉사인구 등의 세부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복지전반에 대하여 각 도도부현을 비교하는 『보건복지지침』의 책정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아동감소대책·유치아동복지관계

아동감소대책으로써 후생성은 도도부현·시정촌이 아동육성계획을 책정할 때의 지침을 6월 27일에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후생성은 저연령아동보육과 연장보육 등의 구체적인 사업량을 포함하는 등 보육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고령자복지관계

유료노인요양소를 『우량』노인요양소로 하여 행정지도로 요양소의 안정적, 지속적인 운영과 입주자의 보호를 위한 지도지침만들기가 1995년에는 홋카이도에서 이루어졌다.

⑧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가. 청소년보호육성조례관계

텔레폰클럽을 통하여 청소년이 성범죄에 빠지게 되는 등의 문제가 연속하여 발생하는 것을 배경으로 법률상의 규제가 없는 텔레폰클럽을 규제하기 위해 각지에서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기후현, 사이타마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홋카이도 등). 전국에서

앞서 규제를 마련하게 된 기후현에서는 관련업자가 조례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성인비디오와 포르노잡지 등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규제하는 관점에서의 조례 제정도 시가현과 후쿠시마현 등에서 나타났다.

#### 나. 기 타

조례관계에서는 치바현이 도시부를 중심으로 하는 묘지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묘지, 매장 등에 고나한 법률 시행조례」를 개정(명칭도 「치바현 묘지 등의 경영허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다.

#### ⑨ 소방·구급·방재

지진 등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 지자체 상호간에 응원하기 위한 상호응원협정이 전국적으로, 그것도 대부분의 현경을 넘어서 체결(개정 포함)되었다.

#### 가. 상호응원협정

상호응원협정의 체결·개정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효고현 내에서는 소방본부장 등으로 구성되는 효고현 소방장회가 종래의 「광역소방상호응원협정」을 개정하고, 재해시에는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응원 출동한 경우에 응원 시정과 피응원 시정 사이의 비용분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치를 집행하였다.

나아가, 재해시의 생활물자를 응급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이 블록단위로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도쿄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도치기, 야마나시, 시즈오카 현 등). 그 밖에 골프장 시설을 피해자의 수용과 응원물자의 집적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기후현)과 재해복구 시의 자원봉사활동의 확보

를 위한 협정(도쿄도 등)이 체결되었다.

나. 지자체의 관련 동향

㉠ 재해대책기금조례

도쿄도에서는 대규모 재해 후의 복구를 위해 다른 지자체로부터 장기과건되는 직원에게 숙박비를 지불하는 때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고, 아이치현에서는 인사위원회규칙을 개정하여 재해발생시에 다른 부현·현내 시정촌으로부터 현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재해과건수당이 신설되었다.

㉡ 기 타

시즈오카현이 지진대책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위험물과 장해물의 규제·지도를 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내의 통일된 지진대책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지진대책추진조례』를 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ex. 시즈오카현).

㉢ 레 저

가. 레저보트대책관계

항구와 하천에 불법계류되는 레저보트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한 보관·계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 요코하마시였다. 이러한 레저보트대책은 1994년에는 오사카부에서 이루어졌다.

나. 수상사고대책관계

먼저, 홋카이도에서는 최근 낚시배와 레저보트에서의 수난사고가 다발하고, 어협으로부터의 구조출동 횟수의 약 반수를 차지하게 되어 그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수난구조체제와 수난구난소원의 신분보장확립을 위한 조례를 시정촌에서 제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가이드라인작성을 시작하였다. 또한 시가현에서

는 비과호 위에서의 수상바이크에 따른 사고다발 대책으로써 비과호 등 수상안전조례를 개정하고, 수상바이크사용을 신고제(신고를 게을리한 때에는 벌금) 하에 두는 것이 검토되었다.

⑪ 산업진흥

지역산업진흥수단의 하나로 종래로부터 자금조성조치 등을 강구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역산업진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침의 책정은 이시카와현, 홋카이도 그리고 시가현에서 나타난다.

또한, 오카야마현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써 현 밖으로 출하하는 과일과 야채 등 현산청과물의 등급, 중량, 용기 등의 규격을 정한 『오카야마현 청과물 출하규격조례』를 폐지할 것을 정하였다.

⑫ 공공시설·공물관리

가. 시설이용관계

후쿠시마시는 시영주택의 악질적인 임차료 연체자 대책으로써 시영주택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세 연체자의 입거를 인정하지 않는 등 입거자격을 엄격하게 하였다.

나. 바다관리 관계

1995년은 瀬戸内海 보통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관점에서 관리조례가 제정되었다.

⑬ 세무·재무

가. 상품권발행세

1994년 8월 현재, 와카야마시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서 상품권발행세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정한 방침이 확정되었으나, 1995년 3월에 와카야마시도 이 세금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나. 교제비·식량비 지출관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홋카이도 등에서 교제비·식량비의 지출을 적정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책정하였다.

⑭ 조직·인사

가. 조직관계

여성의 등용이라는 관점에서 심의회의 여성위원 임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작성을 위한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다. 사이타마현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심의회 위원 2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심의회 등에의 여성등용촉진요강』이 책정, 시행되고 있다. 전국 도도부현 의회장회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94년까지 15년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부 317건, 연평균 21건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대부분이 위원회 조례 등 의회 내부에 관련된 것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은 86건으로 그 중에 성립된 것은 16개 조례밖에 없었다.

지방분권이 현실화됨에 따라 조례제정의 질과 양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지방의회의 활성화·역량향상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야기현에서는 현의회심의회에 대한 현민의 관심이 높고, 방청희망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방청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에서 위원회에서의 방청을 사전신청제 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나. 급여 등 관계

특별직직원과 의원보수의 상승, 특히 의원보수의 대폭상승이 눈에 띈다고 보도되었다. 니이가타현에서 특별직 퇴직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특별직 직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등에는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 기 타

도치기현에서 현 직원의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동거하는 조부모, 형제자매)이 병에 걸린 경우 등에 최고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간호휴가를 인정하는 제도가 조례로 마련되었다.

### 3. 지방분권 이후의 조례제정권론의 변화

#### (1) 지방분권개혁의 추진

일본에서는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지방분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동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권고(71)를 통해서 지방분권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1998년에 제정된 “지방분권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분권일괄법“이라 한다)이다. 동 법에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사무의 신설, 국가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관여의 법정주의·일반법주의 원칙에 따른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72)</sup> 『지방분권일괄법』은 개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2000년 4월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개정이다. 즉, 200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우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종전에 국가사무로서의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

71)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관해서는 줄고,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통권 제29호, 87-89쪽 참조

72) 지방분권일괄법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최민호, “일본의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의 내용과 시사점”, 지방행정, 2003. 9., 47쪽 이하 참조

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집행하는 사무로서 이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사무를 기관위임사무가 차지하고 있어서 자치권 행사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다.<sup>73)</sup>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법정수탁사무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치사무의 유형을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한 점이다. 즉, 자치사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정자치사무와 법률에 규정이 없는 비법정자치사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sup>74)</sup> 여기서 비법정자치사무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자치사무이다.

그밖에도 국가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관여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관여법정주의, 관여의 공정·투명성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관여신설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2)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조례제정권의 확대

200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조례제정권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제2조제11항에서는 입법자에게, 제2조제12항에서는 법해석자·법운용자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본지에 근거해서 국가와 지자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법·해석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조문의 신설로 법률과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자주성·자립성을 존중하고, 가능한 조례의 규율이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조문을 국가와 지자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하며(자치적합적한정해석), 반대로 조례를 위법에 이르지 않도록 해석(합법적한정해석)

73) 村上順, 『日本の地方分権』, 弘文堂, 2003, 223-224쪽

74) 분권 개혁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법률에 정함이 있는 자치사무를 “전국표준적 자치사무”로, 법률에 정함이 없는 자치사무를 “지역본래적 자치사무”로 표현하는 견해가 있다. 村上順, 앞의 책, 126쪽

할 것이 요청된다.<sup>75)</sup> 나아가서 명확하게 조례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지에 적합한가, 입법원칙의 관점에서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단순히 법률이 우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례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종래 법률과 조례의 관계는 조례제정의 가능성 여부, 초과조례·병행조례의 적법성 여부의 양자택일적 논의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방분권개혁의 결과 어느 범위에서 어떤 법규범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3) 새로운 조례제정권론의 등장

분권개혁의 결과 조례제정권에 대한 논의는 종전의 법률선점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법령위반”의 판단 또한 법률의 절대적 우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법률과 조례 어느 쪽의 법규범을 무효로 할 정도의 실질적인 위반의 유무, 그리고 실질적인 위반이 있었다면 어느 쪽의 법규범을 우선적용할 것인가하는 유연한 판단이 가능해졌다. 즉, 조례와 법률의 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sup>76)</sup>

#### 1) 법률·조례의 헌법적합성

법률이나 조례는 모두 헌법원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입법사실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한 원칙일 것이다. 종전에는 조례와 법률간의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항상 그 이전에 법률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분권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법률 그 자체의 규율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직접적으로 헌법적합성과 연관된다.

75) (財)日本都市センター, 分権型社会における自治体法務, 2002, 69쪽

76) (財)日本都市センター, 앞의 책, 70쪽

## 2) 제도의 중복과 규범의 충돌

법률과 조례의 충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이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행위를 금지하거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양자는 충돌하게 된다.

또 법률과 조례 각각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양자를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무에 관해서 법률상의 제도와 조례상의 제도가 중복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례의 위법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徳島市公安条例事件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상의 제도와 조례상의 제도가 일부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명백하게 모순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자주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양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3) 규범의 충돌 조정의 문제

법률과 조례가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서는 아니된다. 우선 조례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규율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법사실 등에 기초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의 본지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원칙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을 허용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의 제시가 요청된다.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근거를 비교형량하여 어느 법규범을 우선시킬 것인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조례를 법률적합적으로 한정해석하거나 반대로 법률을 자치에 적합하도록 한정해석하거나 하는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제 3 절 시사점

### 1. Home Rule 제정권한과 조례제정권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적 형성배경이나 규범체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대륙법적 관념 아래 형성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다만, 자치입법권, 즉 Home Rule 제정권한의 보장과 이를 통해서 자치권을 실현한다는 관념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것이다. 즉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보장은 자치입법권의 보장을 통해서 규범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자치법규를 국가행정의 종속물로서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보는 일부 견해는 더 이상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자치법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표현이며, 따라서 행정입법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자주적 규범체계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Home Rule의 제정권한의 한계를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치입법권은 국가의 법규범체계와의 관계를 재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 2. 정책 개발 노력과 조례제정권의 관계

일본의 지자체들은 지방분권 개혁 이전에도 자주적인 자치법규 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과조례·병행조례의 개념을 적용해 오는 등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대규모 공해사건이 계기가 된 일본의 자주적 조례제정 노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자치규범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표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확대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례제정권의 확대는 사무범위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입법원칙의 확립을 통해 헌법 개정에도 이르지 않아도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경향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사무의 신설에 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우선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자치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의 폐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치사무의 범위를 기관위임사무와의 대비 속에서 확정해 왔던 종전의 논의에서 탈피하여,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자치사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의 정립이 중요하다.

현대 행정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사무를 국가와 지자체 어느 쪽이 담당하는 것이 주민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 제 1 절 자치입법의 일반현황

## 1. 개 요

## (1) 자치법규의 운영현황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도 말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운영건수는 조례의 경우 제정이 369건, 개정이 996건이며, 폐지된 건수가 125건으로 총계 4,119건으로 평균보유건수는 257건으로 2006년 말과 비교해서 조례 총 보유 건수는 244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별 평균 15건 증가하였다. 10년 전인 1997년과 비교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총 조례보유건수는 984건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별 평균보유건수는 62건 증가하였다. 즉 10년 전에 비해서 조례의 형식적 규모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를 통해서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규칙 총계 1954건을 포함한 자치법규의 운용현황은 6073건으로 1997년보다 985건이 증가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의 경우는 1997년말보다 994건 증가하였으며, 규칙의 경우에는 1997년말보다 9건이 감소하였다.

&lt;표1&gt;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운영현황 (2007.1.1~2007.12.31)

(단위: 건)

구분	1997년말 보유(평균)	2006년말 보유①	운영총계 (②+③+ ④)	제정②	개정③	폐지④	증감 ②-④	2007년말 보유⑤ (평균)
조 례	3135 (195)	3,875 (242)	1,490	369	996	125	244	4,119 (257)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구분	1997년말 보유(평균)	2006년말 보유①	운영총계 (②+③+ ④)	제정②	개정③	폐지④	증감 ②-④	2007년말 보유⑤ (평균)
규 칙	1963 (123)	1,928 (120)	634	90	490	54	36	1954 (122)

(2)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 현황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현황

다음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조례제정건수의 비교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사무들이 이양되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조례제정건수에서 77건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가 조례제정건수가 32건으로 가장 적은 전라남도의 11건에 비해 21건이 많다. 광역자치단체별 조례보유건수 또한 인천광역시가 가장 많은 329건을 차지하고, 가장 적은 울산광역시가 211건으로 118건의 차이가 있다.

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조례제정건수는 평균 19.7건으로 특·광역시의 평균 22건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다.

특별시·광역시간 조례제정건수를 비교해보면 부산광역시가 14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가 32건으로 가장 많다. 도의 경



우에는 경기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라남도가 11건으로 조례제정건수가 가장 적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1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조례는 총 1,490건으로 자치단체별 평균 처리건수는 93.1건으로 여전히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정책개발과 자치입법개발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치입법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조례 제정 및 개·폐 현황(2007.1.1~2007.12.31)

(단위:건)

구 분	2006년말 보유①	운영총계 (②+③+④)	제정②	개정③	폐지④	증감 ②-④	2007년말 보유⑤
계	3,875	1,490	369	996	125	244	4,119
서울특별시	251	141	25	11	4	21	272
부산광역시	272	72	14	48	10	4	276
대구광역시	260	69	17	48	4	13	273
인천광역시	309	224	32	180	12	20	329
광주광역시	267	67	24	43	-	24	291
대전광역시	257	134	26	103	5	21	278
울산광역시	205	97	16	71	10	6	211
경기도	251	127	27	95	5	22	273
강원도	215	50	14	33	3	11	226
충청북도	205	63	16	44	3	13	218
충청남도	216	57	19	35	3	16	232
전라북도	218	57	17	40		17	235
전라남도	213	52	11	40	1	10	223
경상북도	207	43	18	24	1	17	224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구 분	2006년말 보유①	운영총계 (②+③+④)	제정②	개정③	폐지④	증감 ②-④	2007년말 보유⑤
경상남도	210	76	16	58	2	14	224
제주특별 자치도	319	161	77	22	62	15	334

2) 규칙의 제정 및 개·폐 현황

규칙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77건(제정 38건, 개정 18건, 폐지 21건)으로 운영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남도가 18건(제정 3, 개정 14, 폐지 1건)으로 가장 낮다. 총 보유건수에서는 서울특별시가 165건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가 91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에 따른 규칙제정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그치고, 이를 굳이 규칙으로까지 위임할 만한 사항이 적기 때문에 규칙제정건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3> 규칙 제정 및 개·폐 현황 (2007.1.1~2007.12.31)

(단위: 건)

구 분	2006년말 보유①	계(②+③+ ④)	제정②	개정③	폐지④	증감 ②-④	2007년말 보유⑤
계	1,928	634	90	490	54	36	1,964
서울특별시	162	71	3	68	-	3	165
부산광역시	119	39	1	28	10	-9	110
대구광역시	135	32	1	31	-	1	136
인천광역시	172	54	3	47	4	-1	171

구 분	2006년말 보유①	계(②+③+ ④)	제정②	개정③	폐지④	증감 ②-④	2007년말 보유⑤
광주광역시	120	34	5	29	-	5	125
대전광역시	133	38	5	29	4	1	134
울산광역시	87	46	2	39	5	- 3	84
경기도	147	56	3	49	4	-1	146
강원도	126	24	-	24	-	-	126
충청북도	93	30	9	19	2	7	100
충청남도	111	34	4	30	-	4	115
전라북도	100	29	4	25	-	4	104
전라남도	117	18	3	14	1	2	119
경상북도	87	32	7	22	3	4	91
경상남도	103	20	2	18	-	2	105
제주특별 자치도	116	77	38	18	21	17	133

### (3) 조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현황

2007년 한 해 동안 조례재의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광역시가 1건, 강원도가 1건으로 총 10건이다. 인천광역시의 2007년 조례제정건수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의요구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점 또한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조례발의권자별로 보면 단체장 발의는 1건이며, 의원발의가 9건으로 의원발의조례가 재의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지방의원의 조례제정능력을 지원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재의요구사유별로 보면 법령위반이 9건, 단체장의 이의에 따른 재의요구가 1건이다. 재의요구권자에 따라서는 자체재의요구가 7건, 상급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기관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가 3건으로 자체적인 조례의 적법성 심사  
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 조례 재의요구 현황(2007.1.1~2007.12.31)

(단위 : 건)

구 분	총계	제안자		재의요구 유형 및 사유								비고
		단체장 발의	의원 발의	자체재의요구			상급 기관 지시					
				이의	법령 위반	공익 위반	시·도지사		장 관			
							법령 위반	공익 위반	법령 위반	공익 위반		
계	10	1	9	1	6	-	-	-	3	-		
서울특별시	-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인천광역시	8	-	8	-	6	-	-	-	2	-		
광주광역시	1		1	1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울산광역시	-	-	-	-	-	-	-	-	-	-		
경기도	-	-	-	-	-	-	-	-	-	-		
강원도	1	1	-	-	-	-	-	-	1	-		
충청북도	-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		
전라북도	-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		
경상북도	-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lt;표5&gt; 조례 재의 상세 내역(2007.1.1~2007.12.31)

구분	조례명	제안 (발의)	재의요구 지시자	재의요구 사유	재의 결과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 례안	의원	장관	조례안중 권리승계,승계 의결정 등→『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규정에 위배됨	부결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의원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및 조례 제정범위→『지방자 치법』에 위배됨	재의결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외국 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원		외국인투자기업 범위와 분류는 상위법에서 위임 되지 않았으며, 상위법 에 제한되지 않은 사항 을 조례에서 제한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유치협 의회관련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상위법 위배됨	재의결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지방직영기업의 재산취 득시 별도로 의회의결을 얻도록 한 사항→『지방 자치법』 및 『지방공기업 법』에 위배됨	재의결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 회 운영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의원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심 의위원회 설치, 민간투자 사업규정, 공공부문 출자 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발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시 시의회 의결, 위 원회 위원구성 등→『지 방자치법』에 위배됨	재의결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세 감 면 조례 일부개정	의원		외국인특례적용 및 지방 세 감면→『대한민국헌법』,	재의결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구분	조례명	제안 (발의)	재의요구 지시자	재의요구 사유	재의 결과
	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배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영수 익사업용지의 매 각 등에 관한 조 례안	의원	장관	경영수익사업용지매각계 획 의회보고, 수익계약 대상규정, 자치단체장의 권한 제한 등→『지방공 기업법』, 『공유재산및물 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위배	재의결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립체 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의원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지방공기업에 한정하는 것 과 공공체육시설을 체육 시설업으로 구분한 것→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	계류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 원에 관한 조례	의원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 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벗어남	부결

## 2. 법령에 의한 조례위임 현황

### (1) 위임조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 의 의

위임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입법 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 2) 법적 성질

위임조례가 법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제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입법, 즉 위임명령에 있어서의 위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문제

가 된다. 행정입법의 근거조항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위임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으로만 본다면 적어도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임조례는 위임명령보다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이처럼 자치법규인 조례에 포괄적 위임을 허용한 것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구성 및 주민대표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인 것 같다.<sup>77)</sup>

그러나 실제 개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대부분 행정입법인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법률의 하위에 놓인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 많다.

이는 조례가 자치입법권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국법체계의 일부를 이루면서 국법의 단계구조에 있어 명령보다 하위에 놓인 법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77) 대법원 1991. 8. 27, 90누6613. 대법원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관 1997. 4. 25, 96추251. 대법원은 차고지확보조례의 법률적 위임근거 여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에서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9조의10 제3항의 규정은 비록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차고지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의 법률적 위임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헌재 1995. 4. 20, 92헌마 254, 279 결정.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3) 위임조례 운영상의 문제점-표준조례의 문제-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위임명령의 경우 그러한 위임명령은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이 작성하고 정부입법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처의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임명령을 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시에 적합한 내용으로 위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처는 소관법령상의 조례위임사항을 법규화시켜서 지침으로 내려보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위임조례의 작성시 참고로 하는 지침적인 조례를 표준조례라고 한다.

표준조례는 조례위임사항에 대하여 그 표준시안을 조문형식으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는 것인데 과거 조례준칙<sup>78)</sup>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한다.

이런 표준조례는 조례준칙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심의 등에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사용되는 구속력이 없는 문건이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표준조례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모두千篇일률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인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sup>79)</sup>

---

78) 조례준칙이란 1990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시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당시)(서울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시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조례의 숫자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상급관청이 조례안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국적인 행정통일을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사전에 조례준칙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관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준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을 기입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런 조례준칙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설, 행정규칙(훈령)설 등이 있으나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9) 각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이를 재촉하는 사례도



그런데 이와 같은 표준조례를 각 부처 등이 임의로 만들어서 시달하기 때문에 표준조례 자체가 상위법규위반, 관련법령저촉, 자구체계상의 정합성 미비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sup>80)</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별 특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거나 복수의 기준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거나 조문형식으로 된 표준조례 대신 개조식으로 조례 제정시 유의사항 정도를 알려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입법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 (2) 현행 법령의 조례위임방식 검토

현행 법령에서 취하고 있는 조례위임방식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1유형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사무의 위임

이러한 위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은 대부분 수수료, 점·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집행사무를 위임하거나 인·허가권 또는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이나 「도로법」 제41조에 따른 지방도로의 점용료 징수사무,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그러하다.

---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가 표준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치입법권의 제정을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80) 조정찬, 위임조례 위주의 조례입법 극복방안, 지방자치법학회 학술발표회, 2005. 43면. 각 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표준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총 몇 건의 표준조례가 시달되었는지에 관한 통계조차 없다고 한다.

2) 제2유형 : 위원회 설치 위임

중앙에 존재하는 위원회에 대응하는 지방위원회 등의 설치를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형식의 위임조례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해서 동협의회의 구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제8조에서는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선택을 권고하고 있다.

3) 제3유형 :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위임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위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관광진흥법 제76조)고 하는 규정이나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4) 제4유형 :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적용의 위임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환경기준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고 하여 이른바 초과조례의 제정을 허용하면서, 단서조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한정하는 위임방식이다.

## 5) 제5유형 : 포괄적 사무위임

일정한 사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례제정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 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도로명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사무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밀접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 6) 제6유형 : 부분적 행정권한 행사를 위한 조례위임

관할구역내에서 일정한 구역이나 문화재의 지정권한이나 협약체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0조와 같이 영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시민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사회협약”과 같은 비규제적 수단은 굳이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이러한 위임조항은 단순한 확인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법령의 범위안”이라는 조례제정권의 제약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을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③시·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4 조 (가축방역협의회) ③중앙가축방역협의회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6 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③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그 시·도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7 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④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 4 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④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관리계획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명	내 용	비고
	제14조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②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	<p>제 5 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제40조의2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li> <li>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li> </ol>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p>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②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 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p>	
<p>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p>	<p>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 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건축법</p>	<p>제 4 조 (건축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제 5 조 (적용의 완화)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 6 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 7 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법령명	내 용	비고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④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결핵예방법	제29조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③제1항의 의료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관법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4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③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④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분과협의회, 사무국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적용범위)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④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p>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5조 (기금의 설치·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7 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5 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제28조 (관리 및 처분) 제34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개수수료 등) ③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과학관육성법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②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	



법령명	내 용	비고
	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조례의 제정)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③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3 조 (구조대의 편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19 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p>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국민연금법	<p>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p>	
국민체육진흥법	<p>제 5 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⑦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시행령) 제27조 (대한민국체육상 등) ③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44조 공동구의 설치·관리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p>	

법령명	내 용	비고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14조 운영세칙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6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 8 조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⑤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시·도의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5 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및 농산 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제 5 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③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23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수수료 등) ①대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라 함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하여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명	내 용	비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녹화계획) ④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녹지활용계획) ③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p>제13조(녹화계약) ②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p> <p>제41조 (점용료의 징수)</p> <p>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⑤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도시교통정비 촉진법</p>	<p>제15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④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p>	<p>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p>	<p>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p> <p>제22조 (지방세의 감면)</p> <p>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법령명	내 용	비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 5 조 (지하사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하되,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이용율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당해 토지 및 인근토지의 이용실태·입지조건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6 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 7 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 8 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0조 준공검사 제23조 선수금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7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제28조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제29조 이전추진단 설치 제32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4조 자금지원 등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 (시·도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특정도서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시·도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도서의 명칭·위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p>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내지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독립기념관법	<p>제21조의2 (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의 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동물보호법	<p>제 5 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p>	
문화예술진흥법	<p>제 4 조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p>제 7 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p> <p>제 8 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p> <p>제19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p> <p>(시행령) 제14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법령명	내 용	비고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9 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④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방조제관리법	제 3 조의2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결정) ③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도의,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서 각각 정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 (사회복지위원회) ④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 5 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⑧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4 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 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④지방산업입지심의회 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 5 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명	내 용	비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소음·진동 규제법	제53조 (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 조 (국립수목원 등) ③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수산업법	제91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배출허용기준)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시·도경제협의회규정	<p>제 9 조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식품위생법	<p>제30조 (영업의 제한) ①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 유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p>제 4 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제2항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악취방지법	<p>제 7 조 (배출허용기준)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p>	
야생동·식물 보호법	<p>제26조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법령명	내 용	비고
	②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어촌·어항법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연안관리법	제23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기능,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6 조 (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4 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응급의료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제 6 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령명	내 용	비고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 7 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공원법	제 9 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시·도에 도립공원위원회,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 4 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p>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자연환경보전법</p>	<p>제24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30조 자연환경조사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제3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p>	



법령명	내 용	비고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②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 9 조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①시·도지사 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 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 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 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5 조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①시·도 본부장 소속으로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 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 3 조 (구성) ①전국연합회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의용소 방대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 9 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제 5 조 (주민투표권)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법령명	내 용	비고
주택법	제 8 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 6 조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발전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제4조제2항에 관한 지역적 사항을 심의한다. ③그 밖에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 2 조 적용범위 제 4 조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령등의 제정 및 시행 제 5 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 7 조 관리자 제 9 조 관리자의 업무 제11조 기업관리규정 제19조 지방채 제22조 요금 제37조 잉여금 제39조 회전기금 제46조 업무상황공표 제49조 설립 제53조 출자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75조의4 권한의 위탁 제82조 과태료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2 조 (설치 등<개정 1999.12.28>)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 (설립 및 등기)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 5 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조례의 제정) ①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지하수법	제12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	

법령명	내 용	비고
	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 (협회의의 구성) ④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 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 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③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 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국가경 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 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특정 지역을 활 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 인 운영·발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법령명	내 용	비고
측량법	제58조 (지명위원회) ④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명위원회 및 시·군·구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통합방위법	제 5 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12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⑤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제 7 조 (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	

법령명	내 용	비고
	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천법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구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월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 내지 제30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5 조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법령명	내 용	비고
	<p>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환경정책기본법</p>	<p>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p> <p>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 1. 특별시·광역시의 자치입법 실태

#### (1) 의회에 관한 자치입법의 변화

1998년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분야에 속하는 자치법규는 대부분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용에 관한 법령에 기초를 둔 것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성이나 독자성을 갖춘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징적인 조례나 규칙들을 형성해 왔음을 조사결과 알 수 있었다.

우선 의회관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으로서는 특별시·광역시에 공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의회 공인조례,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 회의(회기 또는 정례회 등의)운영 기본 조례, 의회 회의규칙,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그 밖에 1998년 조사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들었던 “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경기도)”이 특별시·광역시 차원에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등으로 확산되었다.

조사결과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우선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부산·대전·대구·인천)등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정책연구위원회는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조) 위원의 구성은 의회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제3조)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특히 입법안에 대한 자체심의 및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다는 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에 비추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 왔던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밖에 “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등 자치법규의 제정절차를 규범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주목할 만하다.

조례(규칙)명	'98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0	0	0	0	0	0	0
•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0		
•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0		0					0
•의회 공인조례	0	0	0	0	0	0	0	0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0	0	0		0		0	0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0	0	0	0	0	0	0	0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0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0					0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			0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0	0	0	0		0	0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0				
•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0			0	0		0	0

조례 (규칙) 명	'98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	○	○		
•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	○	○		
•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 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		○			
• 의회 청원 심사규칙	○			○	○	○	○	○
• 의회 포상조례				○				
• 의회 회의(회기 또는 정례회 등의)운영 기본 조례		○	○	○	○	○	○	○
• 의회 회의규칙	○	○	○	○	○	○	○	○
• 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				○
•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의회에서 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 에 관한 조례	○		○	○				○
•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 위에관한조례	○	○	○	○	○		○	○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	○	○		○	○

## (2) 언론·홍보에 관한 자치입법

언론·홍보에 관한 자치입법체계는 1998년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만 있던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제정한 점과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시 상징물조례」를 제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조 례 (규 칙) 명	'98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	○			○	○	
•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				○	
•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서울시립대학부설수도권개발연구소규칙		○					
• 시보발행조례/규칙	○	○	○	○		○	○
• 시상징물조례		○					○

### (3) 감사에 관한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관한 자치입법은 1998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1999년 8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연서주민의 수 등에 대한 규율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16조(도입당시 제13조의4)에서는 주민감사청구권자의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특징적인 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몇몇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오던 시민옴부즈만조례를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연계하여 규율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실제적·절차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조례로는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점이다. 동 조례는 사회의 각 부문별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위하여 공공부문, 정치부문, 교육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 등 사회의 구성주체들이 모여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협약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이른바 협치적 수단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조례(규칙)명	'98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 감사자문위원회 조례	○	○					
• 공무원행동강령		○	○	○	○		○
• 공익(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	
•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	○
•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					
•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			○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 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				○	○		
• 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시행규칙				○			
• 자체감사규칙				○	○	○	○
•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	○	○

조례 (규칙) 명	'98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	○	○	○	○	○	○	○
•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			○
• 행정감사규칙	○	○	○					

#### (4) 경영기획

##### 1)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증가

경영기획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우선,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흡하지만 우리의 입법정책에서 지방분권적 관점을 반영한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몇몇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 ①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련사무는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특성에 비추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행정기관의 개념<sup>81)</sup> 속에 포함시킬 뿐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같은

81)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4호)

법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문의 규정취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이러한 입법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동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행정규제에 대한 조례제정의 가능성을 형성해 준 것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기본조례」

2005년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기금관리기본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기금관리기본조례」는 대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제한, 주식 또는 부동산 매입 금지의 원칙 등 기금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③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1996년에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고 법령의 입법예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에 적용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예고문의 작성 원칙,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예고사항의 확장 등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입법예고 후 주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나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예고사항의 확장은 행정절차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정들로 이른바 주민근거리행정의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 2) 자치단체별 특색 있는 조례

### ①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의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sup>82)</sup>는 중앙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갈등관리기본법」<sup>83)</sup>보다 앞선 것으로 동 조례에서는 갈등 영향분석의 실시의무, 정보공개 및 공유에 관한 노력의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시장의 심의결과 반영 의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한 규정과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등 다양한 행정수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례의 내용이 10개조를 넘지 않고, 대부분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 조례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또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서울, 대전, 인천)도 특색있는 조례의 하나로 들 수 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별개의 제도로 구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육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82) 도 차원에서는 충청북도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83) 참여정부 시절에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폐안된 바 있다.



있다. 특히 동 조례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가 거의 유사하나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③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광역시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조례는 300인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시장에게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론결과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조례 (규칙) 명	'98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지원)조례	○	○	○	○		○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지원)조례 시행규칙	○	○	○	○		○		
•(지역)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	○			○	○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				
•경륜공단 설치 조례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규칙)명	'98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부고속철도변경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0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0	0	0		0	0	0	0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0	0						
•공무원제안규칙	0	0	0		0	0		0
•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0	0	0	0	0	0	0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0		0		0		
•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0	0	0	0	0	0	0	0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0	0	0	0	0	0	0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0		0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0						
•기금관리기본조례			0	0		0		
•기금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				0		0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0						0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0	0		0	0	0	0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		0				0		
•다수인 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0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0			0		0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0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0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시행규칙				0				
•도시공사 설치 조례			0		0		0	0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0						
•민간투자 촉진 조례/시행규칙			0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0			0	0	0	0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법률고문운영 규칙	0				0			
• 법제사무처리 규칙	0	0	0			0	0	0
• 법제업무 운영 규칙			0					
• 보조금관리조례	0	0	0	0	0	0	0	0
•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0						0	
• 보증채무 관리 조례	0			0	0	0	0	0
• 부시장사무분장규칙		0						
• 사무위임 규칙	0	0	0	0	0	0	0	0
• 사무위임 조례	0	0	0	0	0	0	0	0
• 사무전결처리 규칙	0	0	0	0	0	0	0	0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0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0		0	0	0	0	0	0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0		0	0	0	0	0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0	0						
•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	0	0						
•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0	0						
•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0	0	0	0	0	0
• 소송사무 처리규칙	0	0	0	0	0	0	0	0
•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0		0	0	0		0	0
• 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		
• 시립대학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0					0		
• 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0							0
• 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	0	0						
•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0	0						
•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0	0	0		0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98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
•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	○		
•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		○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		○		
•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		
• 인천대학교운영조례	○					○		
•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					○		
• 인천대학교지방대학특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						○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						○		
• 인천전문대학운영조례	○					○		
•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					○		
•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	○	○	○		○	○	○
•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	○	○				○		
•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	○		○	○	
• 자치법규집발간규칙				○	○			
• 장학금지급조례	○	○						○
• 재정운영 조례/시행규칙		○						
•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					○	○	
•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					○	○	
•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	○						
• 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	○					○	○	○
•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			
• 정책회의규칙		○						
• 제안제도 운영규칙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제안제도 운영조례/시행규칙							○	
•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			○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
•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에 관한 조례				○	○	○	○	○
•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	○	○	○		○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		○		
• 종합자료관운영규칙		○						
•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	○	○	○	○	○
•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	○	○	○	○	○
•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			○		○	○	○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	○	○	○	○	○	○	○
• 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		○	○			○	○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	○	○
•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운영규칙	○			○				○
• 프로젝트팀설치운영규칙						○		
•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	○	○	○	○	○	○
•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	○		○
•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	○	○	○	○	○	○	○
• 행정법규상담실조례	○			○		○	○	
•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조례		○	○	○	○	○	○	○
•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조례시행규칙					○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	○			○	○	○	

(5) 행정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운영에 관련된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지방자치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주로 행정사무나 공무원 복무관계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이 분야의 자치입법은 특별시·광역시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공통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성·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199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조직·사무, 공무원 복무관련 등의 분야에서 대부분의 조례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경향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원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운영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등 약간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1) 조례가 법률 제정으로 연결된 사례 :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 전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을 법률적 차원으로 승화시킨 모범사례이다.

즉,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입법으로서 대체적으로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조례는 2000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부산광역시로 확산되었으며, 현재에는 모든 특별시·광역시가 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근거 및 활동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5년 8월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법률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체로 일본의 1970년대 환경관련 조례들이 선진적 지자체에 의해서 제정되고,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입법화하는 경향과 유사한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84)</sup>

2)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례 제정 : 『주민투표조례』

주민투표조례는 앞에서 살펴본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반대로 법령의 제정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사례이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4년 1월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의 위임근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전

84) 예를 들면, 197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1970년대 후반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로 규범화하여 시행하였으며, 동 제도가 법률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였다.

체가 주민투표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본래 지방자치법제14조제1항에 주민투표의 실시근거를 두면서 제2항에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다. 동법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절차, 주민투표대상의 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에게 입법형성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광역·기초를 불문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주민투표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서 이른바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례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적 특색의 반영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다 자주적인 자치법규 형성노력이 요청된다.

### 3) 자치단체별 특색있는 조례 : 『자치행정모니터조례』

『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동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행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 모니터는 시민 가운데 공개모집 또는 지역적 편중을 고려하여 군수·구청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모니터로 위촉된 시민은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자의 확인조사,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뿐만 아니라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등의 역할을 하며,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인천광역시의 행정모니터제도는 행정공무원이 아닌 시민에 의해서 자치행정을 직접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정부)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조례	○	○	○	○	○	○	○	○
•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 가로명에 관한조례					○		○	○
•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		
• 공무원국외여행 규정	○				○	○	○	○
• 공무원 여비 조례	○	○	○	○	○	○	○	○
•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	○	
•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	○	○	○	○	○
• 공인 조례	○	○	○	○	○	○	○	○
• 공인 조례 시행규칙	○		○	○	○	○	○	
• 관용차량 관리 규칙		○		○	○	○	○	○
• 기록관 운영 규칙		○	○		○		○	○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	○	○	○	○	○	○
•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		○		○	○
•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					
•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 보안업무처리규칙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		○	
•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	○	○		○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	○	○	○	○
• 사무인계인수규칙		○	○	○	○	○	○	○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	○		○	○	○	○
•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						
•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	○				○	
•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		○					
• 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	○			○				
• 시기 (등에 관한) 조례	○		○	○	○	○		○
• 시민상운영조례	○	○			○	○	○	○
• 시민상운영조례시행규칙	○				○		○	
• 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				○	○		
• 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시행규칙	○				○			
• 시민의 날 조례	○	○	○	○	○	○	○	○
• 시민장에 관한 조례				○			○	
• 시민현장조례	○			○			○	○
• 시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			○			○	○
• 시험수당지급조례		○	○	○	○	○	○	○
•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		○		○	○	○	○	
•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	○		○	
• 인사규칙	○	○	○	○	○	○	○	○
• 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실비보상 조례	○	○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	○	○	○	○	○	○
•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	○	○	○	○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	○	
•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					
•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 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	○	○	○	○	○	○	○
•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	○	○		○	○	○
• 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						○		
•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	○			
•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	
• 정보공개 규칙			○					○
• 주민참여기본조례				○				
• 주민투표조례		○	○	○	○	○	○	○
• 지명위원회조례	○	○	○	○			○	○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		○	○	○		○	○
•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						
•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		○	○	○	○	○	○	○
•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	○	○			○	○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	○	○	○	○	○	○
• 지방공무원 승진심사 규칙					○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	○	○	○	○	○
•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규칙			○					
• 지방공무원근무규칙	○				○	○	○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	○	○	○	○	○	○	○
•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	○	○	○				
•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	○	○	○	○	○
•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	○	○	○	○	○	○
•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			○	○		○	○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				
•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임용)조례		○	○	○	○	○	○	○
•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		○		○	○		○	○
• 지역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				○		○		
• 직원진료 규칙		○						
• 청렴공무원선발및포상규칙				○				
•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					
• 청원경찰징계규칙		○				○		
• 포상 조례			○	○	○	○	○	○
• 포상 조례 시행규칙				○				
• 표창 조례	○	○						
•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		○		
•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		○			○	○	○	

(6) 재무관리

지방세나 사용료·수수료·분담금·부담금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를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조례, 예를 들면 “수수료징수조례”는 모든 특·광역시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해서도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서울·대구·광주), 악의적인 체납자로부터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세체납자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 관한 조례”(서울), “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인천) 등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규칙)명	'98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조례	○	○	○	○	○	○	○	○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	○	○	○	○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시행규칙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	○	○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			○	○	○	○	○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금고운영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					○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	○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	○	○			○
•금권등관리규칙	○				○		○	
•금권등의서식에관한규칙	○				○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			○		○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물품 관리 조례/시행규칙	○			○	○	○	○	○
•세무조사운영규칙	○	○	○	○	○	○	○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	○	○	○	○	○	○
•수입증지 조례	○	○	○	○	○	○	○	○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 시세 감면조례	0	0	0	0	0	0	0	0
• 시세 부과징수규칙	0	0	0	0	0	0	0	0
• 시세 조례	0	0	0	0	0	0	0	0
• 위촉법무사 운영 조례	0						0	
•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 관한 조례		0						
• 재무회계규칙	0	0	0	0	0		0	0
•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0					
• 재정보전금배분에 관한조례					0			
•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0	0
•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0		
• 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	0					0		
•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0		0					
• 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		0						
•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0		0		0
• 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						0		
•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0						0	
• 회계간자금전용조례	0				0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0		0	0	0	0	0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시행규칙	0		0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0						

(7) 복지 및 여성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사무범위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복지 및 여성분야에 있어서는 1998년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이 분야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출산장려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조례가 다수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대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대전), “경로당 지원조례”(인천) 등이 있다.

또한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나 의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 분야에서도 역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이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법률선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대전, 광주 등)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치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 부산, 대구 등)의 경우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건강가정 지원조례		O		O		O		
• 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O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O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O	O	O		O	O	
• 경로당지원조례						O		
•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O	
•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허가)에관한조례		O	O	O	O	O	O	O
•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				O				
• 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O				
•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O						O	
•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O							O
•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O					
• 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O		
•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O	
• 광주희망원설치 운영 조례							O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O	O	O		O
•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O	O	O	O	O	O	O
• 노인(복지)회관설치 운영 조례	O						O	O
• 노인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O					
•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O		
•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O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			○	○	○			
• 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	○	○		○			
•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 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				
•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					○			
•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				
•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시행규칙					○			
• 맹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모· 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					
• 모· 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 규칙	○				○			
• 무의탁자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		○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		○	○	○	○	○	○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			○
• 보육조례		○	○	○		○		○
• 보훈회관설치 조례	○						○	
•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복지시설 조례						○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	○	○	○	○	○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		○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	○	○	○	○	○	○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시행규칙				○				
•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	○				○			
•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칙		○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	
•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	○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	○	○	○	○	○	○	○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시행규칙				○				
•아동복지관 운영조례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		○		○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					
•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시행규칙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 여성발전기본조례		0	0	0	0	0		0
• 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0		0	0	0		0
•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0						0	
•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0	0					0	
• 여성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		
• 여성의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		
•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0	0	0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0				
•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0	0	0			0
•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0		0			0
•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0	0	0	0	0	0	0
•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0	0		
•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0	0	0	0	0		
•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0		0		
• 장애극복상조례						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0			0	
• 장애인복지시설(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0		0	0		0	0	0
•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0	0	0	0	0	0	0
•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0	0	0		0	0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0		
•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관한조례		○	○	○	○		○	○
•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	○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			
•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 종합복지회관운영 조례/시행규칙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	○	○	○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만성후유증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청소년대상조례/시행규칙					○		○	
• 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 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			○		○	○	
• 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	○	○	○			
•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청소년육성위원회(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	○		○	○			○
• 청소년육성위원회(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 청소년회관운영조례						○		
•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				
• 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	○		○	○		
• 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			
•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입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머무르고 있다.

(8) 산업 진흥 등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도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진흥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종전의 법 규제는 전국적으로 통일성·획일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산업분야를 진흥·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특정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는 광주의 “광산업육성지원조례”, “디자인센터 및 운용 지원조례”(부산·광주),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인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대구)와 같은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들이 다수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밖에도 “무등산수박보호 및 육성조례”(광주),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서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대구),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와 같은 대도시 주변의 농산어촌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	○		○	○	○	
•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			○			○	
• 경제자유구역청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시행규칙						○		
•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 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		
• 공업단지(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		○	
•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시행규칙				○				
• 과학기술진흥 조례							○	○
• 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					○		○
•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	
• 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							○	
•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		
•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						○		
•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		
•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
• 근로자종합복지회관보육시설운영규칙				○				
• 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 규칙				○				
• 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					○		
• 기술장 조례/시행규칙	○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기업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	○			
•기업인(과학기술인 등) 예우 및 기업활동 촉 진에 관한 조례			○	○	○		○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	○	○	○	○	○
•노사화합상조례	○				○			
•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					○		
•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	○	○	○	○	○	○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	○		○	○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		
•농어촌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		○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				
•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	○		○	○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				○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 농촌정비사업보조금교부조례					O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O		O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O			
• 대구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					O			
•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O						
•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O				
• 대전시민전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O				
•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O				
•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O					O		
•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O	O				O		
• 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O				O			
• 디자인센터 및 운용 지원 조례			O				O	
• 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O						
• 명예농촌지도사조례						O		
•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시행규칙							O	
• 명예시민증 수여(및 관리) 조례		O	O	O	O	O		O
• 명예시민증 수여(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O	O			O		
• 명예시장추대조례						O		
• 무등산수박보호 및 육성 조례							O	
•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O	O		O	O	O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O				
•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O	
•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O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O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불우어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시행규칙						O		
•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O			O			O	
•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조례	O			O				
•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O		
•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O					
•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O					
•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O						
•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칙			O					
•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					O			
•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O					
• 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					O			
• 소비자 보호 조례	O	O	O	O	O	O	O	
•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	O			O				
•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O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O		O		O	O	
• 솔라시티 조례					O			
• 송도 u-IT클러스터 구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O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O		
• 수리계관리 조례							O	
•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O		
• 수산사범 단속공무원의 수사비 등 지급에 관한 규칙			O					
•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O						
• 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O		
•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O				O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 어항관리 조례			○			○		○
• 어항관리 조례 시행규칙			○					
• 에너지(이용·개발 등에 관한)기본조례		○	○	○		○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지원 조례						○		
•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	
• 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칙					○	○		
• 외빈영접규칙		○						
•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	○	○	○	○	○	○
•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		○	○		
•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재단법인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			
•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				○	
•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							○	
•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			
• 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					○			
•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중소기업대상 규칙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	○	○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시행규칙						○		
•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			○		○	○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		○	○	○	○	○	○	○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			
•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	
•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
• 통상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조례					○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일부민간위탁에 관한조례					○			
•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			
• 평동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시행규칙							○	
•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		○		○			
•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		○					
•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			○			
•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					
•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 해외주재관근무에관한규칙		○						
•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	○						
• 환지청산금취급규칙					○		○	
•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			○				

(9) 문화/체육/관광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나 관광에 대한 진흥정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

의 조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기본적인 문화시설 이외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각종 문화시설의 설치 조례(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시네마테크 운영 조례 등)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경기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 등)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지역에 특유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각종 조례(5.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조례 등)도 다수 제정되어 있다.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	○	
•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				○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지원 조례					○			
•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지원 조례							○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		
•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시행규칙							○	
•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	○	○	○	○
•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 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	○		○
•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					
• 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 관광안내소설치조례	○	○	○		○		
• 관광자문단운영규정					○		
•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			○	
• 관광진흥위원회(협의회)조례	○	○				○	○
•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	
•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 국제교류재단(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		○	
•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	○	○	○	○
•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대구문화지발간조례시행규칙					○		
• 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시행규칙					○		
•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규칙				○			
•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조례					○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문화도시 기본조례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문화상 조례/시행규칙					○	○		○
• 문화예술상 조례/시행규칙							○	
• 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	○	○	○	○	○	○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		○	○
•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						
• 문화재 보호 조례/시행규칙	○	○	○	○	○	○	○	○
• 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		
• 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 문화회관 운영 조례	○		○		○	○		
•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 미술대전 조례/시행규칙	○						○	
• 민속예술관 사용료 징수 조례	○		○					
•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		○					
• 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						○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					
• 생활체육진흥조례		○					○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						
•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시행규칙		○						
• 선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				
• 시 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		○						
• 시네마테크 운영 조례/시행규칙			○					
• 시립국악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시행규칙							○	
•시립도서관사용조례						○		
•시립미술관 운영조례	○	○		○		○	○	
•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		○			○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시행규칙	○						○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		○			○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립박물관관리위탁조례					○			
•시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운영 규칙	○		○	○	○	○	○	
•시민체력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 등에 관 한 조례/시행규칙			○					
•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					○	○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조례/시행규칙							○	
•시민회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		○					
•시사편찬위원회조례			○	○	○	○	○	○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시행규칙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영화촬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술의거리 조성 조례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은울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O		
• 이인성미술상조례					O			
• 인물동산조성조례					O			
•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O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O		
•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O					
•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 조례							O	
•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등 에 관한조례							O	
•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O
•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등에 관한 조례							O	
• 재단법인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O	
•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O						
• 제16회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조직위 원회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O		
•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							O	
•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에 관한 조례			O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O
• 체육시설업신청등수수료징수조례					O		O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O	O	O	O	O	O	O
•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O	O	O	O		O	
•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O	O		O	O	O
•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 충렬사 운영 조례/시행규칙			O					
•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O		
• 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 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O			O	
•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O					
• 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O				
•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O		
•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O				

(10) 환경관리 / 교통

1) 환경관리

환경분야는 이른바 “초과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특·광역시에는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폐기물관리조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모든 특·광역시에 공통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로는 울산의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나 인천의 「대기허용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은 독자적으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치행정에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2) 교 통

교통분야는 대부분 법령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로 위임조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율적인 조례제정현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통정책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지 않고 광역간,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구상되어야 함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나, 이 분야에 있어서 지자체 나름의 정책개발 노력이 요청된다.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b>▶ 환경</b>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	○		○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공원위원회설치조례	○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시행규칙						○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					
•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			○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 대기환경기준조례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	○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도시공원 조례	○	○					
•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	○		○		○	
•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		○			
• 동물원 관리 규칙		○					
• 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			
• 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					
•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
•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
•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 상무소각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
• 수렵강습회 운영 규칙							○
•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			○		○
•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			
•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시행규칙						○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 규칙	○			○			
• 온실식물원 관리 규칙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	○	○	○	○	○
•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조례							○	
•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						
•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				
•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	○	○	○	○	○
• 자연환경보전조례		○	○	○	○	○	○	○
•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		○	○		○	
•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조례		○	○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시행규칙		○	○					
•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				
• 조경관리 조례/시행규칙		○			○			
• 조경시설관리조례시행규칙				○				
•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시행규칙				○				
•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지하수조례		○	○		○	○	○	
• 지하수조례 시행규칙		○				○		
• 차량정비센터정비수가조례		○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조례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0	0		0		0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						
• 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시행규칙					0			
• 팔공산자연공원집단지설지간이상수도급수조례					0			
•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0		
• 폐기물관리(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	0	0	0	0	0	0	0	0
• 폐기물관리(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 시행규칙	0	0	0	0	0	0		0
•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0		
•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0				
• 화원동산관리조례					0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시행규칙		0	0			0		
• 환경공단 설치 조례						0		
• 환경기본조례	0	0	0	0	0	0	0	
• 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0	0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시행규칙		0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		0		0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0		0	0	0	0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0	0	0	0	0	0	0	0
•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0		0		0	
• 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0			0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0		
•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0			0
▶ 교통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칙	0		0		0	0		0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		○	○	○	○	○
•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	○	○	○	○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	○
•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교통공사 설치 조례	○		○			○		
• 교통문화교육원(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	○					
•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	○	○	○	○	○	○
•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	○						
•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	○	○	○	○		○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						
•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			○				
•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							○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			
•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시행규칙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지급규칙		0						
• 도로점용 조례							0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0		
•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0					
• 물류발전대상조례						0		
• 물류발전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0		
• 물류정책위원회조례		0	0	0	0	0	0	0
• 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	0	0			0			
•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0						
•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0	0	0	0	0		0	0
•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0						
•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시행규칙						0		
•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0					
• 여객(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0			0		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0	0			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				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0	0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등에 관한 조례								
•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				
•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 조례						○	○	
•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인지정등에관한조례					○			
• 인천항만공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자가용 승용차 부제 운행 지원 조례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	○		○
•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		○		○
•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						
•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		○		
•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	○	○	○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			
•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				
•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		

## (11) 도시계획/건설/주택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경찰규제가 이루어져 왔으며,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여전히 자치행정의 불모지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의 수립 등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

도록 하거나 계획수립 지침을 주무부처장관이 수립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달하는 등 중요한 권한이 법령에 유보되어 있으며,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지방의회의 적극적 참여 자체가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sup>85)</sup>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디자인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시의 외관을 정비, 형성해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는 “도시디자인”의 개념을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건축물·옥외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로 넓게 파악하고, 이러한 도시디자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적절하게 결합하고 있는 점은 향후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바람직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다.

조례 (규칙) 명	'98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 도시계획							
• (도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	○					

85) 손상락, “지방분권시대의 도시계획권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18권제1호, 2004, 183쪽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대구선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	○	○	○	○
•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시행규칙		○		○				
•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		○		
•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						
• 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		
• 도시개발조례		○		○	○		○	○
•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		○						
•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 도시계획 조례		○	○	○	○	○	○	○
•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		○	○	
•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공공용지부담 규칙						○	○	
•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및토지가 격산출규칙						○	○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			○	○		
•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	○	○	○	○	○
• 주택(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칙		○	○					
• 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		○						
•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		○			
•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등매각규칙					○	○		
• 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	○	
•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 부시행 기준 규칙			○					
•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		○		○	○
<b>▶ 건설기획</b>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 건축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 공동구유지관리조례							○	
• 공동구유지관리조례시행규칙						○	○	
• 구마지선확장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			
•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	○	○	○	○	○	○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		○						
• 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						○		
•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	○						
•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	○						
• 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		○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	○	○	○	○	○	○	○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	○					○	○	
•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				○	○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도시가로망정비 지방채 조례/시행규칙							○	
•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 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					
•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						
•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	○		○	○	○
•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시행 규칙			○					
•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 조례/시행 규칙	○						○	
•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		
•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			○				
•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		○			
• 유료도로의유지관리및통행료징수규칙					○			
• 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						
•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						
• 죽전네거리·본리국교간도로확장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조례						○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				○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		
•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						
•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	○	○	○	○	○	○	○
•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	○	○	○	○	○
•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		○	○
• 하수도사업사업회계 규칙			○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 규칙	○				○	○	○	○
•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	○	○	○	○	○	○	○
• 하천점용및점용료등징수에관한규칙	○	○						
•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시행규칙		○						
•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					
•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지방채 발행 규칙			○					
• 화랑로확장외4개소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 /시행규칙					○			
<b>▶ 주택</b>								
• (도시)경관 조례				○		○	○	
• (도시)경관 조례 시행규칙						○		
• 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					○	
• 건축조례	○	○	○	○	○	○	○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시행규칙		○						
•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		○						
•농어촌주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		○	○	○	○			
•도시(공공)디자인 조례		○					○	
•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정자문 위원회규칙		○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				○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		○			○	
•주택조례		○	○		○		○	○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등에 관한 조례		○	○	○	○	○	○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						

(12) 소방방재/상수도 등

소방·방재나 안전분야 역시 전통적으로 경찰규제가 중심이 되는 분야로서 법령에 근거가 없이 자치입법을 제정하기 곤란하다는 사항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개발 노력이 요청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조례 (규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b>▶ 소방재난</b>								
• (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	○	○	○	○	○
• (소방)항공대운영규칙		○	○		○	○	○	○
• 구급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	○	○	○	○	○
• 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					○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						
• 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						
•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						
• 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		○	○					
• 소방학교 교육훈련 규칙							○	
• 소방학교 운영규칙		○						
•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위험물안전관리조례		○	○	○	○	○	○	○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			○	○	○	○	○	○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	○	○	○	○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	○	○	○	○	○	○
•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시행규칙		○			○	○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재해영향평가지례				○	○		○	○
• 화재예방 조례		○	○	○	○		○	○
<b>▶ 상수도/건설안전/지하철</b>								
•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	○	○	○	○	○	
• (상)수도사업설치조례		○	○	○	○	○	○	
• 공업용수 공급 조례		○	○					
• 공업용수도조례		○						
• 공존하수처리장설치·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		
•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		○	○	
• 도시철도 건설 조례		○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	○	○	○	○	○	○
• 도시철도건설규칙		○	○		○	○		
• 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		○	○	○		○	○	
•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			○	
•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 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	○	○	○	○	
• 도시철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도시철도채권 조례/시행규칙			○		○			
• 부정상수도사용신고 보상금지급조례	○			○				
•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	○						
•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	○						
•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에 관한 규칙	○	○						
•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						
•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시행규칙	○	○						
• 수도자재 관리 규칙	○	○						
• 수도물평가위원회 조례		○		○	○	○		
•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					
• 온천 급탕 조례			○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	○				
•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				○	○		
•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b>▶ 균형발전/기술심사</b>								
• 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운영조례/시행규칙				○				
•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		
•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 시행규칙			○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	○	○	○	○	○	○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조 례 (규 칙) 명	'98 년	자치단체별						
		서 울	부 산	대 전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0	0	0	0	0	0	
<b>▶ 정보화</b>								
•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0	0			0	0	
• (지역)정보화촉진조례		0	0	0	0	0	0	0
•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0						
•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 전자계산조직(및 지리정보 제공)사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0	0	0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0					0	
•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0			0		
•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0						
•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0		0	0	0		
•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		0			0			
• 통계사무 처리 규칙		0						
<b>▶ 비상기획</b>								
•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규칙(규정)		0				0		
•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0	0	0	0	0		0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 2. 도(道)의 자치입법 실태

도(道)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특별시·광역시의 자치입법 실태

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도의 자치입법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방분권정책의 한 축을 이루어 왔던 지역균형발전전략에 힘입어 각종 조례 제정이 가능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비추어 1차 산업인 농수산임업이나 축산업에 관한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의 대도시권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재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진흥 등에 관한 조례도 다수 제정되어 있다는 점도 특·광역시와 다른 점이다.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의회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 의정회(의정동우회)설립및지원조례	0	0	0	0	0	0	0	0	0
• 의회 (연간 회의총일수/정례회 또는 임시회의/회기/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0			0	0	0		0	
• 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0								
• 의회 고문변호사조례		0	0				0		0
• 의회 공인 조례	0	0	0	0	0	0	0	0	
•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0	
•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0				0	0			0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관한 조례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0	0	0	0		0		0
•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	0								
•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0					0		0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0
•의회 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0	0	0		0	0	0	0
•의회 위원회조례		0	0	0			0	0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0				0	0			
•의회 의원 공무국의여행 규칙	0	0	0			0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0	0	0	0	0	0	0	0	0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규칙	0	0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0	0	0	0	0	0	0	0	
•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0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0	0	0	0	0	0	0	0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0					0	0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 규칙	0						0		
•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0	
•의회 의원연구회운영규칙		0							
•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0	0	0			0		0	
•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0	0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0
•의회 자치봉사대상 조례					0				
•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0								
•의회 청원심사 규칙	0	0	0	0	0	0	0	0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0				0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의회 회의 규칙	0	0	0	0	0	0	0	0	
• 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0		0				0
• 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0	0	0	0	0	0	0	0	0
• 의회의원공무국의출장등에관한조례				0					
• 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0	
• 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							0		
<b>▶ 공보</b>									
• 간행물심의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0	
• 공보발행조례	0								
• 도보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0	
• 도보발행규칙	0								
• 도정신문조례/시행규칙				0					0
• 도지편찬위원회조례					0				0
• 상징물 관리조례	0		0						0
• 정지조례/시행규칙		0							
• 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0					
<b>▶ 감사</b>									
•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0						0
• 계산증명규칙			0						
•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0	0	0	0	0	0	0	0	0
• 공무원관용심사처리규칙				0		0			
•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0	0						
•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 부조리신고(신고자보호 및) 보상금지급에	0				0		0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관한 조례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			○						
•자체감사 규칙	○		○	○	○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	○						
•주민감사청구 조례	○	○	○	○	○	○	○	○	○
•행정감사규칙		○						○	
•행정법규상당실조례		○	○		○	○	○		
<b>▶ 기획관리</b>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	○	○	○	○	○		○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12년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					○				
•개발(도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	○	○	○	○	○	○	○	○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		○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	○	○	○	○	○	○	○	○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공공디자인자문단 운영 규칙	○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								○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국제평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규제개혁위원회조례	0	0		0	0	0		0	0
•규제개혁위원회조례시행규칙	0			0	0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0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0							
•남북교류협력조례	0	0			0	0	0	0	0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0	0				0	0	0	0
•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시행규칙							0		
•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							0		
•도민의날조례		0		0	0	0	0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0					
•도민현장계정위원회조례							0		
•도민현장조례			0	0		0		0	
•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
•도와관할하의시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칙									0
•도정조정위원회조례		0	0	0	0	0	0	0	0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명예연구소 운영조례/시행규칙			0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0			
•법무행정처리규칙	0		0		0	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		0					0	
•보증채무관리조례	0	0	0	0	0	0	0	0	0
•보증채무관리조례시행규칙	0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시행규칙	0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0	0	0	0	0	0	0	0	0
•사무위임 규칙	0	0	0	0	0	0	0	0	0
•사무위임 조례	0	0	0	0	0	0	0	0	0
•사무위탁 조례	0	0	0			0	0	0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0		0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0			0	0	0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0	0	0	0	0	0	0	0	0
• 산하단체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칙	0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0
•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									0
•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0	0	0	0	0	0	0	0	
•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0	0	0	0	0	0	0	0	0
• 업무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	0	0	0	0	0	0	0	0	0
•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0		0	0			0		
• 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시행규칙				0					
• 위원회실비변상조례	0		0	0	0	0	0	0	0
•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0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0		0	0	0	0	
• 재정정보전금 배분 조례	0	0	0	0	0	0	0	0	
•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0							
• 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0				
• 정책 실명화 운영규칙						0			
• 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				0					
• 제안규칙			0		0	0		0	0
• 제안제도운영 조례/시행규칙	0	0		0		0	0		
•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0	0	0	0	0		0		
•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0		0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 지방공기업회계규칙	0								
• 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0	0	0		0	0	0	0	0
•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지방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	○		○						
•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					○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	○	○	○	
•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지역(개발/대구경북/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 영조례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			○	○	○	○	○	○	○
• 지역정보화촉진조례	○	○	○	○	○	○	○	○	○
• 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		○		○	○	○	○	○
•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				
•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	○	○	○		○	○	○
•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시행규칙	○								
• 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 학술진흥조례		○							
•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시행규칙	○	○	○	○	○	○	○	○	○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								
<b>▶ 경제투자관리</b>									
•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 례/시행규칙							○	○	
•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					○				
• 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규칙				○					
•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
• 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					
• 경남소프트웨어주식회사설치조례								○	
• 경북통상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O						
• 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	O								
• 경제정책심의위원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O						O
• 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					O				
•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O
• 과학기술진흥(혁신) 조례	O				O	O	O	O	O
•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O
•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조례/시행규칙					O				
•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 원조례/시행규칙						O			
•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O				
• 국제자문역위촉기준등에관한규칙				O					
•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O			
•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O				
• 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O	O				O			
•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시행규칙		O	O				O	O	O
•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O								
•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O			
•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O						
•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O								
•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O			O	O
• 기업인대상조례/시행규칙				O					
•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O	
• 나노소자특화팩센터설립및지원조례	O								
• 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O								
•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O
•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O	O	O	O	O	O	O	O	O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O
• 대관령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및 운영	O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례									
•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 조례	○		○	○		○		○	
•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								
•무역회사설립조례					○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
•민간자본 유치 촉진조례/시행규칙						○			
•민간투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		○	○		○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							
•산업평화상조례		○				○		○	
•생물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					○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					
•소비자보호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							○		
•소비자보호조례	○	○	○	○	○	○	○	○	○
•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	○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	○	○	○	○	○	○	○	
•수출및투자유공업체포상조례/시행규칙					○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신용보증재단(조합)설립및기금운용조례	○	○	○		○		○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
•에너지관리조례	○	○	○	○	○	○	○	○	○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시행규칙	○	○		○	○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관한조례					○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0	0		0	0	0	0	0	
•으뜸장인상 조례/시행규칙						0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0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0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0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시행규칙									0
•주식회사OO무역 설치 및 운영조례						0		0	0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중소기업대상조례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0	0	0	0	0	0	0	0	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0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0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0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0			
•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	0							0	
•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 시행규칙	0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0
•지역경제협의회조례		0		0	0		0	0	
•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					0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0								
•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0						0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0								
•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								
•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	○	○	○			○		○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시행규칙									○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및 운영지원조례/시행규칙	○								
•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시행규칙		○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	○					○	○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								
•한국니트산업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				
•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조례/시행규칙		○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해외협력관운영조례/시행규칙	○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시행규칙		○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	○								
<b>▶ 자치행정</b>									
•(선행)도민대상조례/시행규칙		○	○		○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강화 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
•거주의국인 지원 조례		○	○	○	○	○	○	○	○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	○		○
•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	○	○		○	○	○	○	○
•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		○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	○	○	○	○	○	○	○
•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규칙	○	○	○	○	○	○	○	○	○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	○	○	○	○	○	○	○	○	○
• 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공인조례	○	○	○	○	○	○	○	○	○
• 공인조례시행규칙	○	○			○	○	○		
• 공적심사위원회구성·운영규칙									○
• 관용차량관리규칙	○	○	○	○	○	○	○	○	○
• 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	○	○	○	○	○	○	○	○
•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		○					○
• 기록관 운영 규칙	○	○				○			○
•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		
• 도기조례		○		○	○	○	○	○	○
• 도민봉사실운영조례				○					
• 도민장에 관한 조례				○					
• 도민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 도민회관 운영·관리조례		○							○
• 도세 감면 조례	○	○	○	○	○	○	○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도세 부과·징수 규칙			0		0	0		0	0
•도세 조례	0	0	0	0	0	0	0	0	0
•도세 조례 시행규칙	0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0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0			0		
•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0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시행규칙				0					
•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0				
•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시행규칙				0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등 운영 규칙				0			0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0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0	0	0	0	0	0	0	0	0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0	0			0	0	0	0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봉사상 운영규칙							0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0	0	0	0	0	0		0	0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0	0	0	0	0	0	0	0	0
•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	0			0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0			0	0	0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								0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0
•부속의원설치조례	0								
•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0	0	0	0	0	0	0	0	0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0	0	0	0	0	0	0	0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0	0	0	0	0	0	0	0	0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0		0			
•사무인계인수규칙	0	0	0	0	0	0	0	0	0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0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0		0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시행규칙		0	0	0	0	0	0	0	
•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0				
•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									0
• 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시행규칙	0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0		0	0	0	0	0	0
• 수위근무규칙				0					
• 수입증지보관출납위임관리규칙					0				
• 수입증지조례	0	0	0	0	0	0	0	0	0
• 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0								
•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 시험수당지급조례	0	0	0	0	0	0	0	0	0
•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		0							
•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조례									0
•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0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 자원봉사상조례								0	
•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0	0	0	0	0	0	0	0	0
•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0	0					
• 자유회관설치운영조례								0	0
• 자치경찰 무기·탄약관리 규칙									0
•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0
•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 자치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0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0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0
•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0
•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0
• 장학회(장학재단) 설치 및 육성조례			0	0			0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재무회계규칙	0	0	0	0	0	0	0	0	0
•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0	0	0		0	0
• 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					0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0	0	0	0	0	0	0	0	0
•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0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0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0
• 주민참여 기본조례/시행규칙									0
•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									0
• 주민투표조례	0	0	0	0	0	0	0	0	0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0			0		0	0	0	0
•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0		0		0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0					
•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0	0	0		0	0	0	0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0	0	0	0	0	0	0	0	0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0	0	0	0	0	0	0	0	0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0	0	0	0		0		0	0
•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0
•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0	0		0	0	0		0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0	0	0	0	0	0	0	0
•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0	0		0	0	0	0	0
•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0	0	0	0	0	0	0	0	0
•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0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0	0	0	0	0	0	0	0	0
•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0	0	0			0			0
•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0				
•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0	0	0	0	0	0	0	0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0	0	0	0		0	0		
•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0	0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									0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0	0		0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0	0	0	0	0	0	0	0	0
• 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0	0	0	0	0	0	0	0	0
•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0	0	0	0	0	0	0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처리 규칙			0			0			
• 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0				
•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0	0				0
•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0						0	
• 출자·출연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0	
• 콜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규칙		0							
•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0		
• 포상 조례	0	0	0	0	0	0	0	0	0
• 포상 조례 시행규칙	0			0	0			0	
• 학생근로(대학생아르바이트)활동 지원에 관 한 조례			0	0					
•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0					0	
• 행정서비스현장운영조례	0			0	0				
•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									0
•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 재지에 관한 조례									0
•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0		0		0	0			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보상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0					
•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향토봉사상 운영규칙		○				○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 호적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규칙									○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		○	○	○	○	○	
<b>▶ 문화관광</b>									
• 2009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		○							
• 강원평화상조례		○							
• 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 고인돌관람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						○			
•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								○
• 관광모니터조례/시행규칙	○								
•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시행규칙		○							
• 관광엑스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	○		○			
• 관광진흥사업위탁에관한규칙									○
•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 관광진흥협의회 조례									○
•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조례						○			
• 관광홍보관설치및운영조례							○		
• 교육지원 조례	○		○						
• 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시행규칙			○						
•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지원조례					○				
•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노르딕경기장 운영 관리조례/시행규칙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시행규칙						0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0	0					0		0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0	0							0
•도사편찬위원회조례	0	0					0	0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0				0				0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시행규칙	0								
•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				0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0			0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0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0			
•문화상조례	0	0		0		0	0	0	
•문화상조례시행규칙	0	0		0		0		0	
•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									0
•문화예술진흥 조례	0	0	0	0	0	0	0	0	0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시행규칙		0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0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0
•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	0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0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0	0	0	0	0	0	0	0	0
•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0		
•미술대전 조례						0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0								
•생활체육진흥 조례	0		0					0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에 관한 규칙									0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0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	0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행규칙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영상산업 육성조례/시행규칙					○				○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울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조례									○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울곡대상 조례/시행규칙		○							
•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								
•의암대상조례/시행규칙		○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재단법인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재단법인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							○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조례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							
•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			○	○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주식회사삼교호합상공원출자에 관한조례				○					
•지명위원회조례	○	○	○	○	○	○	○	○	○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천년대중 관리 및 운영조례			○						
• 체육시설(설치)관리 운영 조례			○	○	○				○
•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체육회관 운영 조례	○	○							○
•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축제행사수익사업등 운영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			
• 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		
• 학교급식 지원 조례	○	○		○	○	○	○	○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	○	○	○		○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	○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시행규칙					○				
• 효행상운영조례/시행규칙	○								
•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b>▶ 농정/해양수산</b>									
• (자랑스런)농어민대상조례	○	○						○	
• 가축방역 조례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								○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
•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			○	○	○	○	○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시행규칙									○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시행규칙					○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농어민대상조례시행규칙	○	○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시행규칙			○	○					
•농어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						
•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시행규칙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		○		○	○	○	○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
•농지관리 조례									○
•농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시행규칙			○	○	○	○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				○	○			○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독도의 달 조례							○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
•바이오농업·농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시행규칙									○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			
•수렵강습회운영조례							○		
•수렵장 관리조례		○	○						
•수리계 관리조례		○		○					○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수산자원연구소운영조례								○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규칙						○			
•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어항관리 조례									○
• 어항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		○
•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	○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									○
• 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 운영조례							○		
• 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		
• 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	○	○	○			○			
•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느어업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시행규칙									○
•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 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				○					
•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타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					
• 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	○	○		○	○	○	○	○	○
•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								○	
• 축산기술연구소 운영조례						○			
• 축산진흥연구소운영조례/시행규칙								○	
•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			○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	○		
•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 조례/시행규칙									○
• 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									○
•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						○	○		
•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	○								○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례/시행규칙									
•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 해양바이오연구원 해양수산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			
•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
<b>▶ 복지건강</b>									
• (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	○	○	○	○	○	○	○	○
• 3.15의거기념일지정에관한조례								○	
•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					○		○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	○				○		○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	○	○	○	○	○	○	○
• 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			○			○		○
• 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					
•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
•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운영규칙				○	○				
•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	○	○	○	○	○	○	
• 기초생활보장 조례									○
•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시행규칙								○	
• 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 노사화합 촉진 조례					○				
•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O				O		O		
•노인복지조례									O
•노인복지회관 조례									O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O	O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O			
•도립 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조례	O		O				O		
•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규칙								O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O				
•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O								
•도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O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O	
•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					O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									O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O		
•병원선운영조례/시행규칙				O	O			O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O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O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O	O	O			O		O
•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O								
•부설의원 설치조례		O							
•부속의무실운영조례								O	
•불우아동결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O	O	O	O		O	O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O	O	O	O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O	O	O	O	O	O	O	O	O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O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O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O	O	O	O	O	O	O	O	O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O	O				O		O	O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애향묘지 조례/시행규칙									0
•약사심의위원회운영규칙	0	0	0		0				0
•여성플라자 설립 및 운영 조례						0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음식점 식재료 등 원산지 자율표시제 운영 조례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0	0	0	0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 규칙		0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0		0				0	
•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0	0
•자활자립상조례							0	0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0	0	0	0	0	0			0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시행규칙		0							0
•장애극복상 조례	0			0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0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0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0		0
•장애인복지대상조례/시행규칙		0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0	0	0	0	0	0	0	0	0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0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0	0		0	0	0	0	0	0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0	0	0	0		0	0	0	0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0								
•재활병원조례		0							
•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0								
•저소득자의 특수질병에 대한전문클리닉설치 운영규칙									0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						
•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		
•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		○				○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시행 규칙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	○								
• 학사(장학관/학생기숙사 또는 학숙)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		○	○	○	○	○	○	
• 한센병(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				○		○	○	○
•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	○	○	○	○	○	○	○	○
•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
<b>▶ 환경</b>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 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공공하수도 통합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					○
•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
• 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조례						○			
•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운영규칙								○	
• 녹지보전 조례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								
•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	○								

제 2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도립공원 관리 조례	○	○		○	○	○	○	○	○
•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				○					
•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시행규칙		○							
•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
•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
•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							
• 수질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시행규칙	○								
•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 조례		○					○		○
• 어장정화선 운영조례/운영규칙						○			
• 오색온천 관리조례		○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
•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		○	○	○	○	○	○	○
• 자연학습원 연수에 관한 규칙			○						
• 자연학습원 운영(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	○					○	
• 자연환경보전 조례	○	○	○	○	○	○	○	○	○
•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			○	○			○	○
•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					○		○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
•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조례	○								
•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지하수조례		○		○				○	○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	○	○	○	○	○	
•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						○	○
•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
• 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				○			○		
•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	
• 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								
• 푸른경남상조례/시행규칙								○	
•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 하수도 사용조례/시행규칙									○
•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 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							○		
• 환경교육 진흥 조례									○
• 환경기본조례	○	○	○	○	○	○	○	○	○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 환경대상조례/시행규칙		○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	
• 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시행규칙				○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	○	○	○	○	○	○	○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		○			○	○	○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례									
• 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						○	
•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조례		○		○ ○					
•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시행규칙	○								
<b>▶ 교통</b>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 규칙									○
•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
•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 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시행규칙	○		○ ○			○ ○ ○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 ○	○ ○	○ ○	○ ○	○ ○	○ ○	○ ○	○ ○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									○
•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 대중교통지원조례			○						
•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 ○	
•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								
•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 물류정책위원회조례	○ ○			○ ○			○ ○		
•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								
•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					○				
•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재정)지원 조례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0	
•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조례/시행규칙		0			0				
• 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0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0		0				
•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규칙				0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0
• 지방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0	0	0	0	0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0	0				
<b>▶ 건설/재난민방위</b>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0								
•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0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0
• 경관형성조례/시행규칙		0				0			
•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규칙		0	0						0
•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0							0
•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0	0	0					0
• 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0					
• 남강댐밀양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0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 도로점용료 징수 규칙	0		0					0	
•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0	0	0	0	0	0	0	0	
•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0					
•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0					
•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0								
• 부동산(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	○	○	○	○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시행규칙				○			○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	○	○	○	○	○	○	○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용담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 대한지원금지급조례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	○	○	○	○	○	○	○	○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	○	○	○	○	○	○	○	○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재해복구공채조례/시행규칙				○			○		
•재해복구지방채조례/시행규칙							○		
•재해영향평가조례	○	○	○	○	○	○	○	○	
•재해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	○	○	○	○	○	○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	○	○	○	○	○	○	○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	○		○			○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	○	○	○	○		○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규칙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0	0	0	0	0	0	0	0	0
<b>▶ 도시주택</b>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0				0				
•건축조례	0	0	0	0	0	0	0	0	0
•건축조례 시행규칙	0							0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0
•공동주택 지원조례									0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0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0	0	0	0	0	0	0	0	0
•도시개발(사업)조례			0	0	0			0	0
•도시계획조례	0	0	0	0	0	0	0	0	0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0								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0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0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0				0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0			0	0	0		0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									0
•제주시하귀1지구/제주시아라지구/제주시이도2지구/제주시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0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0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0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0
•주택조례	0	0	0	0				0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시행규칙			○	○					○
• 한옥지원 조례/시행규칙						○			
<b>▶ 주거대책</b>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	○	○	○	○	○	
•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시행규칙	○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								
•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b>▶ 가족여성정책</b>									
• 가족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								
• 건강가정 지원조례	○								○
• 김만덕상 조례									○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 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규칙								○	
•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									○
•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조례		○			○				○
• 미혼모 지원조례								○	
• 보육지원 조례	○	○		○	○		○		
•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 신사업대상 조례		○							
•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
• 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				○
• 여성발전 기본 조례	○	○	○	○	○	○	○	○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례 (규칙) 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0	0	0	0			0	0	0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0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시행규칙		0		0			0		
•여성회관 운영조례						0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0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0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0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0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0	
•차세대위원회조례	0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0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0						0		0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0					0	0		0
•청소년 수련원 설립 및 운영 조례	0					0	0	0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0			0	0	0	0		0
•청소년단체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	0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0	0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0					0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0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시행규칙		0							
•평화누리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0								
<b>▶ 소방재난</b>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0	0	0	0	0	0	0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구급대책협의회운영규칙	0	0	0	0	0	0	0	0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0
• 구조대구조장비보유규칙				0				0	
•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0
•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 소방안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0
• 소방정운영관리규칙	0		0			0	0		
•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0		0	0	0	0			
•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0	0	0	0	0	0	0	0	0
•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0	0	0	0	0	0	0	0	0
•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0	0	0	0	0	0			0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시행규칙		0	0	0	0	0	0	0	
•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0								
• 화재안전 조례	0	0							
• 화재예방 조례					0	0			
<b>▶ 직속기관</b>									
•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 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									0
• 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0				
•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0		0				
•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0	0	0	0	0	0	0	0	0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	○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조례/시행규칙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		
•농촌전문인력(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	○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								
•도립대학 운영조례/시행규칙						○	○	○	○
•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조례		○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시행규칙		○		○			○		
•도립전문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					
•명예농촌지도사조례	○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시행규칙	○	○	○		○	○	○	○	
•보건환경연구원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	
•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방학교운영규칙	○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시행규칙									○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
•인재개발원 운영 규칙	○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						
•중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
•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		
•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	○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조례(규칙)명	자치단체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						
•충훈묘지 조례/시행규칙									○
<b>▶ 사업소</b>									
•(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		
•감골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감골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시행규칙	○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	○	○	○	○	○	○	○	○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시행규칙	○			○	○			○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시행규칙	○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							
•기술학교 운영규칙	○								
•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					
•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생명예술관 입장료 등 징수조례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					
•도립 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도립국악원 운영조례/시행규칙				○					
•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	○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조 례 (규 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O				
•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		O			O				
•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O
•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O	
• 미륵사지유물전시관운영관리조례					O				
• 미술관 관리 및 조례 시행규칙	O								
•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 민물고기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징수 조례/시행규칙	O								
•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O
• 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 시행규칙									O
• 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O								
• 박물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O								
• 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				O					
• 산림(과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O		O		
•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O
•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O						
•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O						
•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O				
• 어린이회관운영조례					O				
•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O		O	O	O	O
•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시행규칙	O	O						O	O
•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시행규칙	O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O						
•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시행규칙	O							O	
•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O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O	O	O	O			O	O	

조례 (규칙) 명	자치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조례			○				○	○	
•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
•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청남대 관리·운영조례			○						
•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		○		○				
•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								
•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 한라산국립공원입장료등징수규칙									○
• 해너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	○	○	○

###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1) 조례의 실제적 내용 불비

2007년 자치입법 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의 실제적 내용에 관한 점이다.

조례의 제명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의지와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책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조례들이 갖추고 있는 정책수단은 법령에서 위임한 지정, 보조금 등 경비의 지원, 위원회 구성 등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으로 조례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형식적으로 지난 10여년간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조례개발 노력들의 결실이

이른바 “법령의 범위안”이라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갇혀 있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 (2) 자치입법권의 사항적 제약

또한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 문화관광이나 복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방재정의 충실화를 기대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특히 복지 분야는 제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서 현재의 지방재정상태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보여진다.

그밖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국통일적인 집행사무성격의 위임조례가 상당수 조사결과에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10여년간의 지방분권정책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 제 3 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활성화 과제

### 1. 자치법무론의 확대 강화

최근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조례입안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법무” 내지 “정책법무”의 강화가 주장되고 있다.<sup>86)</sup> 여기서의 자치법무란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법체계와의 조정을 꾀하면서 자치단체의 정책을 가장 바람직한 법제도로서 설계해 가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자치법무에는 자치입법에 관한 사무, 법령의 자주 해석에 의한 법운용사무, 정책법무집행에 따르는 소송에 대응하는 사무, 자치단체정책의 전개를 불합리하게 방해하는 법령·통달 등의 개

86) 여기에서 “자치법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정책법무”나 “자치체법무” 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자치법무”로 통일하기로 한다. 그 개념의 다양성에 대하여는 山口道昭, 政策法務入門, 信山社, 2002, 5쪽 이하 참조.

폐 또는 자치단체정책에 필요한 법령·통달 등의 제정의 제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정책법무의 중핵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법규범으로서 제도화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입법의 제정·개폐사무라 할 것이다.<sup>87)</sup>

이러한 자치법무의 주장은 조례를 비롯한 자치입법의 활성화하자는 인식과 구체적인 지역의 공공적 과제를 해결함에 국가에서 제정한 관계법령의 유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해석론보다는 입법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입법의 전제가 되는 정책입안작업의 중요성을 고려한 법률실무를 중시하고 있다.<sup>88)</sup> 이와 같이 자치법무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최근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기능발휘를 위한 제도 및 운용의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법무의 각 분야에서 의회가 수행하는 역할 내지 기능에 대하여 법제도의 현상을 평가하고, 그 과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법령의 조례위임범위 확대 방안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을 입안할 때 조례로 일정한 사무를 제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 법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밖에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위임규정을 채택하도록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법령입안시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포괄위임조항을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도

87) 木佐茂男 編, 自治立法の理論と手法, ぎょうせい, 1998, 10쪽.

88) 大森政輔·鎌田 薫 編, 立法學講義, 商事法務, 2006, 30-31쪽 참조.

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병행조례”를 허용 함으로써 조례제정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개발 노력 강화

현재 조례의 실제적 내용을 보면, 일부 인·허가권이나 사용료·수수료 등의 비용 징수를 제외하고는 포상제도,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관련 정책을 실효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수단이 조례로 위임되지 않는 한, 조례로 새로운 규제수단 또는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법령상의 규제수단이 조례로 위임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경관조례의 경우 도시계획이나 건축허가와 같은 관련 법령상의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협약”의 체결과 같은 비규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밖에도 일정한 비용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지사무의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을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노력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례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에 비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적극적인 조례제정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조례제정에 관한 입법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조례제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제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전문가협의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조례제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예를 들면, 『조례제정지원협의회』에 지역대학 등의 외부 전문가를 30인에서 50인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서 5인 내지 7인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원의 조례제정과정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5. 정책의 개발과 법제화-정책의 조례화-

조례는 단순한 조문 배열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또는 법제도를 책정하고 시행해 나가는 프로세스적인 것이다. 즉 조례는 정책이나 제도를 조문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의 개정은 기존 정책이나 제도 등을 개선 또는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조문화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책의 조례화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작용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제도화는 조례화를 중심으로 규칙, 요강, 협정 등 지역 물의 법적 특색을 활용해 나간다. 둘째, 정책을 조례화하는 과정은 먼저 과제의 설정 단계, 조례화의 선택 단계, 정책의 조례화 단계로 구성된다. 셋째, 조례의 정책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관한 주민참가를 제도화할 것이 요청된다.

조례에 의한 지자체 정책의 입법설계를 구상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 (1) 과제의 인지

조례의 제정은 정책 과제의 인지로부터 시작된다. 정책 과제란 도달해야 할 정책 목표(본연의 모습)와 현상(현재의 모습)과의 갭을 말한다. 그리고, 이 갭을 묻는 정책 수단으로서 권력적 수단, 경제적 유인, 정보 제공, 물리적 제어, 직접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 있다고 한다.<sup>89)</sup> 이와 같이 정책 과제를 인지해 그 해결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례화할지의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 (2) 조례화의 선택

#### 1) 조례 사항

헌행법령상 주민에 대한 범규범으로서 정하는데 적격인 「조례사항」이란 어떤 것인가? 일본의 신지방자치법은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의무를 부과해, 또는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4조 제2항)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오히려 「조례가 민주적 정통성, 즉 의회에 있어서의 민주적 토론과 의결이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sup>90)</sup>를 거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게 조례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89) 佐々木信夫編著, □□政策開発□□, 1999년, 4-66면 참조.

90) 鈴木庸夫編著, □□分権改革と地域づくり□□ 2001년, 4면.



## 2) 지역 룰의 선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제도화하려면 거기에 적격인 지역 룰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례화가 바람직하지만, 그 외에 규칙, 요강, 협정이라는 다른 법적 특징을 가지는 룰의 이용 가능성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 협정은 개별의 사업자와 합의를 형성해 법정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 한편 규칙과 요강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또 요강은 행정지도의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상대방의 임의의 협력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 3) 법률제도 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법률상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면 특별히 조례화 하는 필요성은 없다. 무엇보다 법률의 제도의 이용보다는 조례라고 하는 형식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3) 정책의 조례화

정책을 조례화하는 경우 해당 정책 목적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실현되는 법제도 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법적 정합성

조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령의 체계에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조례는 지역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 정책 목적에 비례한 합리적인 규제 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sup>91)</sup>

## 2) 조례·규칙의 규정 사항

정책의 중요한 내용은 조례 본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의 대상으로 하는 취지로부터 조례 제정의 단계에서 규제 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의 기준을 조례 본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 3) 실효성의 확보

조례는 준수되어야 하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조례를 법률 시스템의 체계에 넣어서 법률의 실효성 확보 가운데에서 조례의 정책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자갈 채취법의 인가 요건을 해석하는 자갈 채취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법률과는 다른 체계로 조례를 책정하여 해당 조례 자체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 경우가 통상 조례의 실효성 확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 경우의 실효성 확보의 구조로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형벌, 과태료, 제재로서의 공표)와 의무 이행 강제 제도(행정상의 강제 집행과 민사 수속에 의한 강제)가 있다.<sup>92)</sup>

## (4) 평가와 환류

조례와 같은 법규범은 기본적으로 사회질서의 변화에 따라 생성·발전·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법규범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환류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특히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행정주체인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정립하

91) 飯盛町旅館建築規制条例事件控訴審判決・福岡高判昭和58.3.7判例時報1083호 58면 참조.

92) 中原茂樹, 小早川光郎編, □□地方分権と自治体法務□□, 2000년, 123면.

는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하여야 할 것이다.<sup>9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의 경우에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입법평가<sup>94)</sup>의 사회적 실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95)</sup>

### 1)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실익

입법평가의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규범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법령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무나 규제를 설정한다. 즉, 법령의 규율사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여 그 영향을 평가해야 하지만,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인식이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둘째, 규범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법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이 경우 특정

93) 물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민법과 같은 법규범의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행정법규와 같이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정책적 성격의 법규범을 의미한다.

94) 입법평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적 성격을 지닌 국가적 조치에 대한 평가, 즉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 경우 법형식을 구비한 규범이 전체 적용영역에 대하여 미치는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의도적 및 비의도적 영향 전반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전적, 병행적 및 사후적 평가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33-34쪽

95) 이와 관련하여서는 줄고, 입법평가의 실험과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입법동향과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2008년 여름호, 71쪽 이하에 제안한 바가 있다.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전국 평균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지역간 형평성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입법의 필요성이나 유효성 등의 기준에 덧붙여 협동성, 참여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기가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입법평가방법론을 체계화하기 위한 실험의 장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유용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조례는 법령에 비해서 수범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구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입법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나 피드백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라 생각된다.

## 2)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준

우리와 입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sup>96)</sup> 여기서는 일본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sup>97)</sup>

### ① 필요성

필요성이란 대응하고자 하는 과제에 비추어서 당해 입법이 본질적으로 필요한가에 관한 기준이다. 특히 입법의 목적이 적절한가를 판

96) 일본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도입 논의는 초본적인 수준이지만 田中孝男, 分権時代の法制評価を考える-政策法務を下支えする自治体の法制管理, 地方自治職員研修 32卷3号(1999.3), 44頁 이하 曾根暁子, 条例の評価と進化、北村喜宣編 □□分権条例を創ろう! □□, ぎょうせい(2004) 등이 있다.

97) 鈴木庸夫編, □□自治体法務改革の理論□□(磯崎初仁執筆“立法評価の理論”), 勁草書房(2007), pp.111-121이하를 요약하는 것으로 한다.

단하는 평가이며 나아가 행정법규의 경우는 행정의 어떤 움직임 개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법규는 사인의 권리제한이나 집행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조정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거나 입법이 아닌 예산에 기초한 사업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입법의 필요성은 없게 된다. 이렇게 입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사실을 일반적으로 입법사실이라 하고 이러한 입법사실이야말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필요성의 정도의 문제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필요성이 결여되거나 희박하다면 그다음의 기준에 의한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필요성의 기준은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유효성

유효성이란 당해 입법이 제시한 목적의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과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앞의 필요성의 기준과도 관련되는데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어떤 대응책을 취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낳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유효성의 문제로 평가해야한다.

종래 법학에서 논의되었던 실효성확보수단은 주로 규제적 입법이 어느 정도 준수되는가, 위반행위를 억지 또는 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형벌, 행정상의 강제집행 등을 검토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성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를 문제로 하는 것으로 유효성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유효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목적 실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반적으로 입법의 목적이 복잡하고 또한 정성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목적 실현의 정도를 하나의 정량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대표적 또는

대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그 변화를 측정·검증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③ 효율성

효율성이란 당해 입법의 집행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보다 적은 비용으로 끝날 수단은 없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이런 비용에도 법의 운용에 해당하는 집행기관 내부의 비용과 집행기관 외부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적 비용은 법을 집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보조금 등의 사업비 등이며, 외부적 비용에는 주민이나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보험료, 시설정비 등의 의무나 권리가 제한됨에 따른 일실이익을 들 수 있다.

효율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량적인 방법을 취하기가 용이하며 특히 내부적 비용의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적 비용은 시설정비 등의 의무부과에 따른 부담은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나 권리제한에 따른 일실이익은 정량적 평가가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

### ④ 공평성

공평성이란 정책목적에 비추어서 정책에 의한 효용이나 비용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불평등한 취급이 있지는 않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본래 공공정책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적의 실현과 더불어 개개의 국민에게 있어서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입법의 경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평성의 기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다면 공평한 자원의 배분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를 어떤 학자는 배분지향적 평등과 분배지향적 평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배분지향적 평등이란 피배분자의 특성이 아닌 배분되는 재화 또는 부의 재화

에 한정해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도 배분되는 재화 또는 부의 재화가 산술적으로 같음을 요구하는 객관적 평등과 재화·부의 재화를 받을 기회가 비배분자 모두에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기회적 평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 분배지향적 평등이란 피배분자의 특성에 주목하여 배분되며, 그것과의 관련 속에서 평등명제를 발견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도 오로지 피배분자의 분배상태를 고려하는 주관적 평등,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서열에 따르는 서열적 평등, 그리고 비배분자의 분배에 비례해서 배분되는 비례적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98)</sup>

역시 공평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 즉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재화·부의 재화를 배분되고 있는가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공평성 자체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⑤ 협동성(참가성)

협동성 또는 참가성이란 법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의한 대응뿐만 아니라 주민 또는 전문가의 참가나 집행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협동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역시 협동성의 평가도 협동의 체계나 그 배려의 유무·효과 등에 착안하여 정성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⑥ 적법성

적법성이란 당해 입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가, 사법절차에서 입법의 효과가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적법성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입법이 가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적법

98) 平井喜雄, 『法政策学-法的意思決定および法制度設計の理論と技法』, 有斐閣(1988), pp. 107-110

성의 요청은 관례나 기초적인 법이론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입법사실의 유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⑦ 종합적 평가-기준 상호간의 관계

입법의 적부에 대해서는 이상의 여섯 가지 기준에 의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평가의 척도가 다르고, 평가결과도 정성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순히 『합계』로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유효성은 뛰어나나 효율성은 떨어지는 법률안이 있다면 반대로 효율성은 뛰어나나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느 기준을 어느 정도 중시할 것인가는 평가자 내지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결국 입법평가는 평가 자체를 확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입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판단을 도와줌과 더불어 결정의 이유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6. 지방의회의 입법역량강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지방의회의 보좌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1) 지방의원의 입법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지방의원의 입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역량을 갖춘 후보자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전문성만을 강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의



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꺼리게 되는 경우 정당에서 추대를 하여 지방의회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방의원이 당선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를 직능 대표로 하도록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입법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상임위원배정이 통상 2년 단위로 교체된다면 그나마 쌓아놓은 전문성도 교체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어렵다. 지방의회의 활동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은 상임위원회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 지방의원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임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위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sup>99)</sup>

## (2) 지방의회보좌인력의 강화

지방의회의원 개인만의 역량으로는 조례입안 및 심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좌인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의원처럼 개인보좌인력을 두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 인력을 배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조례와 관련하여 의사담당관,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등의 보좌기관을 두고 있다.<sup>10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실제로

99) 하세현,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발휘와 그 확충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제2호, 2005, 323 참조

10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사무분장규칙, 서울특별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단계별로 이를 보좌하고 집행부와 의견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챙길 수 있는 보좌조직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sup>101)</sup> 지방의회보좌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동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기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보좌인력을 강화하는데는 여론과 비용에 의한 한계가 있으므로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방안으로는 독일의 지방의회처럼 상임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sup>102)</sup>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일 뿐 본회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의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의 대립이 있다.<sup>103)</sup> 위원회의 결정도 본회의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으므로 본회의에 의한 위원회결정에 대한 지배가 가능한 한 대의제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지방의회단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위원회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자문을 받는 방법이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참조

101) 이해영, 지방의원발의활성화를 위한 입법고찰, 외법논집 제22집, 2006.5., 108면 참조

102) 독일의 전문가참여에 대해서는 김희곤,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2002, 294면 이하 참조

103) 전문가의 선임에 대한 헌법적 의견대립에 대해서는 Wacker, Jörg, Sachkundige Bürger und Einwohner in gemeindlichen Ausschüssen, Berli, 2000, s.101-108 참조.

## 7. 규칙제정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3조). 즉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일반추상적 법규범으로서, 이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법규명령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인바,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규칙은 법규로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물론, 기관위임사무도 규칙의 제정대상이 된다.

자치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칙의 제정은 문제가 있음은 주지하는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에 의한 규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으로 규율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규칙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의 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자치법 제23조의 해석상 기관위임사무도 규칙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역시 그 자체로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에서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치입법으로서의 속성이 크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집행기관의 입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자치입법으로서 규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개선을 입법론적 시론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바, 우선적으로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엄격한 기속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주민직선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점

은 물론, 자치입법의 현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자치입법을 조례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닌 바, 반드시 개별구체적 위임을 요구하여야 할 법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점에서 적어도 조례의 경우처럼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는 실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허용하는 근거로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을 들고 있는 점에서,<sup>104)</sup> 규칙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 자체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독자적 입법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치입법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규칙에 대한 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규칙의 경우에도 제정 또는 폐폐를 한 경우 감독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28조).<sup>105)</sup> 이러한 보고제도는 규칙제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서, 법규감독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자치권의 침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문제는 적법성감독 수단이라 할 때, 조례의 경우에는 재의요구 또는 제소 등의 법제도를 통한 교정을 제도화한데 반해, 규칙의 경우에는 그러한 수단을 두

104)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범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4.20. 92헌마264,279 전원재판부).

105) 지방자치법 제28조 (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적 감독기관에 의해 궁극적인 적법성통제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자치입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규칙의 제정절차에 있어 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바, 현행 법제상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등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제28조), 이외에 동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외의 세부적 사항은 다시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다.<sup>106)</sup> 그러나 조례나 규칙의 자치법규성에 비추어 볼 때, 심의회의 설치까지는 몰라도 심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과 관련하여서는 물론, 조례안의 발의 등 단체장의 입법적 관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입법보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제상 조례·규칙심의회도 일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는 그 구성상의 제한이 있을뿐더러 심의·의결기구인 점에서 한계가 있는바, 자치입법의 필요성 단계에서부터 입법안의 구상 및 성안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보좌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치입법과정의 경제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10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 5 장 결 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97년부터 지난 10년간 조례제정건수의 형식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조례도 다수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건수 등 형식적 측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실체적 한계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보충적·매개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래적 자치입법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래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조례는 법령의 보충적·매개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보다 분권화된 사회에서 조례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조례나 규칙이 자치입법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과정 또는 규칙제정과정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이나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치입법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 간의 협력이 요청되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과감한 사무이양과 재정권한의 이양이 동시에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이나 법령의 개정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초과조례”, “병행조례”는 선진적인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개발노력에서 탄생된 결실이라는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및 판례

-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법학연구제24집(2006)
- 김병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사유와 대법원 제소, 행정법연구 1999  
하반기
- 김영천,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초, 지방자치법연구  
제2권제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2. 12)
- 김철용, 행정법Ⅱ(제5판), 박영사, 2005
- 김희곤,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2002
- 박균성, 행정법강의(제5판), 박영사, 2007, 918쪽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7
-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 8
- 백종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학제3권제1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6
- 이혜영, 지방의원발의활성화를 위한 입법고찰, 외법논집 제22집,  
2006. 5
- 조성규,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한국지  
방자치법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조정찬, 위임조례 위주의 조례입법 극복방안, 지방자치법학회 학술  
발표회, 2005

참고문헌

최민호, 일본의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의 내용과 시사점, 지방행정, 2003. 9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최환용, 입법평가의 실험과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입법동향과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2008년 여름호

최환용,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통권 제29호

최환용, 지방자치법제의 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통권제34호, 한국법제연구원, 2008

하세현,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발휘와 그 확충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제2호, 2005

헌재 1995.4.20. 92헌마264,279 전원재판부)

헌재 1995. 4. 20, 92헌마 254, 279 결정

헌재 1991. 2.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100

대판 1991. 8. 27, 90누6613

대판 1997. 4. 25, 96추251

대판 2005. 5. 30 선고 99추85판결

대판 1987. 9. 29, 86누484 ; 1992. 1. 21, 91누5334

대판 2003. 9. 5, 2001두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판 1992.6.23 선고 92추17판결



## (2) 외국문헌 및 판례

### 1) 영미서

Bruce C. Daniels(ed.), Town and County : Essays o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 the American Colonies, Wesleyan University Press, Middletown, Connecticut, 1978

Chauncey C. Binney, Restriction upon Local and Special Legislation in State Constitutions, Kay & Brother, Philadelphia, 1894

David J. McCarthy, Jr., Local Government Law in a Nutshell(Fourth Edition), West Group, St. Paul, Minnesota, 1995

Ernest S. Griffith, The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Third Edition), Menthuen & Co. Ltd, London, 1976

Jack C. Plano & Milton Greenberg, The American Political Dictionary (eleventh Edition), Harcourt College Publishers, Fortworth, Texas, 2002

James Bryce, The American Commonwealth, Macmillan & Co., London, 1888. ; A Liberty Classics Edition, Liberty Fund, Inc., Indianapolis, Indiana, 1995.

Thomas C. Marks, Jr. & John F. Cooper, State Constitutional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St.Paul, Minnesota, 1998

Barnes v. District of Columbia, 91 U.S. 540, 23 L.Ed. 440(1876)

City of Clinton v. Cedar Rapids and Missouri Railroad Company, 24 Iowa 455, 461(1868)

참고 문헌

City of Trenton v. New Jersey, 262 U.S. 182(1923)

City of Trenton v. State of New Jersey, 262 U.S. 182, 43 S.Ct. 534,  
67 L.ed. 937(1923)

Merriam v. Moday's Executors, 25 Iowa 163, 170(1868)

People ex rel. Le Roy v. Hurlbut, 24 Mich. 44. 108(1871)

Stetson v. Kempton, 13 Mass. 272, 284(1816)

Withnell v. Reucking Construction Co., 249 U.S. 63, (1919)

2) 일 서

(財) 日本都市センター, 分権型社会における自治体法務, 2002

大森政輔・鎌田 薫 編, 立法學講義, 商事法務, 2006

鈴木庸夫編, 自治体法務改革の理論, 勁草書房, 2007

木佐茂男 編, 自治立法の理論と手法, ぎょうせい, 1998

山口道昭, 政策法務入門, 信山社, 2002

田中孝男, 分権時代の法制評価を考える-政策法務を下支えする自治体  
の法制管理, 地方自治職員研修32卷3号, 1999. 3

田村達久, 地方分権改革の法学分析, 敬文堂, 2007

内田和夫, “川崎市の市民オンブズマン条例の制定”, 自治総研8月号, 1990

中原茂樹・小早川光郎編, 地方分権と自治体法務, 2000

曾根暁子, 条例の評価と進化, 北村喜宣編, □□分権条例を創ろう! □□, ぎょ  
うせい, 2004

村上順, 日本の地方分権, 弘文堂, 2003

平松毅, “政治倫理条例に関する法的諸問題(一)(二・完)”, 自治研究 제 70권 제1호·제2호, 1994

平井喜雄, 法政策学-法的意思決定および法制度設計の理論と技法, 有斐閣, 1988

真砂泰輔, “要綱の法的性質”, 行政法の争点, 有斐閣, 1990

関 哲夫, 条例制定権の限界, 行政法の争点, 有斐閣. 1990

# 부 록

## 〈부록〉 주요 자치입법의 목적 및 조별목차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1. (자랑스런)농 어민대상조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기술화·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건설을 앞당기는 데 공헌한 농어나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3조(시상 부문과 인원) 제4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심사기준) 제8조(간사 및 서기) 제9조(현장조사) 제10조(심사결과 통지) 제11조(시상) 제12조(특진) 제13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선진농어촌건설에 기여한 농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다.
2. (중소기업)근 로자 자녀장 학기금설치및 운용조례/시 행규칙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	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취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상북도중소기업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용도)</p>	<p>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장학금 지급대상자추천) 제10조(장학금 지급 및 대상자 선발)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2조(결산 및 보고) 제13조(시행규칙)</p>	<p>기 위하여 경상남도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기금조성)</p>	<p>제4조(기금용도) 제5조(기금관리) 제6조(기금운용)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8조(장학생 선발) 제9조(장학금 지급정지) 제10조(결산 및 보고) 제11조(시행규칙)</p>
<p><b>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b></p>	<p>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과태료수납부 기록·관리) 제4조(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5조(신고 제외대상) 제6조(신고자) 제7조(신고방법) 제8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p> <p>제9조(신고서 처리 등)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제11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2조(신고자의 보호) 제13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제14조(준용) 제15조(시행규칙)</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동법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lt;개정 2004.1.29, 2004.11.30, 2005.8.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li> <li>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li> <li>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li> <li>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li> </ol>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p> <p>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p> <p>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p> <p>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동법 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lt;개정 2005.12.30&gt;</p>
<p>4.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조례</p>	<p>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내에서 활동하는 NGO와 행정과의 공동파트너십을 구축하여 NGO들의 국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p> <p>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p> <p>제3조(기능)</p> <p>제4조(구성)</p> <p>제5조(임기)</p> <p>제6조(위원의 해촉)</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p> <p>제8조(회의 등)</p> <p>제9조(간사·서기)</p> <p>제10조(회의록)</p> <p>제11조(실비변상)</p> <p>제12조(운영규정)</p>
<p>5.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p>	<p>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p> <p>제3조(정의)</p> <p>제4조(시장의 책무)</p> <p>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p> <p>제6조(갈등영향분석)</p> <p>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p> <p>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p> <p>제9조(위원회의 기능)</p> <p>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p> <p>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p> <p>제12조(갈등조정협의회)</p> <p>제13조(협의회의 구성)</p> <p>제14조(합의의 효력 및 이행)</p> <p>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p> <p>제16조(수당 등 지급)</p> <p>제17조(시행규칙)</p>
<p>6.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p>	<p>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p> <p>제4조(기능)</p> <p>제5조(구성)</p> <p>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p> <p>제7조(회의)</p> <p>제8조(간사 및 서기)</p> <p>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p> <p>제10조(회의록)</p> <p>제11조(수당 및 여비)</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12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4조(시행규칙)	
7. 강원평화상조례	강원평화상조례		
	제1조(목적)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의미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제조명하고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4조(상패 및 부상) 제5조(시상시기) 제6조(시상후보자 추천)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제8조(간사 및 서기) 제9조(실비변상) 제10조(공적사실의 확인) 제11조(공동시상) 제12조(시행규칙)
8.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일등도민운동 추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지원하	므로써 일등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행·재정 지원)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보조금액의 결정) 제6조(결산보고) 제7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준용)
9.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흡연으	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 제주를 건설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지정대상) 제4조(의견수렴) 제5조(고시) 제6조(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조치) 제7조(건강거리 표시) 제8조(과태료)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금연구역 지정)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0.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b>제2장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b> 제4조(설치) 제5조(기능)	제6조(심의·자문 대상) 제7조(구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규정의 준용) 제9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b>제3장 신기술 활용 촉진</b> 제10조(설계반영의무) 제11조(계약) 제12조(신기술 설명제)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가서 반영) 제15조(포상)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6조(시행규칙)</p> <p>『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p> <p>① 국토해양부장은 國內에서 최초로 開發한 建設技術 또는 外國에서 導入하여 改良한 것으로 國內에서 新구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建設技術에 대하여 이를 開發한 者(이하 “技術開發者”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技術의 普及이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技術을 새로운 建設技術(이하 “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lt;改正 93·6·11, 97·1·13, 2001·1·16, 2008·2·29&gt;</p> <p>② 新技術의  지정에  必要한 技術의  評價方法 및  指定節次에  관하여는  大統  領令으로  定한다. &lt;新設 93·6·11&gt;</p> <p>③  국토해양부장은  技術개발자를  보호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定하여  技術개발자에게  新기술에  대한  技術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  료되어  技術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新기술  的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保護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lt;개정 2004·12·31, 2008·2·29&gt;</p> <p>④  국토해양부장은  發住廳에게  新技術과  관련된  新技術裝備등의  性能試驗,  施工方法등의  試驗施工을   권고할  수  있으며,  性能試驗 및  試驗施工의  結果가  優秀한   경우  新技術의  活用·촉진을  爲하여  發住廳이  施行하는  建設  工事に  新技術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lt;改正 97·1·13, 2008·2·29&gt;</p> <p>⑤  국토해양부장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技術開發者에   대하여  新技術의  性能 또는  品質의  향상을  爲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新技術  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lt;新設 93·6·11, 97·1·13, 2008·2·29&gt;</p> <p>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의  보호내용·技術使用料·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活用方法등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lt;新設 95·1·5, 2004·12·31&gt;</p> <p>『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p> <p>①  技術개발자는  新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技術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국토해양부장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新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③  삭제 &lt;97·7·21&gt;</p> <p>④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新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新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建設공사중  新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97·7·21, 99·10·30&gt;</p> <p>⑤  국토해양부장은  新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97·12·31 대통령15569, 99·10·30, 2002·12·5, 2005·6·30,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li> <li>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li> <li>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li> <li>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li> </ol> <p>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99·10·30, 2008·2·29&gt; [전문개정 95·8·4]</p> <p>제34조의2(시험시공의 권고)</p> <p>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 [본조신설 2005·6·30]</p>	
11.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 및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구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건축의 장래를 이끌어 갈 후진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모든 건축인이 참여하는 범 도민 행사를 마련하고 동 행사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행사의 명칭)</p> <p>제3조(개최)</p> <p>제4조(위원회등)</p> <p>제5조(심사위원 자격)</p> <p>제6조(위원회의 기능)</p> <p>제7조(공모 작품 및 자격)</p> <p>제8조(공모방법등)</p> <p>제9조(시상 내역 및 대상)</p> <p>제10조(특전)</p> <p>제11조(수당)</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생활공간 구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건축의 장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건축문화상(이하 “건축 문화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상권자 및 시기)</p> <p>제3조(건축문화상 시행계획 공고)</p> <p>제4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p> <p>제5조(제출서류 및 반환 등)</p> <p>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p> <p>제7조(상의 종류 및 부상)</p> <p>제8조(수당)</p> <p>제9조(건축문화상 운영에 관한 행정처리 등)</p>
12. 게임산업법 인출자에 관한조례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거 충청</p>	<p>남도(이하 도라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사업) 제5조(타법령의 적용·준용) 제6조(시행규칙)	
13.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미(京畿米)명성을 유지하고 경기미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	발하거나 검거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	상 및 기준) 제4조(지급방법) 제5조(지급제외)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7조(처리결과통지)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예산의 확보) 제10조(시행규칙)
14. 경남소프트웨어주식회사설치조례	경남소프트웨어주식회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거 “경남소프트웨어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내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제3조(법인격)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제6조(자본금) 제7조(사업) 제8조(도의 주주권 행사)	제9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 제10조(수익금처리) 제11조(사업의 대행) 제12조(사업연도)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타법의 적용) 제16조(시행규칙)
15. 경로당지원조례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	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3조(경로당 지원)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의무) 제12조(회의) 제13조(수당 등) 제14조(시행규칙)
16. 경유자동차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	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조기폐차 권고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따른다.</p> <p>제4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제5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6조(저공해 조치 이행기한)</p> <p>제7조(저공해 조치 권고) 제8조(재정적 지원) 제9조(권한의 위임)</p> <p>「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li> <li>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li> <li>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li> </ol> <p>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li> <li>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li> <li>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li> <li>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li> <li>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li> </ol>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lt;신설 2008.3.21&gt;</p> <p>④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lt;신설 2008.3.21&gt;</p>		
17.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p>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시행)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경제교육의 기본 원칙)</p> <p>제4조(경제교육시책의 수립·시행)</p> <p>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p> <p>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p> <p>제7조(경제교육센터 지정 등)</p> <p>제8조(실비보상 등)</p> <p>제9조(시행규칙)</p>		
18.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산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산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지원대상)</p> <p>제4조(사업의 종류)</p> <p>제5조(지원내용 등)</p> <p>제6조(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p> <p>제7조(임기)</p> <p>제8조(회의)</p> <p>제9조(간사 및 서기)</p> <p>제10조(감독 및 평가)</p> <p>제11조(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어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지원대상)</p> <p>제4조(사업의 종류)</p> <p>제5조(지원내용 등)</p> <p>제6조(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p> <p>제7조(임기)</p> <p>제8조(회의)</p> <p>제9조(수당 등)</p> <p>제10조(감독 및 평가)</p> <p>제11조(시행규칙)</p>				
<p>19.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p>	<p>광 주</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p> <p>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p>	<p>경 기</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p> <p>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p> <p>제6조(장애인</p>	<p>충 남</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이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p> <p>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p> <p>제6조(장애인</p>	<p>경 북</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p> <p>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p> <p>제6조(장애인 보호 자 의</p>	<p>제 주</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제5조(장애인의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비용의 보조) 제7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제8조(시행규칙)	제6조(장애인의 보호자의 관람석) 제7조(도비의 보조) 제8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보호자의 관람석) 제7조(도비의 보조) 제8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제9조(시행규칙)	관람석) 제7조(도비의 보조) 제8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제9조(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6조(장애인의 보호자의 관람석) 제7조(도비의 보조)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9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제10조(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20.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조(지원대상) 제3조(사업의 종류) 제4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예산지원)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제7조(지원신청)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지원금 사용 잔액의 반납)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3조(수당 등) 제14조(교육지원사업 평가 등) 제15조(연구 등의 위탁) 제16조(교육협력관의 파견 요청) 제17조(시행규칙)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3조(수당 등) 제14조(교육지원사업 평가 등) 제15조(연구 등의 위탁) 제16조(교육협력관의 파견 요청) 제17조(시행규칙)	
21.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조례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및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거 장애인 등 사	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및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거 장애인 등 사	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정기준의 시설이 설치된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주요 자치입법의 목적 및 조별목차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자립하여 사회적으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공동생활 가정의 유형) 제4조(운영의 기본원칙) 제5조(공동생활 가정의 기능) 제6조(설치 및 운영주체) 제7조(설치기준) 제8조(설치·운영 신고등) 제9조(설치취소 등)</p>	<p>공동생활하면서 자립하여 사회적으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0조(입주대상자) 제11조(입주자선정) 제12조(입주인원) 제13조(전임생활지도원)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15조(운영위원회설치) 제16조(비용의 수납) 제17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제18조(재무회계) 제19조(관리운영규칙) 제20조(설치 및 운영비 보조) 제21조(보조금의 지원절차) 제22조(보조금 반환 등) 제23조(지도감독) 제24조(현황보고) 제25조(준용) 제26조(시행규칙)</p> <p>제2조(정의) 제3조(공동생활 가정의 유형) 제4조(운영의 기본원칙) 제5조(공동생활 가정의 기능) 제6조(설치 및 운영주체) 제7조(설치기준) 제8조(설치·운영 신고 등) 제9조(설치취소 등)</p> <p>제10조(입주대상자) 제11조(입주자선정) 제12조(입주인원) 제13조(전임생활지도원)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15조(운영위원회설치) 제16조(비용의 수납) 제17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제18조(재무회계) 제19조(관리운영규칙) 제20조(설치 및 운영비 보조) 제21조(보조금의 지원절차) 제22조(보조금 반환 등) 제23조(지도감독) 제24조(현황보고) 제25조(준용) 제26조(시행규칙)</p>
	<p>※ 각 조례 제1조 목적에 기재된 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2007년 10월 17일 개정으로 제59조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미반영.</p>	
	<p>『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p> <p>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p> <p>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2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관리의 책무) 제6조(유지·관리기준)</p>	<p>제7조(책임관리실명제) 제8조(관리인의 지정 및 준수 사항)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1조(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2조(상가겸용 공중화장실 설치) 제13조(상가겸용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 제14조(유지·관리비용 산정 및 확보) 제15조(설치비용의 지원) 제16조(관리의 평가) 제17조(포상)</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6조(관리대장</p>	<p>의 비치) 제7조(위탁운영) 제8조(관리인의 교육)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제10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2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4조(준수사항) 제15조(시행규칙)</p>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 폐지. 또한 동법 제16조의 경우 2004년 개정시 삭제됨.			
23.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마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향상에 이바지함을 목</p>	<p>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제4조(소음피해대책사업의 재원 등) 제5조(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 등) 제6조(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설치</p>	<p>· 운영)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임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 제11조(간사) 제12조(수당)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시행규칙)</p>	
24.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
	제1조(목적) 이	제1조(목적) 이	제1조(목적) 이 조	제1조(목적) 이 조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조례는 각종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산업 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시책 및 사업) 제4조(관광공예품 지정) 제5조(우수업체 지정) 제6조(기능 보유자 인정) 제7조(지정등의 신청) 제8조(지정등의 고시 및 통지) 제9조(지정등의 효력) 제10조(지정서 등의 교부) 제11조(지정등의 해제) 제12조(지원) 제13조(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제14조(산업디자인 전람회) 제15조(추천 작가) 제16조(초대작가) 제17조(작가효력) 제18조~제24조 &lt;삭제 1996.01.18 조례 제2522호&gt;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6조(시행규칙)</p>	<p>조례는 각종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산업 진흥과 소득 및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시책 및 사업) 제4조(관광공예품 지정) 제5조(우수업체 지정) 제6조(기능 보유자 인정) 제7조(지정등의 신청) 제8조(지정등의 고시 및 통지) 제9조(지정등의 효력) 제10조(지정서 등의 교부) 제11조(지정등의 해제) 제12조(지원) 제13조(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제14조(산업디자인 전람회) 제15조(추천 작가) 제16조(초대작가) 제17조(작가효력) 제18조~제24조 &lt;삭제 1993. 7. 9 조례 제2856호&gt;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6조(시행규칙)</p>	<p>조례는 각종 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내용) 제4조(공예품 경진대회) 제5조(공고) 제6조(시상)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간사) 제10조(수당 등) 제11조(지원)</p>	<p>조례는 민속공예품과 산업디자인의 적극적인 개발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경진·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내용) 제4조(대회구분) 제5조(공고) 제6조(출품의 제한) 제7조(심사 및 지도위원) 제8조(시상) 제9조(전시) 제10조(작품의 반환) 제11조(제정지원) 제12조(기술지원) 제13조(판로개척)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5조(시행규칙)</p>
<p>25. 관광モニター 조례/시행규칙</p>	<p>경기도관광モニター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관광モニター(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규와의</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관계) 제4조(위촉) 제5조(임기)	제6조(해촉) 제7조(제보대상) 제8조(신분증)	제9조(보상금)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시행규칙)
26.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내용) 제4조(대회구분) 제5조(공고) 제6조(출품의 제한) 제7조(심사 및 지도위원)	제8조(시상) 제9조(전시) 제10조(작품의 반환) 제11조(제정지원) 제12조(기술지원) 제13조(판로개척)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5조(시행규칙)
27.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제4조(예산의 계상) 제5조(지원규모 등)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제7조(지원신청)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제11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제13조(회의 등) 제14조(수당 등)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의)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7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제18조(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제4조(예산 지원)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제6조(지원신청)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제9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회의 등) 제12조(수당 등)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4조(파견요청) 제15조(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며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지원의 대상)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4조(교육지원사업기본 계획의 수립) 제5조(예산의 계상 등)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제9조(전출금의 반납)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회의 등) 제13조(수당 등) 제14조(교육실무협의회의)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6조(교육협력관의 파견) 제17조(시행규칙)
28. 교통약자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b>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b></p>	<p>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적용범위)</p> <p>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p> <p>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p> <p>제6조(이용요금)</p> <p>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p>	<p>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입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적용범위)</p> <p>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제5조(위원회의 구성)</p> <p>제6조(위원회의 운영)</p> <p>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수립 등)</p> <p>제8조(저상버스의 도입)</p> <p>제9조(저상버스의 운영)</p> <p>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p> <p>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p> <p>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p> <p>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p>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p> <p>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p> <p>제16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p> <p>제17조(시행규칙)</p>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 ④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b></p>	<p>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적용범위)</p> <p>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제5조(위원회의 구성)</p> <p>제6조(위원회의 운영)</p>	<p>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제3조(기능)</p> <p>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p> <p>제5조(수탁자의 의무)</p> <p>제6조(위탁계약의 해지)</p> <p>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p> <p>제8조(이용대상)</p> <p>제9조(이용신청 등)</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7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제17조(예산의 확보)	제10조(이용요금) 제11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등) 제12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제13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설치) 제14조(기능) 제15조(구성) 제16조(임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회의) 제19조(분과위원회) 제20조(간사)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2조(수당 등) 제23조(운영세칙) 제24조(예산의 확보) 제25조(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제26조(시행규칙)
30.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조례/시행규칙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구도심 또는 원도심 상가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구도심 또는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3조(기본방향) 제4조(구도심구역 지정·변경 등)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신청) 제7조(지원기준) 제8조(보조금 재원 및 관리)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회의) 제16조(위원 수당) 제17조(시행규칙)
31.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리 귀금속보석단지의 육성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3조(기능) 제4조(사용허가) 제5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감면)	제7조(관리의 책임) 제8조(취소) 제8조의2(청문) 제9조(보고 및 검사) 제10조(준용) 제11조(규칙)
32.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글로벌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매력있는 세계중심도시로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시의 책무) <b>제2장 글로벌도시정책의 추진체계</b> 제4조(기본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b>제3장 글로벌 존의 지정·운영 등</b> 제6조(글로벌 존의 지정) 제7조(외국인 편의시설 등의 글로벌화 유도) 제8조(외국인 지원시설의 설치) 제9조(지원시설의 기능) 제10조(운영의 위탁)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b>제 4 장 서울글로벌 도시심의위원회</b> 제11조(서울글로벌도시 심의위원회의설치)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간사 등)	제16조(수당 등) 제17조(비밀엄수) 제18조(소위원회) 제19조(시행규칙)
33.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경남의 기능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 요건)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제6조(예우 및 지원)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장)	제11조(회의) 제12조(기능인 단체의 지원) 제13조(기능인 우대) 제14조(기능인 관리 및 후원) 제15조(수당 등) 제16조(시행규칙)
34.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5조(지원단) 제6조(윈스톱 처리회의)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8조(시·군의 참여) 제9조(유관기관의 참여) 제10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11조(포상) 제12조(예산 확보) 제13조(시행규칙)
35.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본사 등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권역안으로의 이전 및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촉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수당 등) 제6조(입지보조금 지원)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9조(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 지원) 제10조(이전보조금 지원) 제11조(금융지원) 제12조(행정지원)	제13조(대규모의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4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제1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제16조(기업유치 협력관의 활용) 제1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 등) 제19조(시행규칙)
36.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과 『지방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제3조(사업의 범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신청)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0조(신용보증)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p>	<p>(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조성) 제4조(사업의 범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신청)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차액 보전)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3조(관계규정 준용) 제14조(시행규칙)</p>	<p>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제3조(자금구분) 제4조(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6조(용자대상) 제7조(용자의 신청) 제8조(용자기간 및 용자금액 등) 제9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0조(용자금의 반환) 제11조(용자금 반환통보) 제12조(용자 및 상환금 회수)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제15조(관리) 제16조(시행규칙)</p>
<p>3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시행규칙</p>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p>38.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p>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p>	<p>온실가스 저감, 신·</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b>관한 조례</b></p>	<p>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b>제 2 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b></p> <p>제3조(기금의 설치)</p> <p>제4조(기금의 조성)</p> <p>제5조(기금의 용도)</p> <p>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p> <p>제7조(기금의 운용·관리)</p> <p><b>제 3 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p>	<p>원회의 설치)</p> <p>제9조(위원회의 구성)</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p> <p>제11조(위원회의 운영)</p> <p>제12조(운영세칙)</p> <p><b>제 4 장 보 칩</b></p> <p>제13조(보고 및 검사 등)</p> <p>제14조(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p> <p>제15조(준용규정)</p> <p>제16조(시행규칙)</p>
	<p>『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p> <p>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p>		
<p><b>39. 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b></p>	<p>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불우도민들에게 수술 및 치료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p> <p>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기금의 재원)</p> <p>제4조(기금의 지원)</p> <p>제5조(기금수혜대상자 선정등)</p> <p>제6조(기금의 운용관리)</p> <p>제7조(위원회 구성)</p> <p>제8조(위원회의 기능)</p> <p>제9조(위원장의 직무)</p> <p>제10조(위원의 임기)</p> <p>제11조(위원회의 회의)</p> <p>제12조(실비보상)</p> <p>제13조(결산 및 보고)</p> <p>제14조(시행규칙)</p>		
<p><b>40.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b></p>	<p>전라남도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 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 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정의)</p> <p>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p> <p>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p> <p>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p> <p>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p> <p>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p> <p>제8조(인사우대 등)</p> <p>제9조(납세자보호관등의 교육)</p> <p>제10조(납세자보호관등의 복무자세)</p> <p>제11조(납세자보호관실 환경)</p> <p>제12조(고충민원 처리 준칙)</p> <p>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p> <p>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p> <p>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8조(신청의 취하)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제22조(고충민원 처리안내) 제23조(해당세무부서의 의견조회)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제27조(처리절차) 제28조(위원회 구성) 제29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제30조(위원회 의결) 제31조(위원회 운영) 제32조(처리결과 통지) 제33조(사후관리) 제34조(과생자료의 통보 등)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제36조(처리기간) 제37조(협의처리)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제39조(세무상담 자료 비치) 제40조(세무상담 일지) 제41조(납세자권리현장안내) 제42조(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숙지 및 교육) 제43조(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제45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제46조(보고) 제47조(확인)
41. 노사화합 촉진 조례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 등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 대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지원사업과 전라북도 산업평화대상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지원 등) 제4조(지원대상) 제5조(전제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 제8조(지원회수 및 규모) 제9조(선정취소 등)	제10조(수상대상자) 제11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12조(시상) 제13조(수상대상자 취소 등) 제14조(사업시행 공고) 제15조(후보 추천) 제16조(공적심사) 제17조(대상자 결정) 제18조(기타사업 등) 제19조(준용) 제20조(시행규칙)
42.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의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	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업무관장) 제4조(양육비 지원액)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제6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제7조(삭제 2003. 6. 5) 제8조(지원절차) 제9조(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제10조(보조금 교부 신청 등) 제11조(환수조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보고에 관한 사항)
43.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b>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b></p>	<p>의 체결 등 국제교역의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도의 책무) 제4조(농림어업인 등의</p>	<p>책무) 제5조(소비자의 책무) 제6조(농림수산업·농산어촌 진흥정책의 기본방침) 제7조(예산의 확보) 제8조(농림어업인 등의 소득보전) 제9조(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0조(재해를 입은 농</p>	<p>림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농산어촌 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제12조(기업가적 농림어업인 등의 육성) 제13조(통일대비 농업 정책) 제14조(자문단의 설치) 제15조(실비보상) 제16조(시행규칙)</p>
<p><b>44.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조례시행규칙)</b></p>	<p>서울특별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 농산물에 대한 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p>	<p>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간이속성검사 등) (제명개정 2007.10.01) 제4조(유통중지) 제5조(정밀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6조(손실보상 등) 제7조(손실보상심의회)</p>	<p>제8조(보상금의 환수) 제9조(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간이속성검사 등) (제명개정 2007.10.01)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1조(시행규칙)</p>
<p><b>45.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b></p>	<p>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및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산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p>	<p>켜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내용)</p>	<p>제6조(어린이 등의 참여 지원)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시행규칙)</p>
<p><b>46.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b></p>	<p>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p>	<p>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다문화가족지원 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공청회 개최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8조(실태조사 등)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10조(구성)</p>	<p>제11조(임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회의)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5조(수당 등) 제16조(행· 재정지원 등)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18조(기본소양 교육) 제19조(생활정보 제공) 제20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제21조(자활지원)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에 대한 보호·지원) 제23조(아동의 보육) 제24조(생활 및 법률상 담의 제공 등)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지정) 제26조(지원센터에 대 한 지원 등)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28조(민간과의 협력) 제29조(시행규칙)
47. 다수인 민 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 은 인천광역시 사업 과 관련된 다수인민 원에 대하여 효율적 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다수인민원특 별 태스크포스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태스크포스팀의 구성 등) 제3조(태스크포스팀의 기능) 제4조(다수인민원인력 풀) 제5조(다수인민원조정 회의 설치)	제6조(조정회의의 기능) 제7조(조정회의의 운영) 제8조(회의록) 제9조(수당 등) 제10조(관계기관의 협 조 등) 제11조(포상 등) 제12조(운영세칙)
48. 다자녀 가 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 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 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5조(지원대상) 제6조(다자녀 가족 지원 내용) 제7조(비용의 부담) 제8조(지원신청) 제9조(환수조치)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 1 조 ( 목 적 ) 이 조 례 는 『영유아 보육법』 ( 이 하 “법”이 라 한 다 )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대 구 광 역 시 ( 이 하 “시” 라 한 다 ) 에 거 주 하 는 영유 아 의 보 호 와 교 육 의 질 을 향상 시 키 고 보 육 의 공 공 성 을 확보 하 며 , 보 호 자 의 사 회 적 경 제	제 1 조 ( 목 적 ) 이 조 례 는 『영유아 보육법』 ( 이 하 “법”이 라 한다 ) 의 규 정 에 의 하 여 광 주 광 역 시 ( 이 하 “시”라 한다 ) 의 영 유 아 를 보 호 하 고 교 육 의 질 을 향상 시 킴 으 로써 보 육 의 공 공 성 을 확 보 하 며 , 영유 아 의 기 본 적 인 권 을 실 현 하 고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당 등) (비용의 제11조(설 치 및 운영) 제 1 8 조 제 1 2 조 (비용의 (기능) 보조) 제 1 3 조 제19조(비 (구성) 용 및 제14조(운영 위원회) 의 반환 제15조(보 육계획) 명령) 제16조(수 립 시기 제 2 0 조 및 절차) (지도· 제 1 7 조 감 독) 제21조(시 행규칙) 제21조(시 행규칙)	제 1 1 조 (해측) 제12조(위 원 장 의 직무) 제 1 3 조 (회의) 제 1 4 조 (위원의 수당) 제15조(설 치 및 운영) 제16조(설 치기준) 제 1 7 조 (기능) 제 1 8 조 (구성)	제19조(보 육 정보 센터 의 운영 위 원회) 제 2 0 조 (비용) 제 2 1 조 (비용의 보조) 제 2 2 조 (보조금 의 반환 명령) 제23조(보 수교육) 제24조(시 행규칙)
<b>49. 다중이용시                      설 등의 실                      내공기질 유                      지기준에 관                      한 조례</b>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b>50. 대기 및 수                      질환경 보전                      법규 위반업                      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b>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을 촉구하고, 쾌적한 제2조(공개 대상) 대기 및 수질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 제3조(공개 방법) 관련법규를 위반한 여 주민의 삶의 질 제4조(공개 시기)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을 향상시키기 위하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위반내용을 주민에 여 필요한 사항을 제6조(사전통지) 게 공개함으로써 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7조(시행규칙) 반사항에 대한 개선 한다.			
<b>51. 대기오염물                      질 배출허용                      기준조례</b>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환경기 본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p> <p>『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환경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52. 대기환경기준조례	인천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환경기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기환경기준)</p>
	<p>『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p>	
53.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p>	<p>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민</p> <p>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2조(기능) 제3조(구성 및 자격) 제4조(임기 등)	제5조(감사실시) 제6조(수당)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8조(운영세칙)
54. 도민봉사실 운영조례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억울하고 어려운 고정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충청남도 민봉사실(이하	“도민봉사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3조(실장) 제4조(민원상담위원) 제5조(위원 위·해촉) 제6조(보상금) 제7조(시행규칙)	
55.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도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	임성 확보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구성 및 운영) 제4조(기능) 제5조(도민평가단의 모집 및 위촉)	제6조(활동지원 등) 제7조(도민평가 결과의 활용) 제8조(수당 등) 제9조(시행규칙)	
56. 도서관 육성(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도서관의 진흥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광주광역시의 책무) 제4조(대표도서관의 책무) 제5조(대표도서관	<b>제 1 장 총 칙</b>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 및 경기도 도서관정보 서비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의무) <b>제 2 장 대표도서관</b> 제4조(설치·운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의무) 제4조(책무) 제5조(설치 등) 제6조(소관 업무) 제7조(운영인력) 제8조(운영규칙) 제9조(설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및 제44조 등에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진흥시키고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과 정보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의 설치 등) 제6조(소관업무) 제7조(조직·인력)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기본계획의 수정)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설치) 제12조(구성) 제13조(심의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7조(회의 등) 제18조(간사 및 서기) 제19조(수당 및 여비) 제20조(운영세칙 등)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 제23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제24조(도서관 관련 정보의 제공) 제25조(의견수렴 창구운영)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7조(시행규칙)</p>	<p>제5조(규모) 제6조(조직·인력) 제7조(업무) 제8조(보조기구) 제9조(대표도서관의 지정·운영) 제10조(세부사항) <b>제 3 장 위원회</b> 제11조(운영) 제12조(기능) 제13조(구성) 제14조(임기) 제15조(직무) 제16조(회의) 제17조(수당 등) 제18조(간사) 제19조(운영규정) <b>제 4 장 사이버도서관</b> 제20조(업무) 제21조(운영요원) 제22조(지도·감독) <b>제 5 장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b> 제2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4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제25조(공공도서관의 운영·지원) 제26조(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27조(시행규칙)</p>	<p>제10조(구성)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심의 등) 제13조(회의 등)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운영규칙) 제17조(업무의 위탁)</p>	<p>계획의 수립) 제 5 조 (의견 제출 요청 등) 제6조(설립 등) 제7조(수행 업무) 제8조(자료의 납본) 제9조(설치) 제10조(구성) 제11조(임기) 제12조(심의)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5조(회의 등) 제16조(간사) 제17조(수당 등) 제18조(운영세칙) 제19조(공공도서관의 정의) 제20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제21조(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 제22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23조(도서관 관련 정보의 제공) 제24조(의견수렴 창구운영) 제25조(시행규칙)</p>	
<p>『도서관법』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li> <li>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li> <li>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li> <li>4.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li> <li>5.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li> </ol>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p> <p>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57.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조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padding: 5px;">제1조(목적) 도서관등의 활성화 및 시민 독서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등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시민 독서 활동을 증진케</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문화발전,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및 시민들의 삶의 질</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사립 도서관등 활성화기금) 제3조(대구광역시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등)</td> </tr> </table>	제1조(목적) 도서관등의 활성화 및 시민 독서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등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시민 독서 활동을 증진케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문화발전,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사립 도서관등 활성화기금) 제3조(대구광역시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등)
제1조(목적) 도서관등의 활성화 및 시민 독서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등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시민 독서 활동을 증진케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문화발전,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사립 도서관등 활성화기금) 제3조(대구광역시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등)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4조(도서관등에 대한 지원)		제5조(독서진흥) 제6조(시행규칙)	
58. 도시(공공) 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제4조(야간경관기본계획)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제10조(소위원회)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2조(협조요청) 제13조(수당) 제14조(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시장·구청장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공공디자인총괄계획가) 제8조(공공디자인인의 공모) 제9조(시범가로 등의 선정 및 지원) 제10조(공공디자인비용계상) 제11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회의) 제15조(소위원회) 제16조(협조요청) 제17조(수당) 제18조(운영세칙)
59. 도시개성창조사업 운영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도시개성 창조를 위한 제반요소의 개발과 운영관리 및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다운 도시경관 연출과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의 고취를 통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시 상징물) 제4조(운영관리) 제5조(자문위원회) 제6조(위임규정)	
60.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시행규칙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전통도예 전문인력 양성) 제6조(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제7조(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제8조(기술개발) 제9조(도자클러스터 조성 등) 제10조(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61.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릉읍 울릉읍 독도리에 상시 거주하는 민간인의 생계를 지원하여 독도 정착의욕을 고취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생계비 지원) 제4조(지원제한) 제5조(시행규칙)	
62.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3조(사업)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행정지원) 제8조(권한의 위탁) 제9조(보고 및 검사) 제10조(운영규정) 제11조(준용) 제12조(시행규칙)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설립·운영) 제4조(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제6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 출연등) 제8조(관리규정) 제9조(이사의 선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3조(준용규정) 제14조(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①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3.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실천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행정을 촉진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기본계획)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표준화) 제7조(세부실천방안)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기능)	제9조(성과평가)	제10조(시행규칙)		
64.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3조(업무) 제4조(위탁운영) 제5조(의료수가)	제6조(약제 <1999. 4. 13> 제7조(도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보고와 감독) 제9조(위탁의 해지) 제10조(시행규칙)		
65. 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먼지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제4조(예보의 내	용 및 기준)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7조(주의보·경보에 따른 조치) 제8조(황사예보 등에 따른 조치)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제10조(예보 및 경보등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2조(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먼지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제8조(예산의 지원) 제9조(운영세칙)	
66.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안전성 보장 확보를 위한 안전성	확인검사와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안전성 확인검사	보상금 절차 등) 제4조(검사료)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보상금 지급) 제7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8조(예산의 확보) 제9조(비밀의 보장)		
67. 도범(성실) 납세자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경기도성실납세자등 선정및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및 구·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이 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선발) 제3조(지원)</p> <p><b>제2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b></p> <p>제4조(구성) 제5조(위원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등) 제8조(간사)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10조(수당 등)</p> <p><b>제3장 보칙</b></p> <p>제11조(시행규칙)</p>	<p>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납세자 및 전자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선정대상)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4조(선정) 제5조(명부관리) 제6조(표창 및 인증) 제7조(지원) 제8조(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회의 등) 제12조(간사)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수당 등) 제15조(시행규칙)</p>	<p>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상자의 범위) 제3조(대상자의 선정) 제4조(우대) 제5조(대상자 확정) 제6조(명부관리) 제7조(시행규칙)</p>	<p>이 되는 마을 및 직장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선정대상)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4조(선정) 제5조(인증등) 제6조(지원) 제7조(심사위원회) 제8조(수당등) 제9조(시행규칙)</p>
<p><b>68. 무등산수박 보호 및 육성 조례</b></p>	<p>광주광역시 무등산수박보호 및 육성 조례</p>			
<p><b>69.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b></p>	<p>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p>	<p>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임무) 제4조(제품검사실 운영) 제5조(품질인증서 부착) 제6조(품질인증서 부착 제한)</p>	<p>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활동에 있어 지적소</p>	<p>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한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3조(상담실 위치) 제4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실 운영) 제6조(상담방법)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8조(상담처리)	제9조(시정조치) 제10조(자문) 제11조(상담실 운영위원회) 제12조(기록유지) 제13조(수당 등) 제14조(운영세칙)
70. 무역회사설립조례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b>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b> 및 상법에 의거 전라북도 무역회사를 설립 하여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3조(사무소) 제4조(정관) 제5조(자본금) 제6조(사업) 제7조(전라북도의 주주권 행사)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제9조(지방비의 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1조(사업년도) 제12조(경영평가)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6조(시행규칙)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 2002년 3월 25일 개정에 의해 삭제됨. 개정조항 미반영.		
71. 무의탁자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무의탁자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역안의 부랑인, 행려환자 등 무의탁자를 보호·선도하고, 자력으로 새로운 생활개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무의탁자	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위치)	제4조(보호업무) 제5조(입소대상자) 제6조(관리위탁)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위탁운영의 해지) 제9조(청문) 제10조(지도·감독)
72.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대상) 제4조(문해교육의 원칙)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추진주체 등) 제7조(경비지원) 제8조(시행규칙)
73.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및 정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축제의 육성) 제4조(정례축제 등)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7조(축제 심의위원회 의 운영)	제8조(수당) 제9조(민간축제의 지원)	제10조(축제사무의 위탁) 제11조(축제의 평가)
74.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	정에 의한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3조(세입) 제4조(세출) 제5조(회계공무원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8조(전용금지) 제9조(자치단체간 수계관리기금사업 구분) 제10조(수계관리기금사업의 협의·조정) 제11조(준용) 제12조(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출연) 4. 차입금(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5. 미혼모 지원조례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미혼모와 미혼모의 자녀가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도	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등) 제5조(미혼모 지원센터) 제6조(시행규칙)
76. 민간자본유치촉진및민간투자촉진조례/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전라남도 민간자본 유치 촉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에 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사회간접 자본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적			
	<p>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지방세 감면) 제4조(산업입지 지원) 제5조(고용보조금 지원) 제6조(직업능력 개발훈련보조금 지원) 제6조의2(초기정착보조금 지원) 제6조의3(생산자 서비스업 지원) 제7조(금융지원) 제8조(행정지원) 제8조의2(의회의 동의 등)</p>	<p>제8조의3(시가 임차하는 민간 투자 사업방식) 제9조(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기능) 제11조(구성) 제12조(회의) 제13조(간사등) 제14조(수당 등) 제15조(협상단 운영) 제16조(유치활동 지원) 제16조의2(포상금) 제17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p>	<p>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민자유치기 본계획의 수립) 제4조(민자유치기 본계획의 내용) 제5조(민간개발자의 제안사업) 제6조(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고시)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8조(민자유치 사업의 지원)</p>	<p>제9조(협약의 체결) 제10조(민자유치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민자유치종합지원협의회) 제12조(민간투자유치기획단의 설치) 제13조(민자유치 사업 성실이행 보장) 제14조(관련부서의 협조) 제15조(민자유치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제16조(준용규정) 제17조(수당 등) 제18조(시행규칙)</p>
77. 민원모니터 운영조례/시행규칙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도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위촉) 제5조(위촉기간) 제6조(해촉) 제7조(제보대상) 제8조(신분증) 제9조(명예민원실장) 제10조(실비보상)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2조(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도정발전과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모집 및 위촉) 제4조(위촉기간) 제5조(해촉) 제6조(신분증) 제7조(운영) 제8조(제보대상) 제9조(활동지원) 제10조(실비보상) 제11조(사기진작) 제1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3조(시행규칙)</p>	
78.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p> <p>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p> <p>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위치) 제5조(기능) 제6조(콜센터운영 위원회의 설치) 제7조(콜센터운영	위원회의 구성) 제8조(콜센터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의 해촉) 제10조(간사 등) 제11조(수당 등) 제12조(비밀엄수) 제13조(위탁운영) 제14조(준용규정) 제15조(시행규칙)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설치) 제4조(기능) 제5조(위탁운영) 제6조(시설 및 장비) 제7조(시행규칙)
<b>79. 바이오농업·농기업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b>	충청북도 바이오농업·농기업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이오농업 및 발전시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지원 등) 제5조(위원회 설치)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기능) 제9조(회의) 제10조(간사)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3조(포상 등) 제14조(시행규칙)
<b>80.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b>	경상남도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도민 제자리찾기 운동”(이하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참여범위) 제4조(지원)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임기)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회 전체회의) 제10조(의결사항 등 처리) 제11조(위촉 및 해촉) 제12조(수당 등) 제13조(운영규정)
<b>81. 범시민축제지원에 관한 조례</b>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인천광역시	시범시민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사업비 보조 및 감독)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8조(시행규칙)
<b>82.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b>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기존 도시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집적시설의 설치) 제5조(기존도시 벤처기업 유치)	제6조(재정 지원기준) 제7조(지원대상기업의 선정) 제8조(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설치) 제9조(시행규칙)
<b>83.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b>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	는 지역사회에 나눔	과 상부상조 문화를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영에 관한 조례	<p>확산하여 대전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조직 및 운영)</p> <p>제4조(사업)</p> <p>제5조(시장의 책무)</p> <p>제6조(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제7조(구성 등)</p> <p>제8조(위원의 임기)</p> <p>제9조(위원장의 직무)</p> <p>제10조(회의)</p>	<p>제11조(소위원회)</p> <p>제12조(간사)</p> <p>제13조(위원의 해촉)</p> <p>제14조(수당 및 여비)</p> <p>제15조(예산지원)</p> <p>제16조(포상)</p> <p>제17조(시행규칙)</p>
84. 부설의원 설치조례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		
	<p>제1조(목적)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보건상담 및 질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강원도부설의원</p>	<p>(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둔다.</p> <p>제2조(위치)</p> <p>제3조(업무)</p> <p>제4조(원장)</p>	<p>제5조(직원)</p> <p>제6조(수가)</p> <p>제7조(경비부담)</p> <p>제8조(시행규칙)</p>
85. 부속의무실 운영조례	경상남도부속의무실운영조례		
	<p>제1조(설치) 경상남도 소속공무원과 그 부양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부속의무실(이하</p>	<p>“의무실”이라 한다)을 둔다.</p> <p>제2조(위치)</p> <p>제3조(업무)</p> <p>제4조(실장)</p>	<p>제5조(공무원)</p> <p>제6조(진료비)</p> <p>제7조(경비부담)</p> <p>제8조(규칙)</p>
86. 부속의원설치조례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교육 및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부속의</p>	<p>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p>	<p>제3조(원장)</p> <p>제4조(공무원)</p> <p>제5조(원장의 직무)</p> <p>제6조(사무)</p> <p>제7조(진료비의 청구)</p> <p>제8조(시행규칙)</p>
87. 부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광주광역시 부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설공사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p>	<p>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p> <p>제4조(부설공사신고센터 설치)</p> <p>제5조(신고방법)</p> <p>제6조(신고기한)</p> <p>제7조(신고접수 및 처리)</p> <p>제8조(판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제9조(판정위원회 구성)</p>	<p>제10조(판정위원회 운영)</p> <p>제11조(판정위원회 실비보상)</p> <p>제12조(부설공사신고사항에 대한 등급분류)</p> <p>제13조(포상금지급기준)</p> <p>제14조(신고포상금지급제외)</p> <p>제15조(부설공사신고사항에 대한 우선처리)</p> <p>제16조(시행규칙)</p>
88. 부조리신고	경기도 부조리신고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및보상에관한조례	보상금 지급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지급대상)</p> <p>제4조(신고기한)</p> <p>제5조(신고의 방법)</p> <p>제6조(신고자의 보호)</p> <p>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p> <p>제8조(보상금의 지급)</p> <p>제9조(지급제외대상)</p> <p>제10조(환수)</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근절시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도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부조리의 신고)</p> <p>제4조(신고자의 성실의무)</p> <p>제5조(신고의 방법)</p> <p>제6조(신고자의 처리)</p> <p>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p> <p>제8조(신분보장)</p> <p>제9조(신변보호)</p> <p>제10조(협조자의 보호)</p> <p>제11조(포상 및보상)</p> <p>제12조(보상심의 위원회 구성)</p> <p>제13조(건의의 청취)</p> <p>제14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p> <p>제15조(수당 과여비)</p> <p>제16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p> <p>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제18조(보상금의 지급제외)</p> <p>제19조(환수)</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급대상)</p> <p>제3조(신고)</p> <p>제4조(신고방법)</p> <p>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등)</p> <p>제6조(신고자의 보호)</p> <p>제7조(협조자 보호)</p> <p>제8조(보상금의 결정)</p> <p>제9조(보상금의 지급)</p> <p>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p> <p>제11조(환수)</p>
<p>89.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p>	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p>	<p>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제도 개선 청구 (이하 “제도개선청구”라 한다)와 그 시행에 관하여</p>	<p>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청구권자)</p> <p>제3조(청구대상)</p> <p>제4조(청구)</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5조(요건심사 등) 제6조(처리)	제7조(처리결과 통보) 제8조(시행규칙)	
9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장의 임무)</p> <p>제3조(지원)</p> <p>제4조(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p> <p>제5조(협의회 구성)</p> <p>제6조(위원장)</p> <p>제7조(협의회 회의)</p> <p>제8조(수당)</p> <p>제9조(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에서 북한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시민으로 건실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방법 등)</p> <p>제3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설치)</p> <p>제4조(협의회 기능)</p> <p>제5조(협의회 회의)</p> <p>제6조(수당 등)</p> <p>제7조(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장의 책무)</p> <p>제3조(지원)</p> <p>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p> <p>제5조(협의회 구성)</p> <p>제6조(협의회의 임기)</p> <p>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의 해촉)</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p> <p>제9조(간사 및서기)</p> <p>제10조(수당 과여)</p> <p>제11조(시행규칙)</p>
91. 불우아동결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남도 불우아동결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내 불우아동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적립된 불우아동결연기금(이</p>	<p>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4(기금의 설치)</p> <p>제3조(기금의 조성)</p> <p>제4조(기금의 용도)</p>	<p>제5조(기금지원대상 등)</p> <p>제6조(기금의 운용관리)</p> <p>제7조(회계관계 공무원)</p> <p>제8조(기금지출)</p> <p>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p> <p>제10조(시행규칙)</p>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p> <p>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p> <p>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p>		
92.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p> <p>제4조(관계기관의 협조)</p> <p>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p> <p>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p> <p>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p> <p>제8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p> <p>제9조(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p> <p>제11조(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p> <p>제12조(수당)</p> <p>제13조(운영세칙)</p>		
93.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의 수립)</p> <p>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p> <p>제5조(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p> <p>제6조(추천디자이너 등)</p> <p>제7조(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p> <p>제8조(전문인력의 양성)</p> <p>제9조(국제교류사업의 지원)</p> <p>제10조(산업디자인 통계의 조사)</p> <p>제11조(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등)</p> <p>제12조(협의회 구성 등)</p> <p>제13조(위원장 등)</p> <p>제14조(임기)</p> <p>제15조(회의)</p> <p>제16조(협의회 간사 등)</p> <p>제17조(소위원회 등)</p> <p>제18조(수당 등)</p> <p>제19조(시행규칙)</p>		
94.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제주특별자치</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 동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보험가입)</p> <p>제2조(사업) 제7조(승인) 제3조(위탁관리) 제8조(감독)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관리·운영비 보조) 제5조(위탁의 취소) 제10조(준용) 제6조(손해배상 및 손 제11조(시행규칙))</p>			
95. 새만금사업 지원 조례	<p>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 등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보조신청)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 교부조건) 제6조(보조금 교부방법)</p> <p>제7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제8조(용도의 사용금지) 제9조(사업비 정산검사)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p>			
96.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p>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사무소) 제4조(재산) 제5조(정관) 제6조(임원) 제7조(사업) 제8조(수익사업) 제9조(재산출연 등) 제10조(회계년도)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시행규칙)</p>		<p>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지역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단의 설립·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4조(사무소) 제5조(재산) 제6조(정관) 제7조(임원) 제8조(사업) 제9조(수익사업) 제10조(재산출연 등) 제11조(회계년도)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시행규칙)</p>	
97.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p>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으로 구분 선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육성·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자격기준) 제4조(제외대상) 제5조(지정계획공고) 제6조(지정신청) 제7조(선도기업 지정) 제8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설치) 제9조(기업지원) 제10조(자격변동 및 취소) 제11조(기업관리) 제12조(자격종료) 제13조(지정대상) 제14조(지정제외) 제15조(지정계획공고) 제16조(지정신청 및 제출) 제17조(유망중소기업 지정) 제18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설치) 제19조(기업지원) 제20조(자격변동 및 취소) 제21조(졸업) 제22조(졸업유예) 제23조(기업관리) 제24조(운영규칙)</p>			
98.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p>제주특별자치도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성</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조례	<p>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책무) 제3조(지원시설의 지원 기간 연장) 제4조(지원시설 및 상</p>	<p>담소의 설치기준) 제5조(지원시설 및 상 담소 종사자수의 자격기준·수 등) 제6조(지원시설 및 상 담소의 운영방법·운영기준) 제7조(의료비의 지원범위) 제8조(상담소의 설치기준) 제9조(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기준)</p>	<p>제10조(상담소의 설치 신고등) 제11조(상담소의 설치 기준 등)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제13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 제14조(시행규칙)</p>
	<p>『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34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34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99.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한 업소와 위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p>	<p>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공개 대상) 제3조(공개 방법)</p>	<p>제4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사전통지)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제7조(시행규칙)</p>
100.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의 설치·운영과 소비</p>	<p>자 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구성) 제4조(민간 인력의 파견 근무)</p>	<p>제5조(운영규정) 제6조(설치) 제7조(기능) 제8조(구성) 제9조(해촉) 제10조(임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 등) 제13조(간사) 제14조(의결정취) 제15조(수당 등) 제16조(운영규정)</p>
<p>『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101. 솔라시티 조례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솔라시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및 기능)</p> <p>제3조(구성)</p> <p>제4조(민간 인력의 파견근무)</p> <p>제5조(운영규정)</p> <p>제6조(설치)</p> <p>제7조(기능)</p> <p>제8조(구성)</p> <p>제9조(해촉)</p>	<p>제10조(임기)</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p> <p>제12조(회의 등)</p> <p>제13조(간사)</p> <p>제14조(의견청취)</p> <p>제15조(수당 등)</p> <p>제16조(운영규정)</p>
102. 송도 u-IT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정보통신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의2 및 정보통신부 『동북아 IT허브 구축기본계획』에 의하여 송도지구에서 추진하는 u-IT클러스터(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Cluster)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사업범위)</p>	<p>제4조(추진주체)</p> <p>제5조(출연 등)</p> <p>제6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p> <p>제7조(기업 유치지원)</p> <p>제8조(보고 및 감사 등)</p> <p>제9조(시행규칙)</p>	<p>『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103.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 및 운영)</p> <p>제3조(사업)</p> <p>제4조(운영경비등)</p> <p>제5조(출연금등의 지원)</p> <p>제6조(공유재산의 대부)</p> <p>제7조(공무원의 파견)</p>	<p>제8조(행정지원)</p> <p>제9조(지도감독)</p> <p>제10조(보고 및 감사)</p> <p>제11조(권한의 위탁)</p> <p>제12조(시행규칙)</p>
104.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을 설치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p>	<p>제6조(회계공무원)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시행규칙)</p>
<p><b>105. 수질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b></p>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을 관리보전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장·군수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p>	<p>제7조(자문위원회 심의) 제8조(수질오염조사) 제9조(기본계획 수립) 제10조(수질환경기준 설정) 제11조(충남명수지정) 제12조(도 지정 수질환경보전지역) 제13조(도지정 보전지역 관리) 제14조(오염물질배출규제) 제15조(오염행위 지도 단속) 제16조(수질오염사고 예방)</p>	<p>제17조(환경오염사고처리 등) 제18조(수질오염 관리 전산화) 제19조(수질정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 제20조(수질환경보전사업 추진) 제21조(산업폐수 처리) 제22조(축산폐수처리) 제23조(환경 개선기금 설치운영) 제24조(시행규칙)</p>
<p><b>106. 수출및투자유공업체포상조례/시행규칙</b></p>	전라북도수출및투자유공업체포상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증진에 노력하거나 전라북도에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중·소수출업체 또는 전라북도에 투자한 국내외</p>	<p>투자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포상대상) 제3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대상업체 추천 등)</p>	<p>제5조(포상권자) 제6조(심사위원회) 제7조(포상대상업체 결정) 제8조(시상) 제9조(실비변상) 제10조(시행규칙)</p>
<p><b>107. 시네마테크 운영 조례/시행규칙</b></p>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 운영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시네마테크(이하 “시네마테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p>	<p>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제3조(사업) 제4조(관리 및 위탁운영) 제5조(위탁 재산의 범위)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p>	<p>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8조(수탁관리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료등 징수 및 감면) 제10조(회계운영) 제11조(감독)</p>
<p><b>108.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b></p>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와 운영에 관</p>	<p>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과 위치) 제3조(입소대상)</p>	<p>제4조(운영관리)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비용의 보조) 제7조(준용) 제8조(시행규칙)</p>
<p>「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9. 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여 실현함에 있어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안의 종류) 제3조(창안제의 대상) 제4조(창안의 제출) 제5조(창안심사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구성) 제7조(회의)	제8조(간사 등) 제9조(운영규정) 제10조(수당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제12조(선정등급 등) 제13조(시상 등) 제14조(선정된 창안의 활용) 제15조(시행규칙)
110. 시민감사 읍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읍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p><b>제 1 장 총 칙</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읍부즈만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b>제 2 장 시민감사읍부즈만</b></p> <p>제3조(시민감사읍부즈</p>	<p>만 설치 등)</p> <p>제4조(직무의 독립성)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6조(직무 및 권한) 제7조(직무 관할) 제8조(결직 금지) 제9조(제척·기피·회피)</p> <p><b>제 3 장 읍부즈만운영위원회</b></p> <p>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운영위원장의 직무)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3조(읍부즈만의 자문위원)</p> <p><b>제 4 장 주민감사 청구사항 처리</b></p> <p>제14조(주민감사청구) 제15조(감사청구심의회) 제16조(감사청구사항심의 의뢰) 제17조(감사결과 보고)</p> <p><b>제 5 장 읍부즈만의 감사 등</b></p> <p>제18조(시민의 감사청구)</p>	<p>제19조(시민의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제20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감사) 제21조(직권에 의한 감사 등) 제22조(고충민원의 조사처리)</p> <p><b>제 6 장 공공사업 청렴 계약 감시 및 평가</b></p> <p>제23조(감시·평가대상) 제24조(자료제출 및 요구) 제25조(감시 및 평가 운영계획 수립)</p> <p><b>제 7 장 읍부즈만의 직무 협조·지원</b></p> <p>제26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제27조(조치결과의 회보 등) 제28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제29조(인력 및 예산지원) 제30조(준용) 제31조(보고)</p>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li> <li>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li> <li>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li> </ol> <p>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p> <p>③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p> <p>④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p> <p>⑤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⑥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p> <p>⑧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p>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li> <li>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li> </ol> </li> </ol>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지사가 위촉하는 자</p> <p>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p> <p>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p> <p>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p> <p>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④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li> <li>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li> <li>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li> <li>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⑥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b>111.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시행규칙</b></p>	<p>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보조금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지원대상)</p> <p>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p> <p>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p> <p>제6조(사업자의 신고의무)</p> <p>제7조(지도·감독)</p> <p>제8조(준용)</p> <p>제9조(시행규칙)</p>	<p>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 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8.6.4&gt;</p> <p>제2조(정의)</p> <p>제3조(보조금)</p> <p>제4조(재원)</p> <p>제5조(지원계획 및 소요파악)</p> <p>제6조(보조금의 신청)</p> <p>제7조(설치자의 신고의무)</p> <p>제8조(보조금의 반환)</p> <p>제9조(지도·감독)</p> <p>제10조(조례 등에 따르는 예 &lt;개정 2008.6.4&gt;)</p> <p>제11조(시행규칙)</p> <p>『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lt;개정 1999.12.31&gt;)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lt;신설 1999.12.31&gt;</p> <p>『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지원,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3&gt;</p>
<p><b>112.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b></p>	<p>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악취관리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배출허용기준)</p> <p>『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b>113.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b></p>	<p>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빛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p> <p>제4조(시장의 책무)</p>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p> <p>제7조(기본계획의 수정)</p> <p>제8조(관계기관의 협조)</p> <p>제9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p> <p>제10조(야간 경관조명의 권장)</p> <p>제11조(가로등의 개선)</p> <p>제12조(민간참여의 유도)</p> <p>제13조(야간경관활성화 추진협의체)</p> <p>제14조(야간경관개선협정의 체결)</p> <p>제15조(관광자원화)</p> <p>제16조(포상)</p> <p>제17조(설치)</p> <p>제18조(구성)</p> <p>제19조(위원장의 직무)</p> <p>제20조(위원의 해촉)</p> <p>제21조(회의 등)</p> <p>제22조(협조요청)</p> <p>제23조(수당 및 여비)</p> <p>제24조(운영세칙)</p> <p>제25조(규칙)</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114.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6조 등에서 위임된 도내 야생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야생동·식물보호법』 제26조(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3조(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p> <p>제4조(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조치)</p> <p>제5조(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p> <p>제6조(보호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취소)</p>	<p>제7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p> <p>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p> <p>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징명령 등)</p> <p>제10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등)</p> <p>제11조(재정지원)</p>
115.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p> <p>제3조(시설)</p> <p>제4조(개원 및 휴원)</p> <p>제5조(운영시간)</p> <p>제6조(사용신청 등)</p> <p>제7조(사용료)</p> <p>제8조(사용의 제한)</p> <p>제9조(손해배상)</p> <p>제10조(위탁운영)</p> <p>『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p> <p>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p> <p>『교통안전법』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탁기간)</p> <p>제12조(자체 운영규정)</p> <p>제13조(운영지원)</p> <p>제14조(수탁자의 의무)</p> <p>제15조(감독)</p> <p>제16조(자원봉사자 배치 등)</p> <p>제17조(준용)</p> <p>제18조(시행규칙)</p>	
116.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b>운영 조례</b></p>	<p>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3조(시설)</p>	<p>제4조(사업) 제5조(운영시간 등) 제6조(교육비 등)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수탁자 의무) 제9조(지도·감독)</p>	<p>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청문) 제12조(자원봉사자) 제13조(준용)</p>
<p><b>117.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b></p>	<p>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p>	<p>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조(명칭과 위치) 제3조(업무) 제4조(종사자) 제5조(입소순위) 제7조(보육료)</p>	<p>제8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기간)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행위금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의2(청문)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제13조(시행규칙)</p>
	<p>『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b>118.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b></p>	<p>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p>	<p>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지원의 제한)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p>	<p>성·운영) 제7조(지원사항) 제8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제10조(시행규칙)</p>
<p><b>119.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b></p>	<p>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p>		<p>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적극적 조치)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체계)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8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제12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제14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5조(시행규칙 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구축 강화)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여성농어	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제14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15조(시행규칙)
120.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저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	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4조(심사위원회) 제5조(통보 및 보고)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7조(보조기간)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 환수) 제10조(준용규정)	
121.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그 평생교육의 기회보장을 위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9, 2006.5.19>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운영등) 제5조(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제7조(운영경비)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제9조(공무원의 과견) 제10조(행정지원)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2조(지휘 감독)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6조(운영규정) 제17조(시행규칙)	
122. 예술의거리 조성 조례	광주광역시 예술의거리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화와 도자기등 예향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판매하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리지정) 제3조(육성업종) 제4조(지원) 제5조(기금) 제6조(육성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임무) 제8조(간사와 서기) 제9조(회의) 제10조(입주신청) 제11조(인정서) 제12조(건물주 및 입주업주 준수사항) 제13조(시행규칙)	
123. 오색온천 관리조례	강원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유하고 있는 오색온천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강원도가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3조(공급계약) 제4조(사용료)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5조(권한의 위임)	제6조(시행규칙)	
124.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노처리수수료)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4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처리장의 이용금지 등) 제6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7조 <삭제 2003. 04. 11 조례 제3168호> 제8조(과태료의 납부기한) 제9조(준용) 제10조(위탁관리) 제11조(시행규칙)
125. 온천 급탕 조례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제1조(급탕구역) 온천 급탕구역은 동래구와 해운대지구로 한다.	제2조(급탕종류) 제3조(사용료) 제4조(준용)	제4조의1(전동) 제5조(권한의 위임) 제6조(규칙)
126.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이하 “외국어마을”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외국어마을의 설립·운영) 제4조(외국어마을 기준) 제5조(대상사업) 제6조(위탁기간) 제7조(수탁자 선정) 제8조(경비의 지원 및	반납)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2조(보고 및 감독)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수익사업) 제15조(시행규칙)
127.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책임) 제4조(관련기관 협조) 제5조(보조금 지원)	제6조(지원대상 및 용도)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보고 등) 제9조(감독) 제10조(시행규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128.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우수농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산물표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제4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회의) 제7조(위원의 수당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지정 신청) 제10조(지정 및 사용) 제11조(상표사용 책임)</p> <p>제12조(상표의 사용중지) 제13조(사후관리) 제14조(상표사용 정지) 제15조(지정 취소) 제16조(청문) 제17조(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8조(사무위임) 제19조(무단상표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20조(시행규칙)</p>
129.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제3조(주변영향 지역지원 등) 제4조(기금의 용도)</p> <p>제5조(기금의 관리)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제10조(위원 수당) 제11조(편의시설의 사용 등)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주민감시 요원 수당기준) 제14조(결산 및 보고)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그 주변지역과 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p> <p>으로 한다.</p> <p>제2조(매립장의 명칭 및 위치)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제4조(반입의 제한 등)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6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제7조(편의시설의 사용) 제8조(주민감시 활동 지원) 제9조(주민감시 요원의 수당)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 제11조(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운용 협의회 구성등) 제13조(협의회의 기능) 제14조(회의)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6조(결산 및 보고) 제17조(관계규정</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의 준용) 제 18 조 (권 한 의 위임)	제 19 조 (관 리 · 운 영 의 위탁) 제 20 조 (시 행 규 칙)
130.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위스타트마을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시행규칙)
• 131. 음식점 식재료 등 원산지 자율 표시제 운영 조례	전라남도 음식점 식재료 등 원산지 자율표시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주요 식재료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자율표시토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건전	한 유통질서를 확립 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대상업소)	제4조(원산지 자율표시) 제5조(원산지 자율표시 시행 음식점에 대한 지원) 제6조(지도·감독)
132. 의로운 시 민 등에 대 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	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가족등의 범위) 제5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회의 등) 제8조(인정신청 등) 제9조(결정통보 등) 제10조(위로금의 지급) 제11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등) 제12조(예우) 제13조(위로금의 환수)
133.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범위)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정책의 심의 및 평가)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3에 따라 도의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설치) 제6조(기능) 제7조(구성) 제8조(임기) 제9조(의장 직 무 등) 제10조(회의) 제11조(의견청취 등)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임기) 제22조(운영규정) 제23조(설치) 제2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5조(구성) 제26조(용도) 제27조(관리· 운영) 제28조(회계관	계공무원) 제 29 조 ( 결 산 및 보고) 제30조(준용) 제31조(시행규칙)
	<p>『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p> <p>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p> <p>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p>		
<b>134.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b>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민생경제 활력 과 고용창출을 위하 여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3조(기능)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	제6조(회의) 제7조(사무위원회) 제8조(의견청취 등) 제9조(간사 및 서기) 제10조(수당 등) 제11조(운영세칙)
<b>135.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b>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에서 위임	된 입양기관의 허가, 양육보조금의 지급 절차, 가정위탁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3조(양친될 자의 자 격요건)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4조(입양기관의 허가 등) 제5조(입양기관의 변경 신고 등) 제6조(입양기관의 시설	기준) 제7조(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제8조(양육보조금의 지	급절차 등) 제9조(비용의 부담) 제10조(가정위탁보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아동 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6. 자연재해 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6조(자연재해위험지	구 표지판 설치)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형질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7. 자원봉사상조례	경상남도자원봉사상조례		
	제1조(목적)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개발과 복지공동체의 구현에 앞장서 온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자원봉사상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구비서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장과 및 위원의 직무) 제7조(회의 결과보고 및 수상자 결정) 제8조(시상) 제9조(간사 및 서기) 제10조(실비보상) 제11조(시행규칙)
138. 자치행정 모니터운영조례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행정모니터(이하 “모	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모집 및 위촉) 제4조(위촉기간) 제5조(해촉) 제6조(신분증)	제7조(운영) 제8조(제보대상) 제9조(활동지원) 제10조(실비보상) 제11조(사기진작) 제1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3조(시행규칙)
139. 자활자립상조례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		경상남도자활자립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 자립에 성공한 가구 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수여하는 경상북도 자활자립상(이하“자활자립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수상구분) 제4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심사 및 수상자 결정) 제8조(시상시기 및 부상) 제9조(간사 및 서기) 제10조(수당등) 제11조(규칙)</p>	<p>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자활자립에 성공한 가구 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세대주에게 수여하는 경상남도 자활자립상(이하 “자활자립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하</p>	<p>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구분) 제3조(시상시기) 제4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자 결정 등) 제7조(중복시상의 금지) 제8조(기록보존) 제9조(시상금 반환 명령) 제10조(회의)</p>
<p><b>1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b></p>	<p>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p> <p>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p> <p>제5조(사전검사 대상)</p> <p>제6조(사전검사시기 및 방법)</p> <p>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p> <p>제8조(수당 등)</p> <p>제9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p> <p>제10조(사전검사요원의</p>	<p>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검사)</p> <p>제4조(검사 대상)</p> <p>제5조(검사시기 및 방법)</p> <p>제6조(구성)</p> <p>제7조(검사요원의 직무)</p> <p>제8조(검사요원의 의무</p>	<p>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p> <p>제4조(예산의 확보)</p> <p>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p> <p>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p> <p>제7조(점검대상)</p> <p>제8조(점검시기 등)</p> <p>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p> <p>제10조(심의사항)</p> <p>제11조(점검요원)</p> <p>제12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교육) 제11조(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 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제13조(예산의 확보) 제14조(시행규칙)	및 제칙) 제9조(관계공무원의 의무) 제10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제11조(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제12조(검사 결과의 반영)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4조(시설주의 의무) 제15조(점검결과와 보고) 제16조(점검결과와 반영) 제17조(실비보상) 제18조(시행규칙)
<b>141.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시행규칙</b>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가족·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3조(수상부문)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제6조(수상후보자에 대	한 조사) 제7조(시상시기) 제8조(상패 및 부상) 제9조(실비변상) 제10조(시행규칙)
<b>14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b>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중에서 강원도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중 이법에서 정한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	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우선구매촉진)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7조(구매의무의 범위) 제8조(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 제9조(생산·유통·판매지원) 제10조(구매촉진 협조 등) 제11조(평가 등)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li> <li>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li> </ol> <p>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⑤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p> <p>⑥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p>				
<p><b>143. 장애인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b></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과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전문체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체육시설</td> <td style="width: 33%;">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3조(사업) 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td> <td style="width: 33%;">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의 위탁운영)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td> </tr> </tabl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과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전문체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체육시설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3조(사업) 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의 위탁운영)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과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전문체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체육시설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3조(사업) 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의 위탁운영)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p><b>144.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b></p>	<p>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 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p> <p>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p>	<p>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4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규칙</p> <p>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장애인콜 택시운행) 제5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 요금) 제8조(관리 및 운행의 위탁) 제9조(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장애인콜 택시운행)	제5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 요금) 제8조(관리와 운행의 위탁) 제9조(협약체결 등)				
	<p>『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④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2008년 3월 전부개정으로 인해 현행 제81조로 개정됨.</b></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li> <li>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li> </ol>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b>※ 시행규칙도 개정 전 법조항.</b>                      제100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등의 허가요건)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lt;개정 1999.12.16, 2005.7.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으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li> </ol>							
<p><b>145.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b></p>	<p>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p> <table border="0"> <tr> <td data-bbox="412 1251 632 167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유                 </td> <td data-bbox="632 1251 797 1678">                     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시장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시장의 명칭과 위치)                      제5조(위탁운영)                      제6조(사용허가)                      제7조(허가의 취                 </td> <td data-bbox="797 1251 961 1678">                     소 등)                      제8조(사용자 신고)                      제9조(사용폐지 및 휴업)                      제10조(사용보증금)                      제11조(시장관리)                      제12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5조(위생관리)                      제16조(화재예방)                      제17조(보험가입)                      제18조(공공요금)                 </td> <td data-bbox="961 1251 1178 1678">                     제19조(사용료 징수)                      제20조(사용료 산정의 특례)                      제21조(사용료 납기)                      제22조(사용료 감면)                      제23조(사용료 환부)                      제24조(시장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시장실태조사)                 </td> </tr> </tabl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유	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시장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시장의 명칭과 위치) 제5조(위탁운영) 제6조(사용허가) 제7조(허가의 취	소 등) 제8조(사용자 신고) 제9조(사용폐지 및 휴업) 제10조(사용보증금) 제11조(시장관리) 제12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5조(위생관리) 제16조(화재예방) 제17조(보험가입) 제18조(공공요금)	제19조(사용료 징수) 제20조(사용료 산정의 특례) 제21조(사용료 납기) 제22조(사용료 감면) 제23조(사용료 환부) 제24조(시장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시장실태조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유	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시장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시장의 명칭과 위치) 제5조(위탁운영) 제6조(사용허가) 제7조(허가의 취	소 등) 제8조(사용자 신고) 제9조(사용폐지 및 휴업) 제10조(사용보증금) 제11조(시장관리) 제12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5조(위생관리) 제16조(화재예방) 제17조(보험가입) 제18조(공공요금)	제19조(사용료 징수) 제20조(사용료 산정의 특례) 제21조(사용료 납기) 제22조(사용료 감면) 제23조(사용료 환부) 제24조(시장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시장실태조사)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26조(인정시장의 기준)	제30조(인정시장의 안전관리)	제35조(서류의 비치)	제39조(시설관리비용의 징수)
	제27조(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제31조(상인회설립)	제36조(시설물의 소유권)	제40조(시설물의 위탁운영)
	제28조(인정시장의 철회)	제32조(상인회의 역할)	제37조(시설물의 관리)	제41조(시장정비사업선정)
	제29조(인정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제33조(자료제출 지원 등)	제38조(시설물의 설치 등)	제42조(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146. 재활병원 조례	강원도재활병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재활병원	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3조(대상업무) 제4조(위탁운영)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의료수가 등) 제7조(위탁의 취소) 제8조(감독)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0조(시행규칙)	
147.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	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3조(업종) 제4조(운영의 위탁) 제5조(고용대상장애인) 제6조(직원) 제7조(급여)	제8조(수익금의 사용)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승인) 제11조(보고) 제12조(감독)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4조(시행규칙)	
148.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	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3조(예산지원) 제4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준용) 제7조(시행규칙)	
149.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	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강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3조(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내용) 제5조(지원 개시일) 제6조(지원기관)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제8조(비용부담)	제9조(예산확보) 제10조(지원중단) 제11조(환수조치) 제12조(시행규칙)
150.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위생환경 개선 및 제주청정 환경이 미지 관광환경기반	조성과 제주 전래의 화장실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업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6조(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설치 기준)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제8조(업무위임)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구성)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회의) 제15조(수당) 제16조(시행규칙)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151.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교이상(대학원은 제외된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	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제3조(장학금의 재원)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제5조(장학금의 종류) 제6조(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 제7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8조(장학금액) 제9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10조(장학금 지급정지) 제11조(지급정지 통보) 제12조(시행규칙)
152.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제4조(지원금) 제5조(지원금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금의 증지) 제7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8조(비용부담) 제9조(꿈나무사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광역시)		
153. 전입대학 생 도서구입 비지원조례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인구 늘리기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	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자격) 제3조(지원금액) 제4조(도서구입비의 신청) 제5조(지원결정)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예산조치)
154. 전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지역의 전자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지원의 범위) 제5조(사업자 선정) 제6조(지원사업 등) 제7조(조성지역) 제8조(유치업종) 제9조(용지의 조성) 제10조(용지의 분양) 제11조(조성토지 사용) 제12조(분양 및 임대방	법 등)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4조(경비의 지원 및 출연)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지도감독 등) 제18조(포상) 제19조(시행규칙)
155.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로 한다. 제2조(정책토론청구) 제3조(토론청구 주민수) 제4조(청구 대상) 제5조(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회의 등) 제9조(토론 실시 기한) 제10조(토론 방법) 제11조(토론 결과) 제12조(담당부서 등) 제13조(수당 등) 제14조(시행규칙)
156. 제주어 보 전 및 육성 조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책무) 제4조(제주어 보전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보고) 제7조(실태조사 등) 제8조(제주어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회의) 제10조(수당 등) 제11조(제주어 문화의 확산)	제12조(제주어의 보급 등) 제13조(제주어 교육) 제1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6조(제주어 주간 지정 등) 제17조(제주어 연구소 설치) 제18조(시행규칙)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157.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0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제주흑우의 관리)</p> <p>제4조(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시행)</p> <p>제5조(사육실태조사)</p> <p>제6조(유전자원 보존·관리)</p> <p>제7조(심사)</p> <p>제8조(등록)</p> <p>제9조(검정 및 정액생산)</p> <p>제10조(반출의 제한)</p> <p>제11조(반출의 허가)</p> <p>제12조(제주흑우발전협의회 구성 운영)</p> <p>제13조(협의회 기능)</p> <p>제14조(협의회 소집과 의결)</p> <p>제15조(간사)</p> <p>제16조(실비변상)</p> <p>제17조(시행규칙)</p>		
158. 주민참여 기본조례	<p>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기본이념)</p> <p>제4조(시장의 책무)</p> <p>제5조(시민의 권리)</p> <p>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p> <p>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p> <p>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p> <p>제9조(예산참여 시민위원회)</p> <p>제10조(시정정책 설명 청구제)</p> <p>제11조(회의공개 원칙)</p> <p>제12조(시민의견 조사의 실시)</p> <p>제13조(시행규칙)</p>	<p>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p> <p>제3조(정의)</p> <p>제4조(도시사의 책무)</p> <p>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p> <p>제6조(회의 자료 등 공개)</p> <p>제7조(위원회에 주민참여)</p> <p>제8조(정책토론의 실시)</p> <p>제9조(주민의견 조사의 실시)</p> <p>제10조(시행규칙)</p>	
159.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조례	<p>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p> <p>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구매촉진)</p> <p>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p> <p>제5조~제6조 &lt;삭제 2004. 3. 6&gt;</p> <p>제7조(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p> <p>제8조(시행규칙)</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b>16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b></p>	<p>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p>	<p>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p>	<p>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시장의 책무)</p> <p>제4조(계획의 수립)</p> <p>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p> <p>제6조(지원)</p> <p>제7조(업무의 위탁)</p> <p>제8조(센터의 지원)</p> <p>제9조(운영기준)</p> <p>제10조(센터의 사업)</p> <p>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p> <p>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p> <p>제13조(위원회 운영)</p> <p>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p> <p>제15조(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도지사의 책무)</p> <p>제4조(계획의 수립)</p> <p>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p> <p>제6조(지원)</p> <p>제7조(업무의 위탁)</p> <p>제8조(센터의 지원)</p> <p>제9조(운영기준)</p> <p>제10조(센터의 사업)</p> <p>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p> <p>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p> <p>제13조(위원회 운영)</p> <p>제14조(제재조치)</p> <p>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p> <p>제16조(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중증장애인의 기준)</p> <p>제4조(책임)</p> <p>제5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p> <p>제6조(장애인 복지</p> <p>위원회)</p> <p>제7조(지원)</p> <p>제8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p> <p>제9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p> <p>제10조(센터의 사업)</p> <p>제11조(활동보조인 신청 등)</p> <p>제12조(업무의 위탁)</p> <p>제13조(운영기준)</p> <p>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p> <p>제15조(위원회 운영)</p> <p>제16조(예산의 지원)</p> <p>제17조(보조금의 반환)</p> <p>제18조(보조금의 정산 등)</p> <p>제19조(사업의 우선)</p> <p>제20조(사업의 평가)</p> <p>제21조(시행규칙)</p>
<p><b>161. 지역사회 사랑 운동 실천지</b></p>	<p>대전광역시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p>		<p>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사</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원조례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대전사랑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전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대전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등) 제4조(전임강사 운용) 제5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제6조(결산보고등) 제7조(보조금의 환수등) 제8조(시행규칙)	량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등)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결산보고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7조(시행규칙)
162. 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조성 과 공장유치를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법인의 설립) 제5조(자동차부품혁신 센터) 제6조(기계산업리서치 센터) 제7조(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	추진) 제8조(수익사업) 제9조(재원조달) 제10조(회계연도)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4조(시행규칙)	
163.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직업상담	원의 직무) 제5조(직업상담원의 구분) 제6조(직업상담원의 정원) 제7조(직업상담원의 승진) 제8조(직업상담원의 신규채용)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 제10조(신규채용절차) 제11조(근로계약의 체결) 제12조(재정보증)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제14조(정년) 제15조(직업상담원의 전보) 제16조(근무명령) 제17조(신분증명	서 발급) 제18조(근무성적평정) 제19조(서열명부의 작성) 제20조(징계의 종류) 제21조(징계사유) 제2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제24조(징계의결의 요구) 제25조(징계사유의 시효) 제26조(징계의결기간) 제27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28조(심문과 진술권) 제29조(징계사유	심의) 제30조(징계의 감경) 제31조(징계의 가중) 제3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3조(집행) 제34조(제심청구) 제35조(서류 등의 비치) 제36조(경고·주의조치) 제37조(휴직사유) 제38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제39조(복직) 제40조(교육훈련) 제41조(손해배상) 제42조(근무시간) 제43조(근태) 제4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제45조(휴일 및 휴가)의 작성 제46조(평가)의 작성 등 제47조(공가)의 작성 등 제48조(여비)의 작성 등 제49조(경력평정)의 작성 방법 제50조(인사기록)의 작성</p> <p>제51조(취업규칙)의 작성 등 제52조(보수)의 작성 등 제53조(보수의 지급방법)의 작성</p> <p>제54조(보수계산)의 작성</p> <p>제55조(보수지급일)의 작성 제56조(상여금·가계안정자금)의 작성 제57조(가족수당)의 작성 제58조(초과근무수당지급)의 작성 제59조(봉급보전)의 작성</p> <p>제60조(퇴직금)의 작성 제61조(성과상여금)의 작성 제62조(특근매식비)의 작성</p> <p>「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164.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p>	<p>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p> <p>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지원 대상)</p> <p>제4조(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시기) 제6조(조사실시)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환수 등) 제9조(시행규칙)</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lt;개정 2008.2.29&gt;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65. 차세대위원회 조례</p>	<p>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기능) 제4조(목적)</p> <p>제5조(위촉자격등) 제6조(임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수당등) 제10조(시행규칙)</p>		
<p>166.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3조(업무) 제4조(운영) 제5조(위탁관리)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제12조(사용의 우선순위)	제13조(사용의 제한 등) 제14조(손해배상) 제15조(교육 및 실비변상 등) 제16조(시행규칙)
167.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이하 “양돈연구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평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시험·연구사업 추진)	제5조(특허 출원 등) 제6조(후보 종축 및 축산물 등의 처리) 제7조(유전자 검사) 제8조(시행규칙)
168.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개최하는 축제의 전국화·세계화와 이벤트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창조적 컨벤션도시형성에 기여하게 함을 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제주도 지정축제와 제주도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해촉) 제7조(회의) 제8조(간사) 제9조(수당) 제10조(운영규정) 제11조(제주도 지정축제) 제12조(제주도대표축제) 제13조(축제의 로고) 제14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15조(시행규칙)	
169.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주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알선과 소자본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취업정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3조(업무등)	제4조(상담창구의 설치) 제5조(상담원의 배치) 제6조(상담원의 위·해촉) 제7조(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8조(시행규칙)
170.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농업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농	업지역의 오염원을 개선하여, 농업의 환	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b>육성지원에 관한 조례</b></p>	<p>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사체협의 기회를 제공하며, 친환경 농산물 애용과 가족 단위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주말·체험영농을 육성 지원 하고자 친환경 농업육성법 및 농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p>	<p>계획 수립)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회의) 제8조(분과위원회) 제9조(간사)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1조(수당) 제12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3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제14조(농업자원 및 농</p>	<p>업환경의 실태조사)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 제16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17조(교육훈련) 제18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19조(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제20조(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제21조(파태료) 제22조(시행규칙)</p>
<p><b>171.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b></p>	<p>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명품임을 인증하여 지역 농업인의</p>	<p>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공동상표) 제4조(신청) 제5조(명품인증)</p>	<p>제6조(명품인증 취소) 제7조(명품관리) 제8조(명품지원)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 제10조(명품지원 신청)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제12조(시행규칙)</p>
<p><b>172. 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b></p>	<p>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의 친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차별화된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p>	<p>경축산업의 육성·지원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제주도의 책무) 제4조(시·군의 책무) 제5조(농업인의 책무)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사업의 평가) 제9조(규칙)</p>
<p><b>173.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b></p>	<p>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을 전문상담사로 하여금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p>	<p>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제3조(위치) 제4조(기능) 제5조(위탁운영)</p>	<p>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임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 제11조(해촉) 제12조(수당 등) 제13조(간사 등) 제14조(시행규칙)</p>
<p><b>174. 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b></p>	<p>인천광역시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p>	<p>경상북도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p>	<p>제1조(목적)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제1조(목적) 지방세법 제84조와 조세</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시장에게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이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명이나 허위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 주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제3조(교부금액)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 제5조(공무원) 제6조(교부금의 지급)</p>	<p>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경상복도(이하 “도”라 한다)에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면으로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명이나 허위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 주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제3조(교부금액) 제4조(교부금 산정의 기준) 제5조(공무원) 제6조(교부금의 지급) 제7조(교부금의 자금)</p>
	<p>『지방세법』 <b>※ 인천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 미반영.</b> 제8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lt;개정 2005.12.31&gt;) 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lt;개정 2007.12.31&gt; ②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령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p> <p>『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lt;개정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li> <li>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li> <li>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li> <li>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li> <li>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li> </ol>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해당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p> <p>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p> <p>7. 조세범처벌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p> <p>8.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p> <p>②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lt;신설 1999.12.31&gt;</p>			
175.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형 선진도시(Solar City)를 만들기 위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방향)</p> <p>제3조(용어의 정의)</p> <p>제4조(시의 책무)</p> <p>제5조(자치구의 책무)</p> <p>제6조(사업자의 책무)</p> <p>제7조(시민의 책무)</p> <p>제8조(시민의 권리)</p> <p>제9조(시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p>	<p>제10조(태양에너지 도시조성 계획)</p> <p>제11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p> <p>제12조(산업부문)</p> <p>제13조(수송부문)</p> <p>제14조(건물부문)</p> <p>제15조(공공부문)</p> <p>제16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p> <p>제17조(국제협력 사업)</p> <p>제18조(교육·홍보)</p>	<p>제19조(태양에너지도시 선언)</p> <p>제20조(에너지위원회)</p> <p>제21조(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p> <p>제22조(에너지절약건물 인증권장)</p> <p>제23조(에너지백서 발간)</p> <p>제24조(에너지상)</p> <p>제25조(재정지원 등)</p> <p>제26조(시행규칙)</p>	
176. 통상모니터요원 운영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통상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통상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p>	<p>제2조(임무)</p> <p>제3조(위촉대상)</p> <p>제4조(위촉방법)</p>	<p>제5조(위촉기간)</p> <p>제6조(경비지원)</p> <p>제7조(시행규칙)</p>	<p>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177.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문, 지방의회 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 등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p>	<p>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대구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문, 정치부문, 교육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 등 지역사회 구성원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으로 각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p>	<p>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제3조(기본이념)</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2조(정의) 제3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지원)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6조(실천계획 내용) 제7조(시행세칙)	제4조(울산협의회의 설치) 제5조(울산협의회의 역할) 제6조(울산협의회 지원)	제7조(실천계획 수립) 제8조(실천계획의 내용) 제9조(시행규정)
178. 특별재난 지역 지원 조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이 취하는 경기도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지역의 대응·복구 및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도내 각급 자치단체간의		행정응원등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4.03>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재난응급대책) 제4조(행정응원등의 지시 및 요청) 제5조(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 제6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79. 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경상북도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산업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시책 및 사업) 제4조(전통특산품 지정) 제5조(기능보유자 인정) 제6조(우수업체 지정) 제7조(산지지정) 제8조(지정등의 신청) 제9조(지정등의 고시 및 통지)	제10조(지정등의 효력) 제11조(지정서등의 교부) 제12조(지정등의 해제) 제13조(지원) 제14조(경진대회) 제15조(산업디자인인람회) 제16조(추천작가) 제17조(초대작가) 제18조(작가의 효력)	제19조(위원회 설치) 제20조(기능) 제21조(구성) 제22조(위원장등의 직무) 제23조(회의) 제24조(간사 및 서기) 제25조(실비변상) 제26조(권한의 위탁) 제27조(시행규칙)
180.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소의 계층에게 무료의약품을 지원	하고자 의약품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기탁자와 연계를 위한 팜뱅크	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2조(정의) 제3조(팜뱅크의 설치) 제4조(팜뱅크의 운영) 제5조(도지사의 의무) 제6조(운영지원)	제7조(기탁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제8조(수요자 의무) 제9조(세금의 감면) 제10조(기탁의약품의	가액산정) 제11조(위탁운영) 제12조(시행규칙)	
<b>181.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b>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디자인분야의 개발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3조(업무) 제4조(위탁운영) 제5조(승인) 제6조(관리규정) 제7조(시행규칙)	
<b>182.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b>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을 위한 교육,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참여·재취업 교육, 각종 상담	· 생활지도 등 양성평등 사회 교육 및 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수강허가) 제3조(사용료 등 징수) 제4조(사용료 등 감면)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제6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강사) 제9조(홍보물 부착) 제10조(분원 및 분실 설치) 제11조(위탁관리) 제12조(시행규칙)
<b>183. 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b>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3조(구성)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5조(정보의 제한) 제6조(협조) 제7조(예산및 회	계운영)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 제9조(규칙위임)
<b>184.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b>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하천 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3조(추진단의 구성) 제4조(추진단장) 제5조(사무직원) 제6조(회의) 제7조(의결)	제8조(간사 및 서기) 제9조(회의록) 제10조(분과위원회)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사업비의 지원등) 제13조(수당등) 제14조(운영규칙)	
<b>185. 학술진흥조례</b>	강원도 학술 진흥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술진흥을 위	한 학술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학술진흥위원회) 제4조(기능)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5조(구성) 제6조(임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위원의 해촉)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2조(수당) 제13조(기금의 설치) 제14조(기금의	구분) 제15조(기금의 재원) 제16조(기금의 용도) 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8조(회계공무원) 제19조(학술진흥재단 지원)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21조(시행규칙)	
186. <b>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b>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한복착용 시책 등)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6조(시행규칙)
187. <b>한옥지원 조례/시행규칙</b>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한옥밀집지역에서 전통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가 담긴 전통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등록) 제5조(등록의 유효기간)	제6조(등록의 취소) 제7조(등록대상)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0조(지원시기)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2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 제13조(한옥의 매수 등) 제14조(한옥위원회 설치·운영)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6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설치) 제5조(심의 대상) 제6조(구성) 제7조(임기) 제8조(회의) 제9조(의견 청취) 제10조(수당 과여비) 제11조(등록) 제12조(등록의 취소) 제13조(등록대상) 제1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6조(지원시기) 제1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8조(한옥의 매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제22조(기금의 사용) 제23조(융자 신청) 제24조(융자 조건 등) 제25조(기금의 위탁 및 보고 등) 제26조(결산 및 보고) 제2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9조(시행규칙)
188. <b>해남어업</b>	강원도해남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행 규칙	운용조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운용계획) 제8조(결산 보고) 제9조(회계공무원) 제10조(준용) 제11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이 조업중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사고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기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위로금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5조(지원금액) 제6조(위로금의 청구) 제7조(위로금의 지급)
189.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경상남도행정서비스리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주민을 위하여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사전 의견수렴) 제4조(리콜 청구권) 제5조(리콜대상) 제6조(리콜의 청구) 제7조(청구인서명부의 공람, 이의신청, 보정 등) 제8조(청구의 각하) 제9조(심사 요청) 제10조(리콜심사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회의 운영) 제14조(리콜 여부의 결정) 제15조(수당 등) 제16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민을 위하여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사전 의견수렴) 제4조(리콜 청구권) 제5조(리콜의 대상) 제6조(리콜의 청구) 제7조(청구인서명부의 공람, 이의신청, 보정 등) 제8조(청구의 각하) 제9조(심사 요청) 제10조(리콜심사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리콜 여부의 결정)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제16조(시행규칙)
190.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 등 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심의회) 제4조(발굴·지정 등)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향토음식의 육성) 제6조(향토대표음식의 지정) 제7조(향토음식연구원 설립 등) 제8조(사업의 지원) 제9조(포상) 제10조(향토음식 명인·명가의 선정) 제11조(명인·명가 지원)	제12조(관광상품화 교육) 제13조(홍보) 제14조(시책의 추진) 제15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제16조(기능) 제17조(구성) 제18조(임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회의) 제21조(간사) 제22조(수당과 여비) 제23조(시행규칙)	제5조(기능보유자의 기준) 제6조(업소의 지정 등) 제6조의2(의견제출) 제7조(명칭사용의 금지) 제8조(육성 보호) 제9조(평가) 제10조(연구업무의 범위) 제11조(연구업무의 위탁) 제12조(시행규칙)
191.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의2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의2(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①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익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제4조(도지사·도교육감·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환경교육시행계획) 제8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임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회의)	제14조(간사) 제15조(실비보상)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제1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18조(사업자의 환경교육진흥) 제19조(환경교육진흥예산의 지원) 제20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 제21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제22조(재정지원 등)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④ 제3항의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임자 교육) 제3조(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제4조(사후관리대상사업의 범위) 제5조(사후관리 횟수) 제6조(사후관리 기간) 제7조(사후관리 내용) 제8조(사후관리 방법) 제9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사후관리결과 관리) 제11조(협의내용관리책)</p> <p>제12조(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제13조(사후관리조사단 구성) 제14조(조사단의 의무) 제15조(조사단증 제작·활용 등) 제16조(수당 등 지급) 제17조(벌칙 등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p>
	<p>『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3.28&gt;</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3.28&gt;</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p> <p>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93.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조례</p>	<p>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조례</p>	<p>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관한조례</p>	<p>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 설치)</p> <p>제3조(위원회 구성 등)</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p> <p>제5조(수당 등)</p> <p>제6조(조정가액의 산정)</p> <p>제7조(수수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의 구성)</p> <p>제3조(심사관의 지정 등)</p> <p>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p> <p>제5조(조정비용)</p> <p>제6조(수수료)</p> <p>제7조(수당 등)</p> <p>제8조(준용규정)</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 구성)</p> <p>제3조(위원회 간사 등)</p> <p>제4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p> <p>제5조(회의소집)</p> <p>제6조(관계전문가 등)</p> <p>제7조(조정가액)</p> <p>제8조(수수료)</p> <p>제9조(수당 등)</p> <p>제10조(운영세칙)</p>
<p>『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규칙 제정) ①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무</p>			

조례(규칙)명	자치법규의 목적 및 조별목차	
	<p>에 대한 처리절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63조(조정비용등) ①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위원회에 대하여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194.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p>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군·구의 행정기관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p>	<p>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규제법』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도 및 시·군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p>
	<p>『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상금)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상금의 지급)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12.9&gt;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받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05.12.9&gt;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05.12.9&gt;</p>	
195. 효행상운 영조례/시행 규칙	<p>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도민적 효사상의 고취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효행자를 발굴 하고 경기도효행상(이하 “효행상”이라 한다)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상후보 호자의 자격 및 시상부문)</p> <p>제3조(시상인원)</p> <p>제4조(시상)</p> <p>제5조(수상후보</p> <p>자의 추천)</p> <p>제6조(수상대상 자의 선정)</p> <p>제7조(심사위원회)</p> <p>제8조(간사와 서기)</p> <p>제9조(실비변상)</p> <p>제10조(시행규칙)</p>	